

2018

+ FTA 해외 활용  
지원 센터  
활동 사례집



## | 머리말 |

2018년 우리나라는 수출액 6,000억 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의 무역액을 기록했습니다. 미중 무역갈등, 보호무역확산 등 어려운 여건을 뚫고 거둔 실적이라 더욱 값집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기까지, FTA는 우리나라 무역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톡톡히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15년 동안 전 세계 52개국과 FTA가 발효된 글로벌 통상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KOTRA FTA해외활용지원센터는 해외 현지 바이어와 국내 진출기업의 FTA 활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중국에 최초로 설립된 이후, 현재 전 세계 6개국 13개 KOTRA 무역관에 운영 중입니다. 센터에서는 FTA 홍보 및 1:1 상담은 물론,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며, 발로 뛰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 덕분에, 지난 4년 동안 다양한 성과도 자연스럽게 일궈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집은 이제까지의 센터 지원활동을 공유하여 성공노하우를 전파하고,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발간되었습니다. 이번 사례집에는 센터가 지난 1년간 결실을 맺은 우수 지원사례 중 우리기업들이 가장 궁금해 할만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역 실무에서 발생하는 생생한 사례들을 통해 독자들은 센터의 서비스는 물론 FTA 활용을 위한 알찬 실무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수출의 벽이라도 FTA라는 사다리를 활용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본 사례집과 FTA해외활용지원센터가 수출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바랍니다.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국내외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CONTENTS |

I.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소개	06
1.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란?	08
2.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설치지역	09
3.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12
II.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사례	20
1. 베이징 FTA활용지원센터	22
올바른 품목분류로 수출통관 시간 절약하기 / 커피자동판매기	24
FTA활용으로 일타쌍피, 관세와 증치세 더불어 줄이기 / 인테리어 필름	28
2. 상하이 FTA활용지원센터	32
복잡한 외국인도수출, 정확한 정보 확인은 필수 / 섬유기계	34
유관기관 설득으로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까지 착척 / 자동차부품	40
3. 칭다오 FTA 활용지원센터	44
요동치는 한-중 무역환경, FTA 관세혜택으로 이겨내기 / 유자차	46
바이어 매칭부터 해외인증 안내까지, 꼼꼼한 가이드로 수출길 활짝 / 판넬, 보강재	50
4. 청두 FTA 활용지원센터	54
갑작스러운 가격 인하 압박, FTA로 활로를 찾다 / 강철자재	5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수도 만회할 방법은 있다 / 치과용기구	59
5. 광저우 FTA활용지원센터	62
수출 성약, 국가별 상이한 HS코드 확인부터 / 조미김	64
원재료에 따라 상이한 HS코드, 정확한 품목 분류의 필요성 / 꽃포장지	68
6. 다롄 FTA활용지원센터	72
중국 조선시장 진출, 한중 FTA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조선기자재	74
원재료 소싱까지 바꾼 FTA 관세절감 효과 / 이불솜	78
7. 텐진 FTA활용지원센터	82
FTA별 협정관세 비교로 내게 맞는 FTA 찾기 / 신발	84
FTA가 안된다면 APTA로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최대 효율로 협정 활용하기 / 포장테이프	88
8. 하노이 FTA활용지원센터	92
철저한 FTA협정문 분석으로 고집스러운 베트남 공무원을 설득하다 / 닭 가공육, 설육	94
백문이 불여일견! 공장실사로 잠재운 원산지 논란 / 들깨	98



9. 호치민 FTA활용지원센터 .....	102
쉽고 빠르게 발급 가능한 대한민국 원산지증명서, 경쟁사를 물리치다 / 액세서리 .....	104
화장품과 화장품구, 필요한 인 증은 다르다 / 화장품스펀지 .....	107
10. 보고타 FTA활용지원센터 .....	110
이가 안되면 잇몸으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한국산 증명하기 / 전통식 공압공구 .....	112
덤핑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샘플 송부도 1달러 이상으로 / 섬유 .....	116
11.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 .....	120
'근무일'에 대한 오해 타파로 관세 추징을 피하다 / 감열지 .....	122
직항 수출이 아니라면 FTA 적용이 불가하다? 직접운송규칙을 충족하는 또다른 방법 / 유아용 및 건강 보조 음료 .....	126
12. 뉴델리 FTA활용지원센터 .....	130
나마스떼 인디아! 한국 화장품 수출 최초 한-인도 CEPA 적용 / 페이스파우더 .....	132
미세한 수기 서명의 차이, 인도 세관 설득하기 / 합금강의 봉 .....	136
13. 방콕 FTA활용지원센터 .....	140
교육 콘텐츠 수출 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FTA / 학습 콘텐츠 .....	142
과세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 삼푸 .....	146
III. 정보 및 Q&A .....	152
1. KOTRA 제공 통상규제 정보 소개 .....	154
1) 통상·규제 (위치 : [뉴스]-[통상·규제]) .....	155
2) 해외인증정보 (위치 : [비즈니스]-[해외인증정보]) .....	156
3) 해외인증컨설팅회사 (위치 : [비즈니스]-[해외인증컨설팅회사]) .....	158
2. Q&A .....	160
1) HS CODE란 무엇이며, 어디서 확인하는 것인가요? .....	160
2)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이란 무엇인가요? .....	166
3)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	168
4)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69
5)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무엇인가요? .....	171
6) 원산지(포괄)확인서란 무엇인가요? .....	175
7) FTA 인증수출자란 무엇이며, 혜택은 무엇인가요? .....	177
8) 원산지조사란 무엇인가요? .....	179

2018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 I

part

##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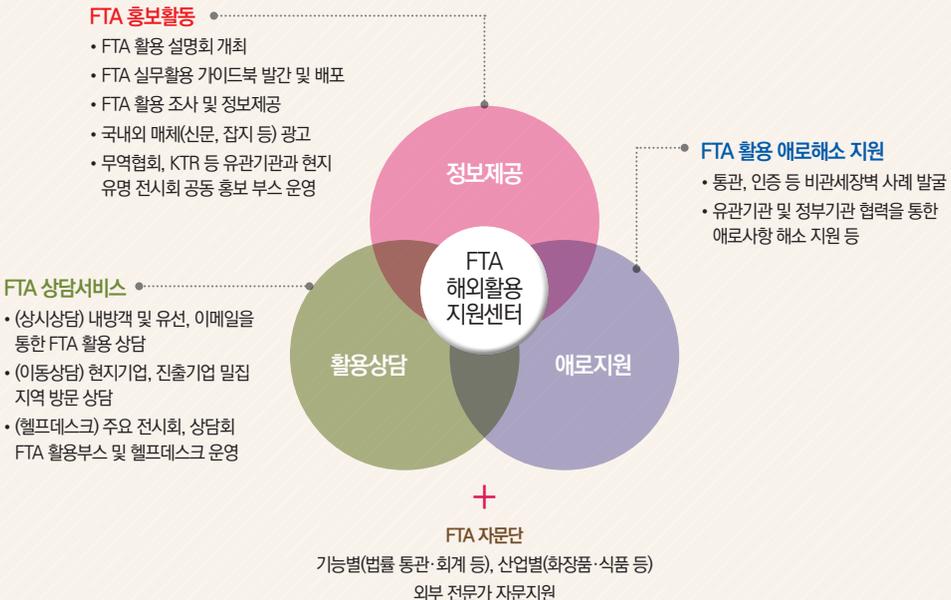
1.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란?
2.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설치지역
3.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 1.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우리나라 기업의 FTA 활용도 향상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가 해외에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과 현지 바이어들이 FTA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설립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FTA 활용에 대한 심층 상담 및 각종 애로사항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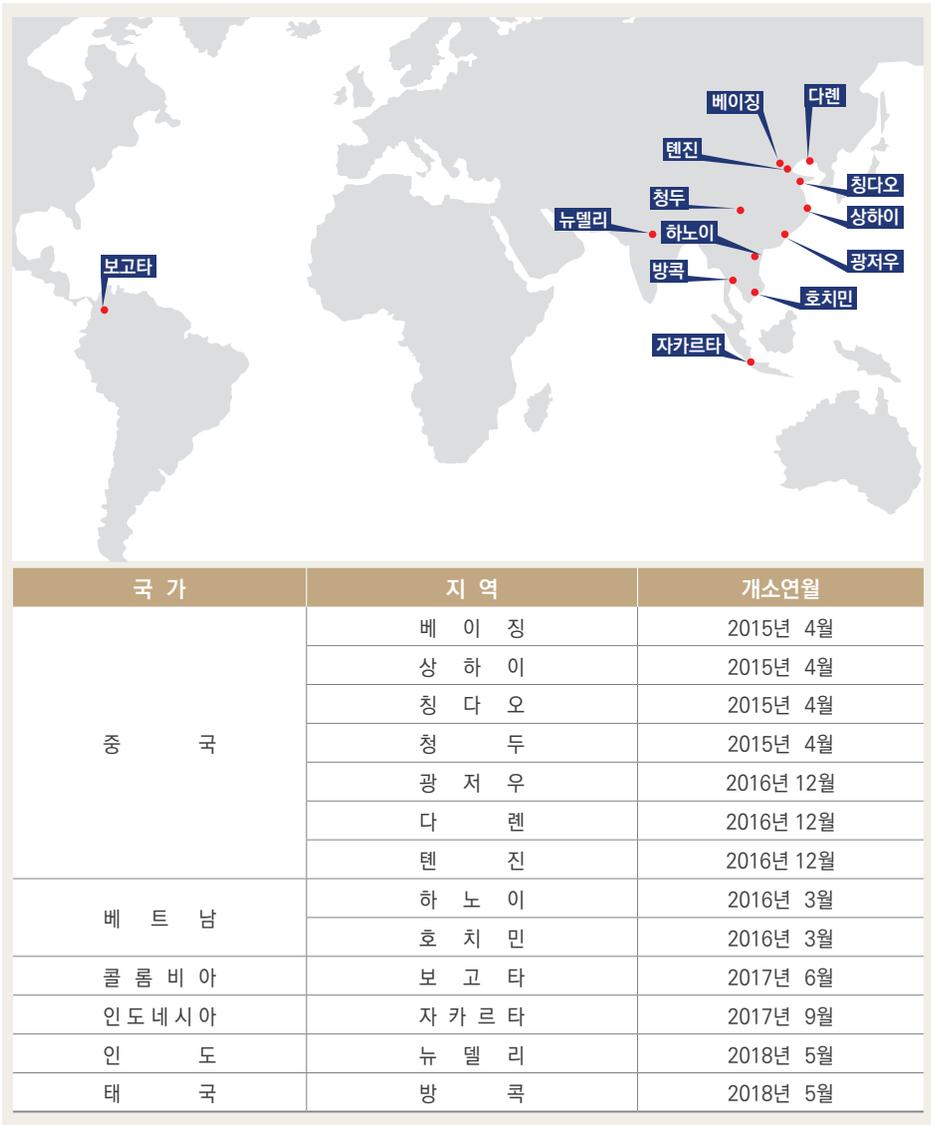
2018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15건(52개국)의 FTA 협정이 발효되어 있습니다. 협상 중이거나 서명, 타결 혹은 여건을 조성하고 있는 국가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총 78개국과 FTA 협정국이 됩니다. 이에 발맞추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지원 영역은 더욱 넓어질 전망입니다.

###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전담 직원 및 전문가 배치



## 2.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설치지역

현재 중국 7개소, 베트남 2개소, 인도네시아 1개소, 콜롬비아 1개소, 태국 1개소, 인도 1개소 등 총 6개국에 13개 센터가 현지 KOTRA 무역관 내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 Tip



## 한국의 FTA 추진현황



## 발효국가

- ① 한·칠레 FTA 
  - 최초의 FTA
  - 중남미 시장 교두보
- ② 한·싱가포르 FTA 
  - 아세안 시장 교두보
- ③ 한·EFTA FTA 
  - 유럽시장 교두보
  - \*EFTA (서유럽 경제 연합체  
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 ④ 한·아세안 FTA 
  - 거대경제권과 체결한  
최초의 FTA
  - \*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⑤ 한·인도 FTA 
  - BRICS국가 거대시장
- ⑥ 한·EU FTA 
  - \*EU (유럽연합)
  -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 ⑦ 한·페루 FTA 
  - 중남미 진출 교두보
- ⑧ 한·미국 FTA 
  - 거대 선진 경제권
- ⑨ 한·터키 FTA 
  - 유럽·중아시아  
진출 교두보
- ⑩ 한·호주 FTA 
  - 오세아니아 주요시장
- ⑪ 한·캐나다 FTA 
  - 북미 선진시장
- ⑫ 한·중국 FTA 
  - 우리의 제1위 교역  
상대국 (2015년 기준)
- ⑬ 한·뉴질랜드 FTA 
  - 오세아니아 주요 시장
- ⑭ 한·베트남 FTA 
  - 우리의 제3위 투자상대국
- ⑮ 한·콜롬비아 FTA 
  - 중남미 신흥시장



### 서명/타결 국가

- ① 한·중미 FTA 
  - 북미와 남미를 잇는 전략적 요충지
  - \*SICA (중미통합체제 국가 중 5개국)
  - 파나마,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 \* 과테말라는 협정 발효 후 정식 가입절차를 거쳐 참여 예정

### 재개, 개시, 여건조성 국가

- ① 한·멕시코 FTA 
  - 북중미 시장 교두보
- ② 한·EAEU 
  - 성장잠재력과 지정학적 가치가 높은 신흥시장
  - \*EAEU (유라시아경제연합)
  -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 ③ 한·GCC FTA 
  - 자원부국, 기업 선호도 1위 (2015년 기준)
  - \*GCC (걸프협력회의)
  - 사우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UAE

### 협상 중 국가

- ① 한중일 FTA 
  -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 ② 한·RCEP 
  -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 아세안 10개국,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 ③ 한·에콰도르 SECA 
  - 중남미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확보
- ④ 한·이스라엘 FTA 
  - 창조경제 모델국
- ⑤ 한·MERCOSUR FTA 
  - 남미 최대시장
  - \*MERCOSUR (남미공동시장)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 3.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주요 활동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FTA의 수혜 효과와 활용 방법을 제대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설명회, 이동상담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박람회와 전시회에 홍보부스 및 헬프데스크를 설치하여 현지 기업인과 해외바이어와 상담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FTA 수혜품목의 관세 절감 지원, 수출 성약 등 우리 기업이 FTA를 통해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3-1. FTA 관련 설명회 및 세미나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체결국과 FTA의 혜택을 알리기 위해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베이징, 하노이 등 13개 FTA해외활용지원센터 주관으로 총 79회의 설명회와 세미나를 개최했고, 약 4,300여 명 이상의 현지진출 기업인 및 해외 바이어가 참석했습니다.



한-아세안 FTA 활용설명회



한중 통상 비즈니스 포럼

#### 3-2. 이동상담회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현지 기업 밀집지역(공단 등)에 직접 방문하여 이동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과의 FTA 체결 효과를 홍보하고, 관세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 기회를 마련하여 FTA를 활용한 한국 제품의 수입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델리 지역 CEPA 협정 이동상담회



인천광역시 동남아 무역사절단 연계 한-베FTA 이동상담회

### 3-3. FTA 홍보부스 및 헬프데스크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다양한 기업과 바이어들이 모이는 해외 전시회나 박람회에 FTA 홍보부스 및 헬프데스크를 설치, 운영합니다. FTA 홍보 및 활용을 비롯해 기타 실무를 진행하며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을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8 강서구 동남아 무역사절단



태국 방콕 한국 우수상품전 참가기업 대상 FTA 이동 데스크 운영



2018 태국 방콕 전기자동차 전시회 FTA 헬프데스크 운영



CCPIT 개최 세미나 연계 한중 FTA 홍보부스 운영



2018 상하이 유아용품 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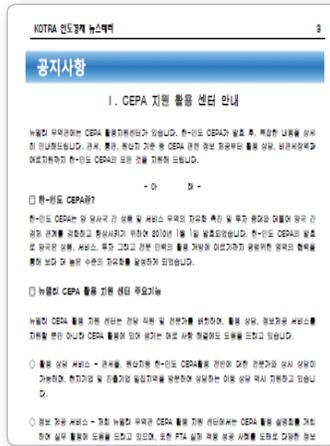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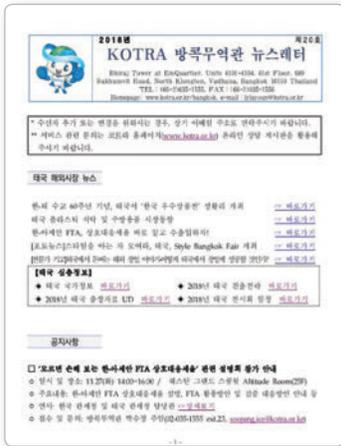
2018년 충남 중국 무역사절단 헬프데스크 운영

### 3-4. 온라인 홍보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FTA와 관련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합니다. KOTRA 해외시장뉴스 웹사이트(<http://news.kotra.or.kr>) 뿐만 아니라 위챗 플랫폼(중국 지역)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FTA 관련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FTA 활용 방법에서 홍보 행사에 관한 정보까지 최신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현지 바이어 및 무역 일선에 있는 기업들에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SNS 홍보활동



무역관 뉴스레터 홍보

### 3-5. FTA활용 애로해소 지원

FTA 홍보 및 정보 제공 뿐 아니라 해외에서 겪는 FTA 활용 애로사항 해결 역시 FTA 해외활용지원센터가 돕고 있습니다. 무역실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통해 수출 성약을 지원하며, 2018년 한 해에 실시한 상담 및 애로해소 지원 건수는 201건에 이릅니다. 필요 시 전담 직원이 현지기관을 방문하거나, 주재국 공관의 협조를 받아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중국 현지기업 방문 상담



중국 CCPIT 업무협약

### 3-6. FTA활용 컨설팅관 운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국내외 KOTRA의 대표 마케팅 사업과 연계하여 FTA활용 컨설팅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컨설팅관에서는 전담 관세사와 진행하는 1:1 FTA 컨설팅 및 FTA활용 미니세미나를 제공합니다. 또한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및 'Trade Navi' 웹사이트를 활용해 직접 HS Code 및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보는 'FTA활용 체험' 역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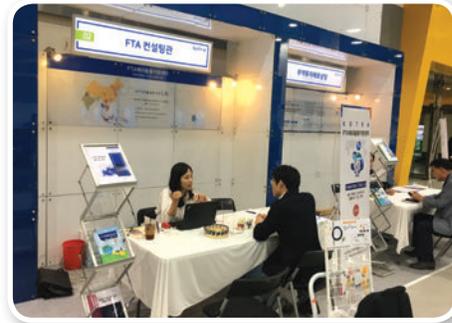
2018 K-Beauty 엑스포



2018 K-Licensing 로드쇼



2018 싱가포르 한류박람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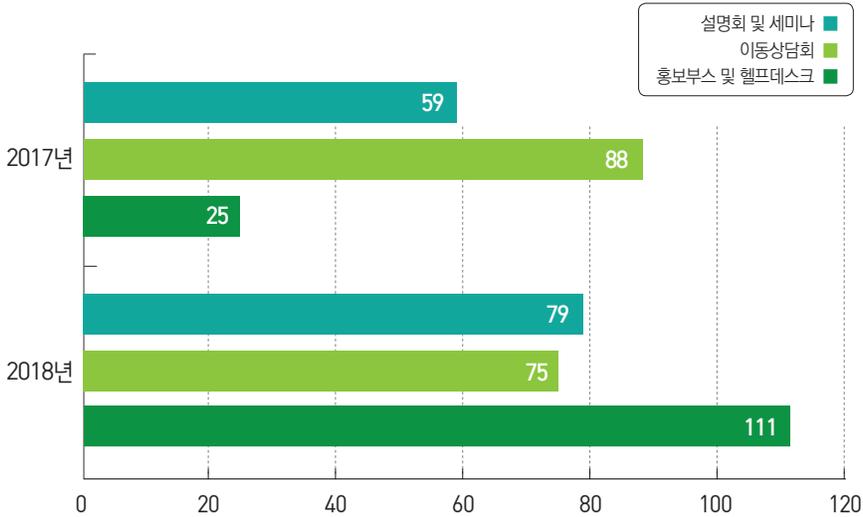


2018 수출첫걸음 종합대전

### 3-7. 2018년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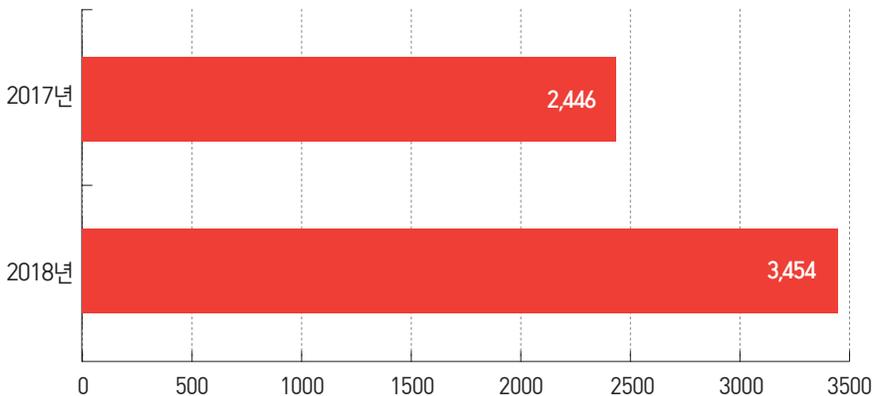
#### ① 사업 실적

설명회 및 세미나 79회, 이동상담회 75회, 홍보부스 및 헬프데스크 운영 111회 등 FTA 활용을 위한 해외 홍보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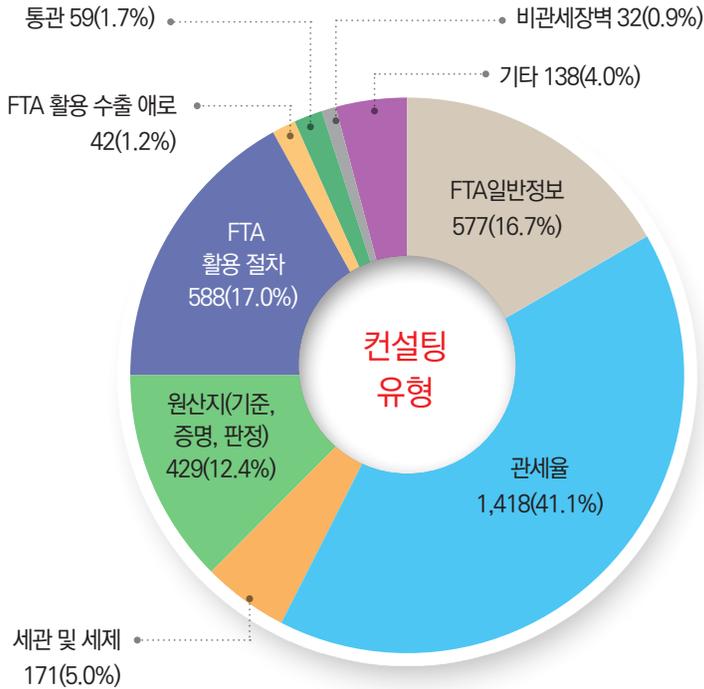
#### ② 컨설팅 실적

2018년 한 해 동안 총 3,454회의 컨설팅을 통해 FTA 활용 및 무역 지원



### ③ 컨설팅 유형

관세율(41.1%), FTA 활용절차(17.0%) 및 FTA일반정보(16.7%)에 대한 상담이 대다수



## Tips



##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SNS 플랫폼 (중국지역)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는 SNS 플랫폼을 통해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SNS 구독으로 무역 핫 이슈 공유, 투자 가이드 등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 구독방법



1. 위젯 화면 진입 후 우측 상단 '+' 터치 후 '친구 추가'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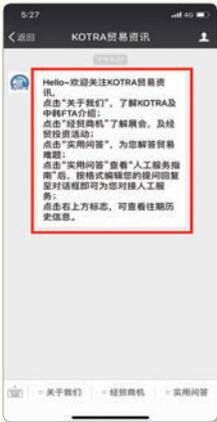
2. 맨 밑 "公众号" 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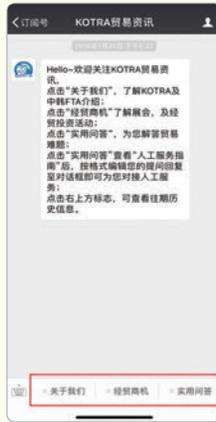
3. "KOTRA贸易资讯" 입력 후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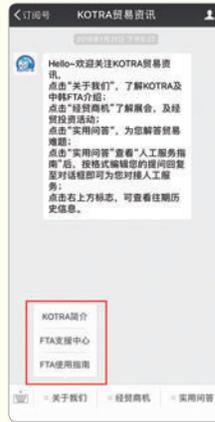
4. "关注" 터치 후 구독 완료



5. 인사말 및 위젯 메뉴 사용 설명



6. 메인메뉴



7. 사이드 메뉴



8. 오전 8시 구독자 예게 뉴스 발송

특히, 메인메뉴 중 [질의응답(实用问答)]에서는 1) 온라인 상담 2) HS코드 검색 3) 원산지증명가이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소와 시간의 제약없이 실시간 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2018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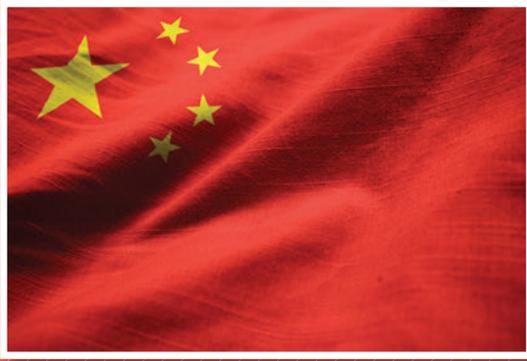


# II

part

##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우수사례

- 01 베이징 FTA활용지원센터
- 02 상하이 FTA활용지원센터
- 03 칭다오 FTA활용지원센터
- 04 청두 FTA활용지원센터
- 05 광저우 FTA활용지원센터
- 06 다렌 FTA활용지원센터
- 07 텐진 FTA활용지원센터
- 08 하노이 FTA활용지원센터
- 09 호치민 FTA활용지원센터
- 10 보고타 FTA활용지원센터
- 11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
- 12 뉴델리 FTA활용지원센터
- 13 방콕 FTA활용지원센터



# 중국 China

---

## ① 베이징 FTA활용지원센터

베이징은 중국 최초의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도시로 지정된 '서비스업 전국 1위' 의 도시이다. 중국판 실리콘 밸리인 중관춘을 중심으로, 중국의 창업기업과 유니콘 기업의 숫자 역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베이징 FTA활용지원센터는 한중FTA에 대한 안내 및 관세절감, 무역통관 등을 지원하며 베이징을 거점으로 한 기업들의 무역 확대를 돕고 있다.



**주 소** (중문) 北京市 朝阳区... 望京宏泰东街浦项中心29层(W0005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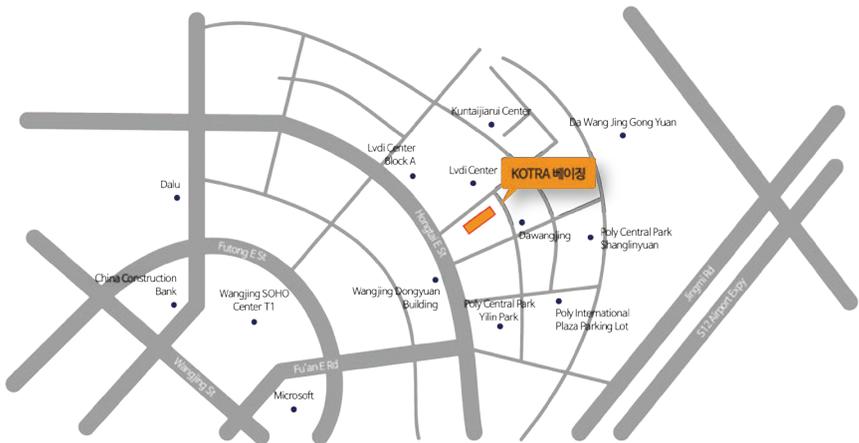
(영문) Pu Xiang Zhong xin, Chaoyang Qu, Beijing Shi, China

**전 화** (86-10)6410-6162 (ext. 70)

**팩 스** (86-10)6505-2310, 6410-6090

**e-mail** 717132@kot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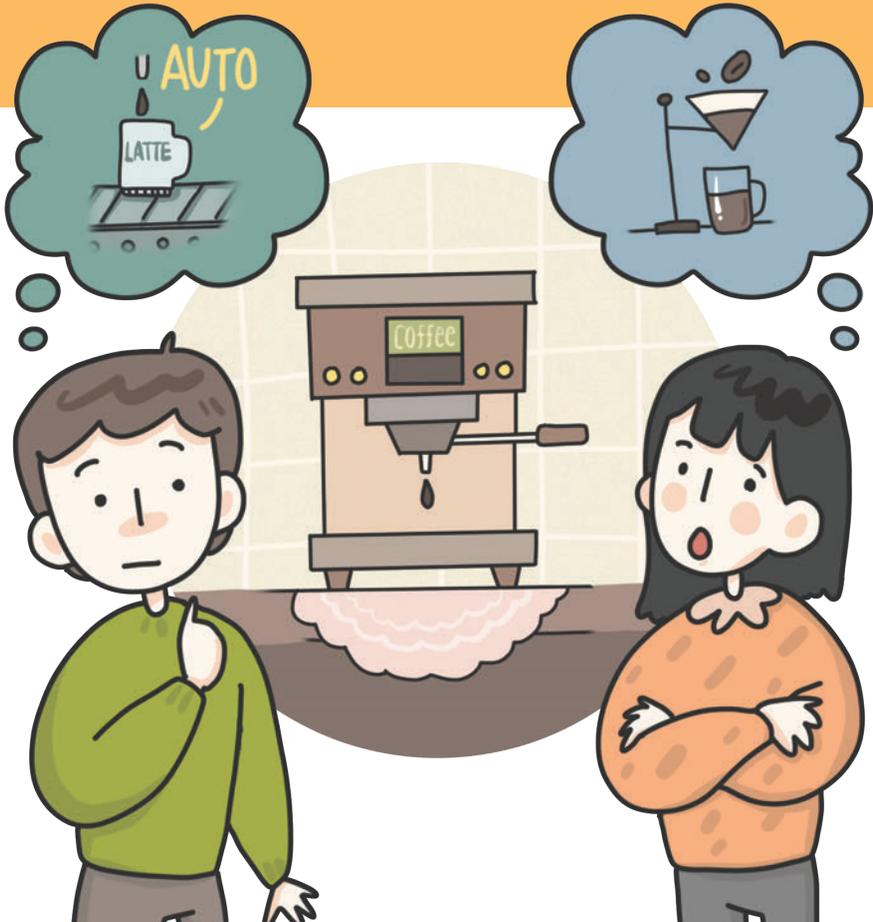
**약 도**



베이징 / D사 / 커피자동판매기

# 올바른 품목분류로 수출통관 시간 절약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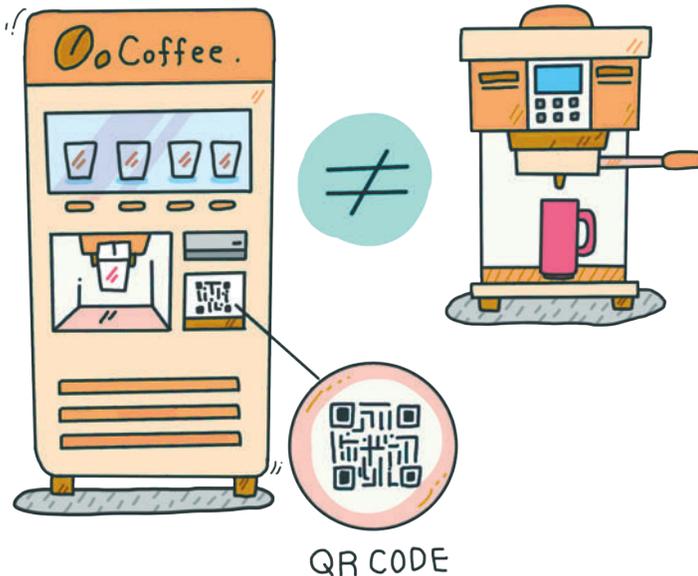
동일한 품목이지만 해석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출입시 상대국의 품목분류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이다. 올바른 품목분류는 통관절차를 간단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품목 분류가 다른 커피 자동판매기와 커피 제조머신

커피자동판매기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업체인 D사는 원두그라인더, 물 끓이는 기계 및 첨가 원료로 구성된 기계를 만드는 곳이다. 제조보다는 ‘판매’쪽에 초점을 맞춘 기존 자동판매기에 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QR코드 스캔 결제기능을 추가하여 중국 시장 공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작 바이어를 찾아 수출을 개시하려 하니 문제가 발생했다. 수출예정 제품에 대하여 D사와 중국해관이 해석한 품목분류가 달랐던 것이다. 자사 제품을 자동판매기(HS 8476.81)로 생각한 D사와 달리 중국 해관에서는 이를 일반 커피머신(HS 8516.71)으로 분류했다. 커피를 내리는 것이 자동 판매보다 더 우선인 기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중국 대중의 편의를 위해 채택한 QR 결제가 원인이었다. 직접 돈을 넣는 것이 아니라서 자동 판매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 호해설 정의에 따라 정확하게 해야 하는 품목분류

이에 D사는 부랴부랴 베이징 FTA활용지원센터(이하 “베이징 센터”라 함)를 찾았다. 만약 중국 해관이 요구하는 대로 일반 커피머신으로 HS code를 신고하게 되면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인증을 받아야 해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자초지종을 들은 베이징 센터는 품목 분류 결과, 해당 제품이 커피 기계보다는 자동 판매기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제8476호 호해설에 따르면, 자동판매기에 대한 정의가 나온다. 바로 “이 호에는 하나 이상의 코인·토큰이나 자기카드를 슬롯(slot)에 넣으면 어떤 상품을 제시해 주는 여러 가지의 기계를 분류한다(This heading covers the various kinds of machines which supply some kind of merchandise when one or more coins, tokens or a magnetic card are put in a slot)”라는 규정이다.

중국 해관에서는 호해설에 명시된 코인·토큰 등이 삽입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일반 커피머신으로 분류하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QR코드는 결제수단의 하나로 충분히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베이징 센터는 QR코드 역시, 코인·토큰 또는 자기카드의 종류 중 하나로 판단할 수 있기에 해당 호해설도 동일한 시각에서 해석돼야 한다고 설득했다.

### Tip



#### 중국 강제 인증(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CCC인증마크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중, 가정용 전기제품·특정IT 제품 등에 대하여 수입하기 전에 인증을 받고 해당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해야 하는 제도이다. 인증마크는 좌측과 같다.

## 기존 유권 해석을 철회한 중국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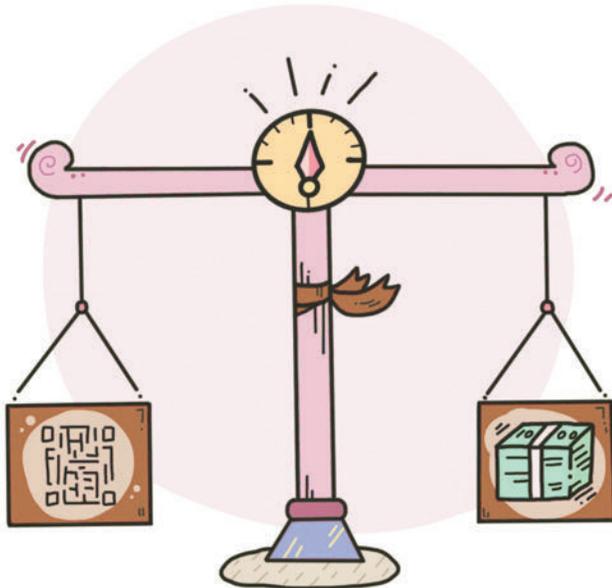
베이징 센터의 끈질긴 주장에 고민을 하던 중국 해관은 최종적으로 기존의 유권해석을 철회했다. 결국 D사는 본래의 자동판매기(HS 8476.81)의 HS Code으로 수입신고할 수 있게 되어, CCC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다. 또한 한국과 동일한 HS Code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 역시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 Tip



#### HS개정과 기술발전

우리가 알고 있는 관세율표, 즉 HS는 5년에 한 번씩 개정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에 개정된 바 있다. 기술의 발전이 매우 빠른 요즘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HS가 이러한 제품군을 실시간 모두 반영하기는 어렵다. 새로운 기술이 탑재된 제품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석을 통한 품목 분류가 수반되어야 하므로, FTA해외활용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사전에 품목분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베이징 / J사 / 인테리어 필름

# FTA활용으로 일타쌍피, 관세와 증치세 더불어 줄이기

잘 버는 것 못지않게 비용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사업을 하다보면 생각하지도 못한 돈이 나갈 때가 많은데 이럴 때 세금이라도 아무지게 아낄 수 있다면 회사로서는 큰 도움이 된다.



##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중국의 증치세

한국에서 인테리어 필름을 제작하고 있는 J사는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기회를 살피왔다. 중국의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필름 시장 역시 함께 커지고 있었기에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였다.

중국 현지 진출에 힘을 쏟기 위해 법인을 설립한 후 J사가 먼저 찾은 곳은 베이징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베이징 센터”라 함)였다. FTA를 활용시 혜택이 있다는 이야기를 다룬 진출 기업에게서 들은 기억이 있기 때문이었다.

베이징 센터에서 얻은 여러 가지 정보 중에 J사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중국의 증치세 인하에 관한 것이었다.

### Tip

#### 중국 증치세

상품의 판매, 영역제공, 상품 수입 시에 발생하는 간접세금으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와 유사한 세금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증치세는 화물과 가공·수리 등 특정 용역을 중심으로 과세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 및 무체물, 그리고 모든 용역을 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적용범위가 보다 더 넓다고 볼 수 있다.

## FTA 활용으로 관세가 줄면 더불어 줄어드는 증치세

J사의 주력 품목인 인테리어 필름은 제품의 폭이 넓다. 이런 모양의 필름은 대부분 HS 3919.90에 해당된다.

이 품목의 기본 관세율은 6.5%이지만, FTA를 활용할 경우에는 4.7%의 협정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 정부가 2018년 5월부터 시행한 대로 1%의 증치세 인하가 적용된다면 좀 더 세금 절약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증치세는 관세를 과세표준의 일부로 삼고 있기 때문에 관세가 줄면 자연스럽게 증치세도 줄게 된다. 때문에 FTA를 활용하기만 해도 증치세까지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 Tip



## 중국 증치세 계산방법

$$(CIF \text{ value} + \text{수입관세} + \text{소비세}) \times \text{증치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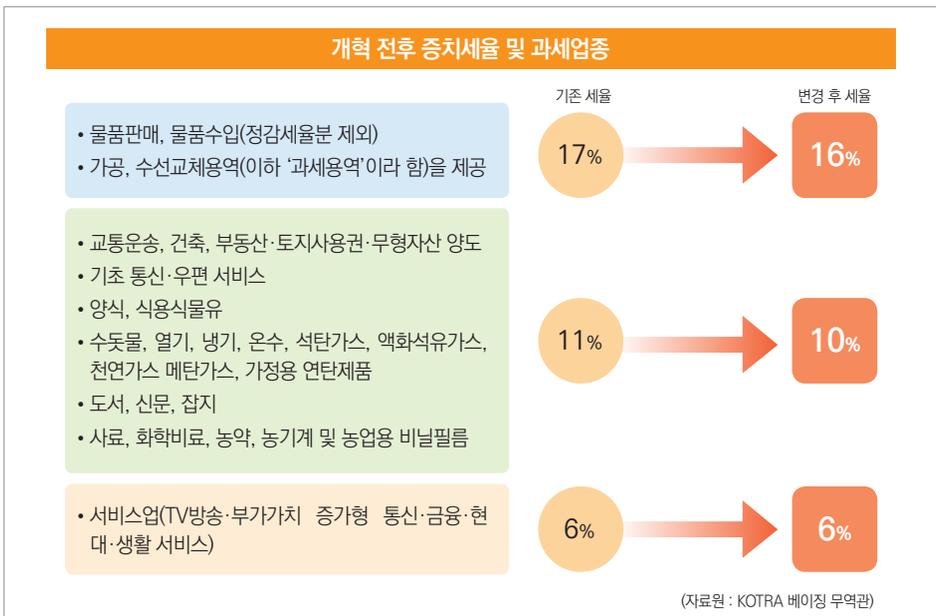
\* CIF Value : 목적지에 인도될 때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한 화물의 총 가격

\*\* 소비세 : 특정 소비재에만 부과되는 일종의 개별소비세 성격의 간접세

## 세금 절약과 수출 이익 달성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FTA

이에 J사는 베이징 센터로부터 FTA 활용에 대한 조언을 받아 한국 본사에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했다. 처음에는 FTA를 활용해서 관세나 조금 절감하려던 것이, 중국 정부의 법령이 바뀌면서 생각보다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필름을 수출해서 얻는 이익도 이익이지만 세금을 줄이면서 절약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J사는 요즘도 종종 알아야 할 추가 정보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베이징 센터를 찾고 있다.



당시 발급된 J사의 원산지증명서

**ORIG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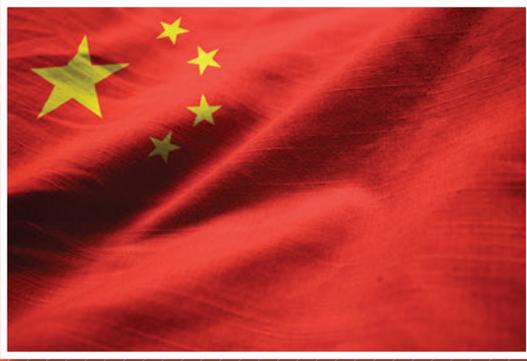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Certificate Code.: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AVAILABLE UPON REQUEST		<b>CERTIFICATE OF ORIGIN</b> <b>Form for Korea-China FTA</b> Issued in <u>THE REPUBLIC OF KOREA</u> (see Overleaf Instruction)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5. Remark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INCHON, KOREA Port of discharge: QINGDAO, CHINA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6. Item number (Max 20)</th> <th style="width: 15%;">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th> <th style="width: 20%;">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th> <th style="width: 10%;">9. HS code (Six-digit code)</th> <th style="width: 10%;">10. Origin criterion</th> <th style="width: 15%;">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etc.)</th> <th style="width: 15%;">12. Number and date of invoice</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NO MARKS AND NUMBERS(N/A) //////////</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391990</td> <td style="text-align: center;">PSR</td> <td style="text-align: center;">155 KG 250 M</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391990</td> <td style="text-align: center;">PSR</td> <td style="text-align: center;">1,240 EG 2,000 M</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3</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1</td> <td style="text-align: center;">391990</td> <td style="text-align: center;">PSR</td> <td style="text-align: center;">155 KG 250 M</td> <td style="text-align: center;"> </td> </tr> <tr> <td colspan="2"></td> <td style="text-align: center;">Total Package : 50 CT</td> <td colspan="4"></td> </tr> <tr> <td colspan="2"></td> <td style="text-align: center;">//////////</td> </tr> <tr> <td colspan="7" style="text-align: right;">End Of Page ...</td> </tr> </tbody> </table>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	NO MARKS AND NUMBERS(N/A) //////////		391990	PSR	155 KG 250 M		2		1	391990	PSR	1,240 EG 2,000 M		3		1	391990	PSR	155 KG 250 M				Total Package : 50 CT							//////////	//////////	//////////	//////////	//////////	End Of Page ...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	NO MARKS AND NUMBERS(N/A) //////////		391990	PSR	155 KG 250 M																																																			
2		1	391990	PSR	1,240 EG 2,000 M																																																			
3		1	391990	PSR	155 KG 250 M																																																			
		Total Package : 50 CT																																																						
		//////////	//////////	//////////	//////////	//////////																																																		
End Of Page ...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u>THE REPUBLIC OF KOREA</u>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u>PEOPLE'S REPUBLIC OF CHINA</u>  SEOUL KOREA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4. Certification: <i>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 - China FTA.</i>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1/1

■ Identify the authenticity of certificate for verification with the website.(<http://cert.korcham.net/search>)



# 중국 China

---

## ② 상하이 FTA활용지원센터

상하이는 2017년 기준, 대중무역 수출의 42%를 차지한 곳으로 한국 대중무역의 중심 지역이다. 또한 세계적 물류 중심지로서 동북아지역 물류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상하이 FTA활용지원센터는 상시 애로상담 및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전파를 위주로 난징과 항저우 등 인근 무역관과 연계하여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화동지역 전반을 관할하며 기업 애로해소 지원에 앞장서는 중이다.



**주 소** (중문) 中國 上海市 興義路 8號 上海万都中心 3110室(200336)  
大韓貿易投資振興公社 上海代表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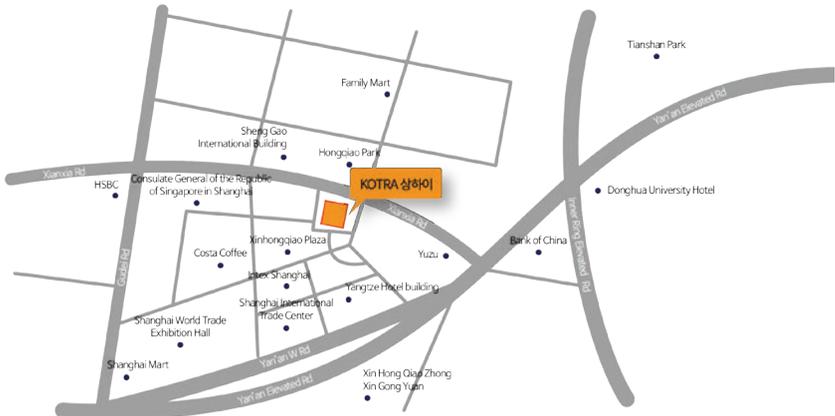
(영문) KOTRA Shanghai(KOTRA China Head Office), Room 31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200336

**전 화** (86-21)5108-8771 (ext. 141)

**팩 스** (86-21)6219-6015, 6236-8211

**e-mail** 716464@kotr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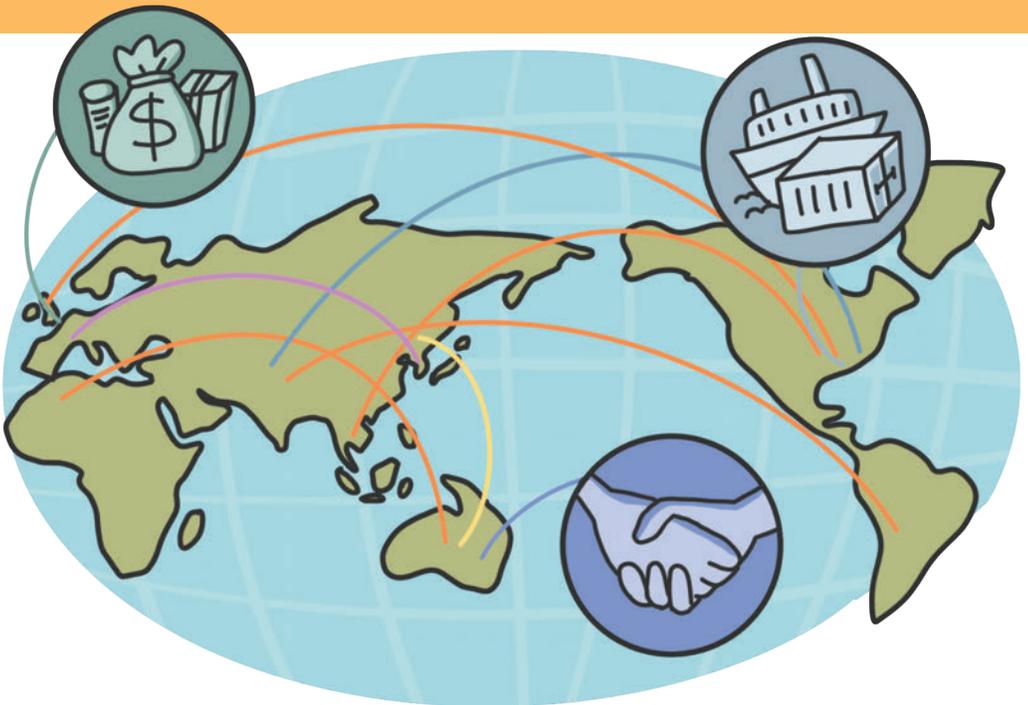
**약 도**



상하이 / J사 / 섬유기계

# 복잡한 외국인도수출, 정확한 정보 확인은 필수

무역이라는 것이 꼭 두 나라의 주고받기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 삼자 무역이 되기도 하고 그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를 갖기도 하므로 나라별 현황과 해당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이익 창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외국인도수출’ 도 활용할 수 있는 FTA

J사는 중국에서 기계를 구입 후, 베트남에 판매하는 외국인도수출을 진행하는 회사이다. 한국에서는 결제만 진행한 후 중국업체로부터 B/L을 받고 이를 다시 Switch B/L로 변경한 후 해당 물품을 베트남 바이어에게 수출하기 때문에 베트남 바이어 입장에서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물건을 받는 셈이 된다.

이렇게 외국인도수출을 하다 보니 J사의 경우, 한국-중국 혹은 한국-베트남간의 무역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별도의 FTA활용은 염두에 두지 않은 상태였다.

### Tip



#### 외국인도수출이란?

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나 물품은 국내에서 수출 통관이 되지 않은 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는 거래방식을 말한다.

### Tip



#### Switch B/L

중계무역에서 사용되는 B/L의 형태이다. 원 수출자(선적자, 실제 공급자)가 B/L에서 공개되는 경우에 수입자가 중계 수출자를 배제하고 원 수출자와 거래하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서류이다. 원 수출지에서 발행된 B/L을 Surrender하고 중계업자를 수출자로 변경하여 만든 B/L이며 위의 사례와 같이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경우에 발급할 수 있다.

## 바이어의 갑작스런 아세안-중국 FTA 원산지증명서 요구

그렇게 수출을 진행하던 어느 날, J사는 베트남 바이어로부터 당황스러운 요구를 받게 되었다. 베트남이 포함된 아세안과 중국이 FTA를 체결하고 있으니 아세안-중국 FTA 원산지증명서(아세안-China Free Trade Certificate of Origin)를 달라는 것이었다. 해당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통관이 불가함은 물론, 대금 결제까지도 차례로 막힐 상황이었다. 거기에 계약서에 명기된 조건에 의해 계약 파기 및 미래 계약분까지 취소 될 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급박한 마음으로 J사는 상하이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상하이 센터)를 찾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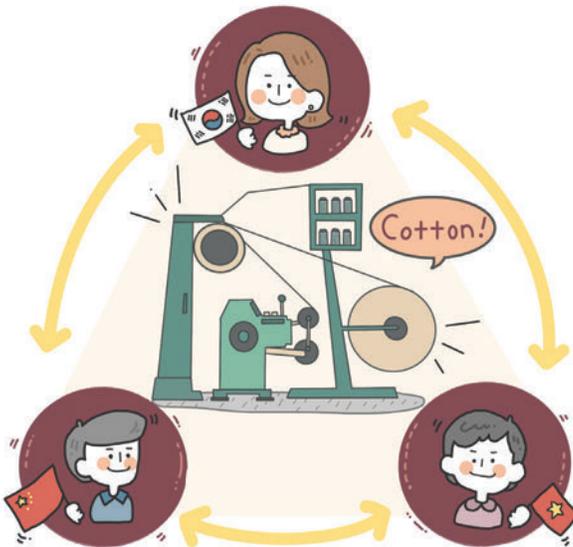
그리고 상하이 센터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자신들이 생각한 것처럼 중국 업체의 원산지 증명서를 그대로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아세안-중국 FTA에 필요한 Form E

상하이 센터는 상하이 CCPIT(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 연락해서 아세안-중국 FTA에 따른 Form E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Form E는 아세안과 중국 간에 맺어진 FTA에서 사용되는 원산지증명서 양식을 의미한다.

상하이 센터는 J사에게 Form E의 양식과 작성방법에 대하여 안내해주고 제3자 인보이스가 작성(판매국-한국, 선적국-중국, 수입국-베트남)되므로, 13번 란에 Third Party Invoice에 반드시 체크해야 함을 강조했다. 7번 Description란에도 Third party invoice(제3자 인보이스-물품 수출자가 아닌 타인이 작성한 상업송장)임을 기재해주는 것이 핵심이었다.

또한, 9번란의 FOB가격은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판매하는 FOB가격이 아닌, 중국 현지에서 생산이 완료된 상태에서의 FOB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주었다.



원산지기준은 한-아세안 FTA의 RVC 40%와 원산지판정방법이 유사해서 이전에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인 Form AK 및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본 경험이 있던 J사는 상기 조언을 통해 신속하게 Form E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에 J사는 베트남 바이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었고 원활한 무역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 Tip



## RVC (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

RVC는 역내가치포함기준(Regional Value Contents Method)의 약어로 제품의 부가가치를 활용하는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이다. 제품의 가격(보통 FOB Price)대비 역내국의 부가가치(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한-아세안 FTA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집적법과 공제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집적법	공제법
$RVC = \frac{VOM}{FOB} \times 100\%$	$RVC = \frac{FOB - VNM}{FOB} \times 100\%$
<p>VOM은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하며, 원산지 재료, 직접 노동비용, 직접 경상비용, 운송비용과 이윤을 포함한다.</p>	<p>VNM은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으로, (가) 원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시점에서의 CIF가치, 또는 (나) 작업 또는 공정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가장 이른 시점에 확인된 가격이다.</p>

## 아세안-중국 FTA 원산지결정기준 RVC

$$\frac{\text{Value of Non-ACFTA materials} + \text{Value of materials of Undetermined origin}}{\text{FOB Price}} \times 100\% < 60\%$$

Therefore, the ACFTA content : 100% - non-ACFTA material = at least 40%

비원산지 재료비율이 60% 미만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역으로 원산지 가치 비율이 40%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한-아세안 FTA의 RVC 40%와 그 의미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 원산지증명서 Form E

## Original (Duplicate/Triplicate)

1. Product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ASEAN-CHIN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E Issued in _____ (Country) See Overleaf Notes			
2. Product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_____  Vessel's name/Aircraft etc. _____  Port of Discharge _____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Part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product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Party)	8. Origin criteria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product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 specified for these products in the Rules of Origin for the ACFTA for the product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_____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_____			
13 <input type="checkbox"/> Issued Retroactively <input type="checkbox"/> Movement Certificate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checked="" type="checkbox"/> Third Party Invoicing			

### 전문용어 알아두기

## 무역인도조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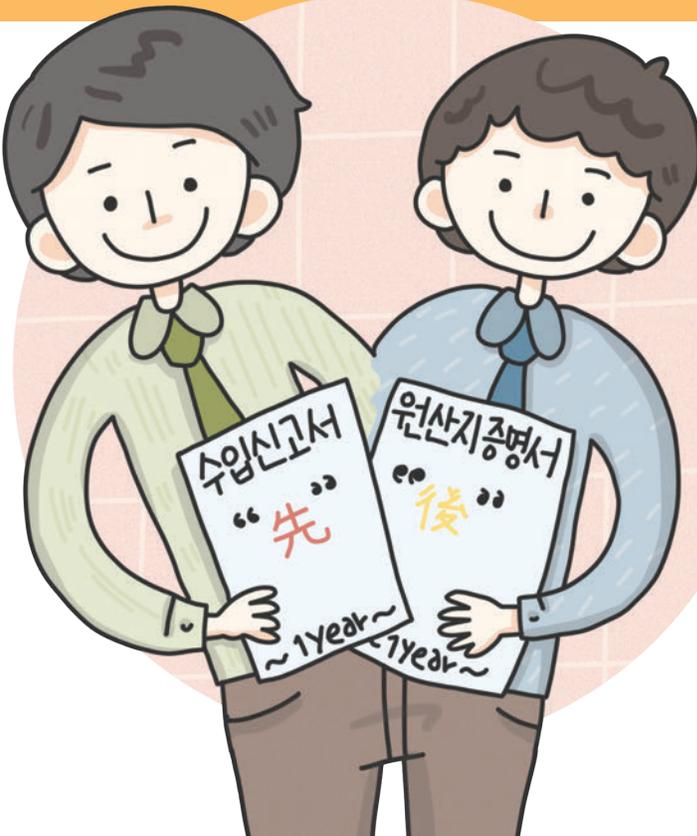
국제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체결시, 운송부담을 고려하여 거래조건을 정형화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약어를 사용한다.

약어	설 명
EXW	공장인도조건(Ex works) :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화물을 인도하는 무역거래조건
FCA	운송인도조건(Free Carrier) : 매도인이 지정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까지 책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FAS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 매도인이 지정된 선적항의 부두 위나 본선 옆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거래조건
FOB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 매도인이 화물을 선적하고 본선상에서 화물의 인도를 마칠때까지만 운임료와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
CFR	운임포함인도조건(Cost and freight) : 매도인이 화물을 선박에 선적하고 목적항까지의 운임도 지급하는 무역거래조건
CIF	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 매도인이 화물을 선적하고 운임료와 보험료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CPT	운송비지급인도조건(Carriage paid to)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하면서 운송비의 책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CIP	운송비 보험료 지급조건(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매도인이 목적지까지 화물을 인도하면서 운송비 및 보험료의 책임을 부담하는 무역거래조건
DAT	도착터미널 인도조건(Delivered At Terminal) : 물품이 운송수단에서 양하된 상태로 수입자의 지정목적항이나, 지정터미널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에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보는 조건
DAP	목적지 인도조건(Delivered at place) : 매도인이 수입국의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이는 때'까지 인도하는 조건. 이 때, 운송은 매도인이 하지만,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진행함
DDP	관세지급인도조건(Delivered Duty Paid) : 물품이 도착운송수단에서 지정터미널에 '양하준비된 상태'로 매수인의 처분 하에 놓일 때, 매도인이 인도한 것으로 보는 조건. DAP 조건에 추가로 수입 관세 및 기타 세금을 부담함

상하이 / A사 / 자동차부품

# 유관기관 설득으로 원산지 증명서 소급발급까지 척척

FTA는 사후적용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의 수출 건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한데, 중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사후발급 과정이 복잡하다. 그럴 때는 각 지역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 될 수 있다.



## 이유 없는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거부

A사는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회사이다. 중국에 있는 회사로부터 자동차용 소형 펌프를 수입하던 중, KOTRA를 통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FTA사후적용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들었다. 그간 중국과 거래하면서도 한-중 FTA를 활용하지 않았던 A사는, 이제라도 관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수출자에게 과거 수출건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뜻밖의 것이었다. 중국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는 전달이었다.

### Tip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규정

한-중 FTA 제3.15조 제4항에서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원산지 증명서가 불가항력, 뜻하지 아니한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선적 전 또는 선적 시 또는 선적일 후 7근무일 이내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 증명서는 "소급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하되, 선적일부터 1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 발급될 수 있다.

## CCPIT 직접 방문으로 협상 시작

당황한 A사는상하이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상하이 센터)를 찾아와 고충을 토로했다. A사의 설명을 들은 상하이 센터 역시 이유를 알 수 없어 고심에 빠졌다. 다행인 것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CCPIT(The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경우 민관기관이어서 협상이나 설득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는 곧장 원저우 세관과 발급기관인 CCPIT측에 연락을 취해서 FTA규정과 기존에 소급 발급했던 원산지증명서의 샘플들을 보여주고 소급 발급 자료를 요청했다. 특

히, 함께 가져갔던 영문 한-중 FTA 규정을 강력히 어필하며, 선적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지 않았다면, 원산지증명서가 소급 발급될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했다.

## 자주 확인하지 않는 영문본 문서라서 발급 거부한 중국 행정 기관

직접 설득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미발급 사유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중국 행정 기관은 내부 규정을 주로 참조하고 한-중 FTA 영문본과 같은 문서에 대해서는 자주 확인하지 않는 편이다. 규정 준수를 위해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무작정 발급해주지 않았던 것이었다.

결국 상하이 센터는 중국 생산자의 BOM(자재명세서, Bill Of Materials)을 제시해주고, 그 자리에서 원산지 판정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었다. 상하이 센터의 도움으로 A사는 애로사항 발생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Tip



## 중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변경

중국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해 2018년 8월 20일부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질검중국에서 해관총서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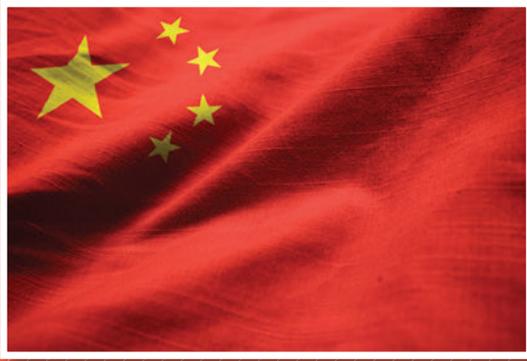
기존	변경
질검중국(AQSIQ)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해관총서(GACC)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원산지증명서 발급 해관은 해관 총서의 산하 42개 직속해관이다.

## 중국 해관총서 42개 직속해관

해관명	해관영문명	해관명	해관영문명
北京海关	Beijing Customs District	武汉海关	Wuhan Customs District
天津海关	Tianjin Customs District	长沙海关	Changsha Customs District
石家庄海关	Shijiazhuang Customs District	广州海关	Guangzhou Customs District
太原海关	Taiyuan Customs District	深圳海关	Shenzhen Customs District
呼和浩特海关	Huhehaote Customs District	拱北海关	Gongbei Customs District
满洲里海关	Manzhouli Customs District	汕头海关	Shantou Customs District
大连海关	Dalian Customs District	黄埔海关	Huangpu Customs District
沈阳海关	Shenyang Customs District	江门海关	Jiangmen Customs District
长春海关	Changchun Customs District	湛江海关	Zhanjiang Customs District
哈尔滨海关	Harbin Customs District	南宁海关	Nanning Customs District
上海海关	Shanghai Customs District	海口海关	Haikou Customs District
南京海关	Nanjing Customs District	重庆海关	Chongqing Customs District
杭州海关	Hangzhou Customs District	成都海关	Chengdu Customs District
宁波海关	Ningbo Customs District	贵阳海关	Guiyang Customs District
合肥海关	Hefei Customs District	昆明海关	Kunming Customs District
福州海关	Fuzhou Customs District	拉萨海关	Lasa Customs District
厦门海关	Xiamen Customs District	西安海关	Xian Customs District
南昌海关	Nanchang Customs District	兰州海关	Lanzhou Customs District
青岛海关	Qingdao Customs District	西宁海关	Xining Customs District
济南海关	Jinan Customs District	银川海关	Yinchuan Customs District
郑州海关	Zhengzhou Customs District	乌鲁木齐海关	Urumqi Customs District

자료원 : 인천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 중국 China

---

## ③ 칭다오 FTA활용지원센터

칭다오는 칭다오항을 중심으로 해운과 내륙항 물류가 발달한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교두보이다. 일찍부터 한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이라 한국과의 교류도 활발하다. 때문에 칭다오 FTA활용지원센터에서도 이에 맞춰 한중 경제협력 단지 건설 등 한국 기업 유치를 위한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 기업과 전문 바이어가 많이 참가하는 전시회, 박람회에서도 한중 FTA집중 홍보 및 상담 지원에 힘쓰고 있다.



**주 소** (중문) 中國 山東省 青島市 市南區 燕兒島路10號 凱悅中心9層905  
 (영문) 905, 9F, Capland Center, No. 10 YanErDao Road, Shinan District,  
 Qingdao, 266071, P.R.China

**전 화** (86-532)8388-7931 (ext. 505)

**팩 스** (86-532)8388-7935

**e-mail** wangyaon@kotra.or.kr

**약 도**



칭다오 / M사 / 유자차

# 요동치는 한-중 무역환경, FTA 관세혜택으로 이겨내기

단기간 큰 금액을 수출입 하는 것도 좋은 성과로 볼 수 있지만, 오랜 기간 안정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장기적인 기업 이윤에는 훨씬 더 중요하다. 매일 급변하는 무역 시장 안에서 안정적으로 거래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방법을 만나보자



## 사드 배치로 인한 뜻하지 않은 무역 갈등

유자차를 생산, 판매하는 M사는 2017년 6월 웨이하이 국제식품박람회に参加해서 많은 바이어를 만났다. 이후 그 중 한 업체인 중국의 R사가 M사의 제품을 맘에 들어 해서 소량의 샘플을 수입 후 시장 반응을 살폈고, 다행히 시장 반응이 좋아서 R사는 M사의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그런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려던 찰나,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이 나타났다. 바로 사드 갈등이었다. 사드 갈등으로 인해 중국 내에서는 한국 수입품을 다른 국가 제품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면서 한국 수입품 간의 저가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였다. 당장 수출을 앞두고 있던 M사로서는 안정적인 무역 환경의 구축이 무엇보다 급하고 중요했다.



## 지속적인 관세 인하 혜택을 위해 필요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이에 M사는 처음에 바이어를 만나는 데 도움을 주었던 칭다오 무역관의 칭다오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칭다오 센터)를 찾았다. 칭다오 센터는 해당 제품의 기본세율(당시 20%)에 비해 한-중 FTA를 활용할 경우 관세율이 18.7%이며 점진 철폐로 지속적으로 관세혜택을 볼 수 있음을 강조했다.

M사의 경우 이미 비교적 발급이 용이한 비특혜(일반) 원산지증명서는 가지고 있었지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는 신규 발급이 필요했다. 비특혜(일반) 원산지증명서는 관세 특혜대상이 아닌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표시, 덤핑조사 등을 목적으로 요구되는 원산지증명서라서 향후 M사가 자사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선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꼭 필요했다.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으로 이룬 장기계약 성사

이에 M사는 요동치는 시장 상황과는 상관없이 자사의 제품력을 믿고,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이때도 칭다오 센터는 유자차의 한국 HS Code(HS 2008.30)와는 달리 중국으로의 수출 HS Code는 HS 2106.90 임을 주지시켜 혹시 있을지 모를 실수를 방지해주었다. 칭다오 센터의 도움으로 무사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M사는 R사에 이를 전달하고 센터가 정리해주었던 각종 혜택과 제품 및 가격 경쟁력을 피력했다.

그 결과, 작년의 첫 계약과는 달리 2018년도에는 전년 계약액 대비 6배가 넘는 발주를 받을 수 있었다.

### Tip



#### 관세율 인하폭과 원가 절감 효과

관세율이 1~2% 정도 낮아지는 것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저가 소비재가 아닌 자동차, 기계, 전자제품과 같이 계약금액이 수백~수천억에 달하는 산업군은 얘기가 달라진다. 2.5%의 관세절감 효과가 있는 한-미 FTA 자동차 분야도 수치상으로는 작아 보이나, 수출규모가 매우 크므로 FTA 관세혜택이 상당하다. 저가 소비재라 하더라도 향후 계약 규모가 커지게 된다면, 고정원가를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 중국 MFN세율(기본세율) 인하

2018년 7월부터 중국정부는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총 1,449개 품목에 대하여 수입관세율(평균 15.7% → 6.9%)을 인하 발표했다. 이는 2015년부터 총 5차례 진행된 중국정부의 자발적인 시장개방 확대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에도 비정기적 MFN 세율 인하가 발표될 수 있어 우리나라 수출자는 이와 관련하여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은 소득 수준 상승에 따라 소비재 분야에 대한 관세율을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어, 우리나라의 고급 수출품 시장에 큰 기회가 될 것이다.

M사의 원산지증명서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 Certificate Code.: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b>CERTIFICATE OF ORIGIN</b> <b>Form for Korea-China FTA</b>  Issued in <u>THE REPUBLIC OF KOREA</u> (see Overleaf Instruction)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04 MAR, 2018 Vessel/Flight/Train/Vehicle No: HANSUNG INCHEON 2273W Port of loading: INCHEON, KOREA Port of discharge: WEIHAI, CHINA						
5. Remarks: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 <sup>3</sup> ,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	NO MARKS AND NUMBERS(N/M) ////////////////////  ////	HONEY JIN CITRON TEA 560G  Total Package : 20,000 BO  ////////////////////	210690	PSR	18,100 KG 20,000 BTL	//////////
End Of Page ...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PEOPLE'S REPUBLIC OF CHINA..... (  .....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4. Certification: <i>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 - China FTA.</i>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칭다오 / W사 / 판넬, 보강재

# 바이어 매칭부터 해외인증 안내까지, 꼼꼼한 가이드로 수출길 활짝

해외 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 기업과 무역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다. 하지만 해외의 믿을만한 파트너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경우, 국내 기업 정보를 제대로 해외 기업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문적인 기관이 꼭 필요하다.



## 한국의 기업과 거래를 원했던 중국 업체

중국 업체 W사는 각종 합성수지를 수입해서 판넬, 보강재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칭다오 지역에서 영업을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고 한국에서 고품질의 에폭시 수지를 수입하고 싶어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한국 기업의 정보가 필요했기에 수소문을 통해 칭다오 무역관의 FTA 활용지원센터 (이하 칭다오 센터)를 찾아왔다.

이에 칭다오 센터는 W사의 요청에 따라 한국의 여러 화학업체를 알아보고 그 리스트를 전달해주었다. W사가 수입절차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자 '한국은 화학공업이 발달하여 에폭시 수지(HS 3907.30)의 경우 한국에서 전 공정을 거친다'고 설명하며 주요 원재료인 에피클로로히드린이나 비스페놀류 또한 한국에서 생산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주었다. 이로 인해 한-중 FTA원산지규정은 충분히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했다.

## 한-중 FTA 활용을 통해 4.7%의 관세 적용이 가능한 에폭시 수지

센터가 소개해 주었던 화학업체는 이미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수출하면서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온 터라,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또한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 수 있었다.

에폭시 수지의 원산지규정은 CTH(4단위 HS Code변경기준, Change of Tariff Heading)인데, 제품의 HS Code은 HS 3907호에 해당된다.

하지만 각 원재료는 기초 화학물이 분류되는 제28류 또는 제29류에 해당하는 물질들이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 예상했다. 또한 이 품목의 MFN세율이 현재는 6.5% 이지만,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시 추후 4.7%로 적용이 가능하게 될 터였다.



## Tip



### 원산지결정기준 CTH(Change of Tariff Heading, 4단위 HS Code변경기준)

완제품의 HS Code 4단위와 각 비원산지(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재료의 HS Code 4단위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국산 원산지 재료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아래의 BOM으로 예를 든다면, 제품의 HS Code 4단위와 동일한 HS Code 4단위를 가진 재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CTH를 충족한 것이다.

제 품		재 료		
제품명	HS Code	재료명	원산지	HS Code
에폭시수지	3907.30	epichlorohydrin	중국	2901.30
		Bisphenol A	일본	2907.23
		Tetra bromo bisphenol-A	일본	2908.19

## FTA안내 뿐 만 아니라 MSDS 서류까지 알려준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여기에 더불어 칭다오 센터가 W사에게 강조한 것은 한-중 FTA 원산지규정 외에도 물질안전보건자료라고 불리는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였다. MSDS는 화학물질을 만드는 기업이 제품 구성 물질과, 주의점은 무엇인지 기술하여 작성해야 하는 서류이다.

사실 에폭시 물질의 경우 화학물질이기에 수입 시 반드시 검험검역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리고 이 때 꼭 필요한 서류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인데 처음 해외거래를 시작한 W사의 경우 이 부분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다. 만약 설명을 듣지 않고 진행했으면 추후 당황하여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되었을 것이 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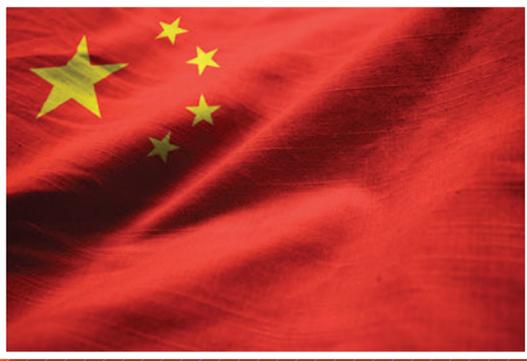
칭다오 센터는 한국 수출자에게 직접 MSDS를 전달받아 W사에게 전해주었다. 더불어 원했던 한국 업체 리스트는 물론이고 꼼꼼하게 챙겨야 할 사항들에 대한 정보도 알차게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왜 그런 서류들을 받아야 하는지와 이를 통해 무역에서 어떤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도 챙겨 들은 덕에 무사히 한-중FTA활용의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었다.

### Tip



#### 품목분류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은 명칭과 외관, 형태와는 달리 그 구성성분을 알지 못한다면, 품목분류를 정확히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무제품은 제40류에 분류되는데, 외관상 고무(Rubber)로 보이더라도 실리콘 고무(HS 3910), 연화고무(3913) 등은 일반적인 명칭과는 달리 품목분류 목적상 “플라스틱” 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분류해야 하기 때문이다. MSDS는 제품을 구성하는 물질 정보가 포함되어, 이러한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 잡아주는 기초자료로 볼 수 있다. 화학제품의 원산지판정시 필수로 구비해야 한다



# 중국 China

---

## 04 청두 FTA활용지원센터

청두는 중국의 서부 내륙시장 진출의 거점도시이다. 내륙 개발 확대로 서부 내륙의 금융, 교통, 경제, 신흥 산업의 중심 허브로 육성되고 있다. 이미 쓰촨성 내에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 중 316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이에 청두 FTA활용지원센터는 중국의 서부 지역을 거점으로 삼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FTA 이동상담회 및 헬프데스크 등을 통한 FTA활용 지원을 하고 있다.



**주 소** (중문) 中國四川省成都市錦江區...順城大街8號中環廣場2座29層  
 (영문) 29/F Tower 2 Plaza Central, Shuncheng Dajie, Jinjiang District, Chengdu, Sichuan China

**전 화** (86-28)8672-3501 (ext. 103)

**팩 스** (86-28)8672-3507

**e-mail** zoulu@kotra.or.kr

**약 도**



청두 / R사 / 강철자재

# 갑작스러운 가격 인하 압박, FTA로 활로를 찾다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경우 지속해오던 거래에 집중하느라 새롭게 FTA를 활용할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FTA가 활용될 수 있는 범위는 꽤 넓어서, 가까운 무역관을 통해 꾸준히 정보를 얻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관세 절약 등에도 활용 할 수 있다.



## 중국 파트너사의 가격 인하 압박

R사는 강철자재를 생산, 수출하는 기업이다. 특히 방진 기술이 적용된 특수 자재를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데 최근 쓰촨성 지역에 지진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 수요가 크게 늘었다. 늘어나는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기 위해 2017년 청두에 현지 법인까지 설립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쓰촨성 내의 대기업 및 국영 기업까지 납품을 확대할 만큼 사업이 성장했다.

꾸준히 연마해 온 기술력이 가져 온 쾌거였지만 2018년 2월, 중국 파트너사인 P사의 가격 재협상 요청을 받으면서 고민이 생겼다. 첫 번째로는 심한 가격 인하 압박이었고 두 번째는 많은 물량으로 거래를 다변화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었다.

## 중국 업체의 가격 인하 압박에 대응할 수 있게 해준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결국, R사는 고민 끝에 청두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청두 센터)를 찾았다. 이미 과거에 법인 설립을 진행하면서 한 번 청두 무역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에 청두 센터를 찾으면 뭔가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었다.

수입단가를 낮추려면 FTA를 활용해서 관세를 절감해야 하지 않을까 했던 R사의 생각은 청두 센터와의 상담을 통해 옳은 판단임이 드러났지만, 진짜 문제는 R사에 FTA관리 인력이 없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청두 센터는 이미 쓰촨성 지역에서 자리를 잡고 실적을 올리고 있는 R사가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겠다고 했다. R사가 수출하는 자재의 원산지결정기준은 CTH(Change of Tariff Heading, 4단위 HS Code변경기준)인데, R사의 생산 공법 등을 감안할 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은 비교적 쉬운 일이었다.

R사는 일반 형강을 매입한 후 조형하는데 이러한 원재료의 세번은 7308호가 아닌 다른 호에 분류된다. 결국 CTH를 무난히 충족할 수 있는 제조공정 수준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에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수월할 것이라는 게 청두 센터의 의견이었다.

## Tip



### HS code 구조와 HS Code 변경기준

플라스틱, 고무, 철강, 비금속제품 등은 HS 구조가 가공도별로 구분되어 있다. 가령, 일차제품 형태의 플라스틱은 HS 3901호 ~ HS 3914호로 분류되고, 이를 가공한 상품들은 HS 3915호 ~ HS 3924호로 분류된다. 이러한 구조를 활용한 것이 HS Code 변경기준인 것이다. 즉,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재료의 외형에 가공 등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로 인해 만들어지는 공산품은 HS Code 변경기준을 충족하기 매우 쉽다는 뜻이 된다.

## FTA를 통해 줄어든 세율로 가격인하 압박 극복

청두 센터의 생각은 정확했다. R사의 경우 원재료의 양이 5가지 미만이라 원산지결정기준 뿐 아니라 BOM이나 제조공정도 작성이 손쉬운 편이었다.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증빙 서류 구비도 빠르게 이루어졌고 원산지증명서 역시 단시간에 발급받을 수 있었다.

R사 제품의 경우 기본 관세율이 4%이지만 한-중 FTA를 활용하면 관세율이 0.8%로 줄어든다. 관세율이 줄어든 만큼 가격 협상을 약속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셈이다.

센터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돕는 것 외에도 중국에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등 각종 사전심사 신청 시에는 직접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정보도 알려주었고, 덕분에 R사는 당황할 일 없이 중국 해관에 등록된 중국 수입자를 통해 사전심사까지 무사히 완료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R사는 파트너사인 P사와 무사히 계약 갱신까지 마무리하고 지금도 활발히 사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 Tip



### 중국 해관 사전판정제도

2018년 2월부터 중국 해관의 “사전판정제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기존에 존재했던 품목분류·원산지·가격 사전심사제도를 대체하는 것이다. 기존 사전심사제도가 해당 사전심사 결정을 내린 직속 해관에서만 결과 적용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면, 새로 시행되는 사전판정제도는 그 결과에 대하여 전국해관에서 공통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청두 / H사 / 치과용기구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실수도 만회할 방법은 있다

한번 발급된 서류를 수정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그 서류가 무역에 관한 것이면 더 힘들어진다. HS Code 한 자리, 글자 하나에 따라 각종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 번 신청할 때 더 꼼꼼히 보아야 하고 수정이 발생하면 최대한 빨리, 정확하게 해결해야 한다.



## HS Code 끝자리의 두 개 숫자 차이로 받지 못하게 된 관세 혜택

H사는 치과용 기구를 제작해서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이다. 쓰촨성 지역의 치과용 기구 업체에 납품하다가 그 상품성을 인정받아 중국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쓰양시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 치과용기구는 본래 기본 관세율이 4%이지만 한-중FTA를 활용하면 관세가 0.8%까지 낮아진다. H사는 청두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청두 센터)를 통해 해당 정보를 파악하고 한-중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 있었다.

그런데, 순조로를 것이라 생각했던 원산지증명서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H사가 수출하는 치과용기구는 HS 9018.49로 분류되는데, HS 9018.90으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것이다. 끝자리 숫자 두 개 때문에 완전히 다른 품목이 되어 버렸고 관세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발급 담당자의 실수인 것으로 밝혀지기는 했지만 문제는 발급이 되어 버린 증명서의 수정 가능 여부였다.

## 기존 원산지증명서 삭제 후 송부할 수 있는 신규 증명서

마음이 급해진 H사는 우선 원산지증명서재발급부터 진행을 했다. 제대로 된 코드로 재발급을 한 후 송부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다.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CO-PASS)상 전자 파일 전송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세관 담당자는 이미 중국 현지 해관에 기존의 원산지 증명서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의 증명서가 삭제되어야 새로운 증명서를 송부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중국 현지 해관에 삭제 요청을 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받지도, 삭제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시간만 흘러갔다. 결국 고민 끝에 H사는 청두 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 Tip



#### 한-중 원산지 자료교환시스템 (CO-PASS)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양국 간에 교환·관리·지원하는 표준시스템으로 자료교환뿐만 아니라 통계, 진위여부 조회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이 손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산지증명서의 원본 제출이 생략될 수 있어 행정절차 간소화가 대폭 이루어질 수 있었다.

## 기존 원산지증명서 삭제를 위한 기본 세율의 보증금 납부



H사의 이야기를 들은 후 청두 센터는 과거 유사 사례를 해결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이미 우리나라 수출기업 중에서는 H사처럼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했던 곳이 있었고, 그 때마다 중국 해관의 CO-PASS에서 기존에 전송된 원산지증명서를 삭제하여 처리했던 경험이 있었다. 기존 사례를 가지고 청두 센터 담당자는 현지 법인 담당자와 함께 해당 해관을 찾아갔다. 과거에 해결했던 사례를 들어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이 꽤 유효하게 작용해서 해관에서도 금세 수고를 해주었다.

이에 현지 세관은 기본세율 정도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한 후, 기존 원산지증명서의 기록을 삭제해주었다. 여기서 보증금은 세관에 현금 담보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보통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 등 세금을 면세 받는 경우에는 관세 및 기타 세금의 합계 금액만큼 보증금을 납부한 후에 통관을 허용하는데 FTA를 적용하는 물품도 이와 동일하다. 보증금은 3개월 이내에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므로, 수입절차를 재빨리 완료하기 위해서라도 우선 보증금은 납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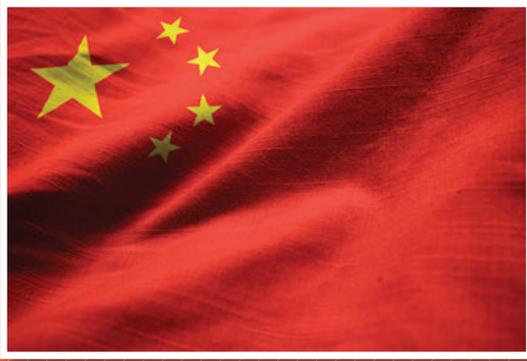
H사는 보증금 납부 직후, 재발급 받은 원산지증명서를 해관에 제출했고 기존 관세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Tip



#### 중국 해관 담보의 제공사유

관세 추후납부 뿐만 아니라, 수출입시 화물의 종류나 가격·증빙서류 등이 확정되지 않거나 감면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다. 또한, 임시수출입화물·가공무역방식의 보세화물, 위법 혐의가 의심되는 화물 등도 그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중국 내국법에 따라 제재대상인 경우(e.g.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체납자 수입물품 등)에도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으니 사전에 KOTRA 무역관 등과 담보제공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 중국 China

---

## 05 광저우 FTA활용지원센터

광저우는 한중 교역액의 약 1/4을 차지하는 무역거점이다. 대표적인 전시회나 박람회가 많이 열리며 바이어의 출입이 많다. 매년 두 번에 걸쳐 개최되는 캔톤페어의 경우 국내 5~60 개사가 참여하기 때문에 FTA활용상담수요도 많은 편이다. 광저우 FTA활용지원센터는 바이어와 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및 통관, 인증 등에 대한 다양한 상담을 진행하고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주 소** (중문) 中國廣州市天河區 天河路 208號 天河城大廈 2904-2907A 號  
(郵編 : 510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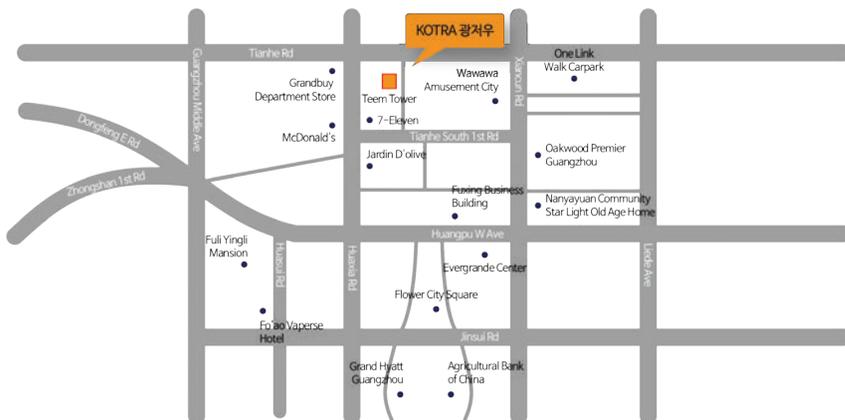
(영문) 2904-2907A Teem Tower, No.208 TianHe Road, TianHe District,  
GuangZhou, 510620, China

**전 화** (86-20)2208-1939

**팩 스** (86-20)2208-1636

**e-mail** 717087@kotra.or.kr

**약 도**



광저우 / H사 / 조미김

# 수출 성약, 국가별 상이한 HS코드 확인부터

조미김은 이제 명실상부한 최고의 수출 효자 품목이 되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조미김을 수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미김에 관한 HS Code 이슈는 종종 제기된다. 나라별 코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수월한 조미김 수출의 첫 걸음임을 잊지 말자.



## 활성화 된 조미김 수출, 혼란스러운 HS Co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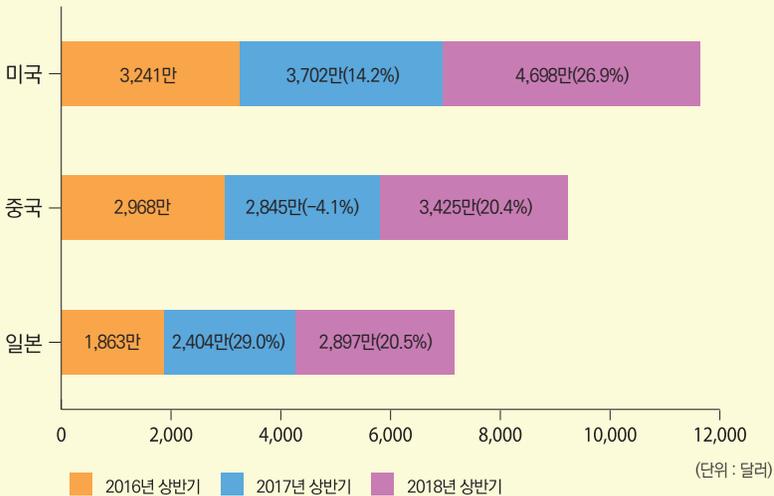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조미김은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수출 품목이다. 밥 반찬으로 먹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해외에서는 간식이나 안주 등으로도 인기가 많다. 이를 반증하듯 2018년 상반기에는 조미김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사랑받으면서 국내 관련 기업의 수출 호황도 이어지고 있는데, H사 역시 그런 기업 중 하나이다.

나름 FTA에 대해 고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무역업을 하던 H사는 어느날 곤란한 문제가 있다며 광저우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이하 광저우 센터)를 찾아왔다. 자신들이 기재한 HS Code가 자꾸 오류가 난다는 것이었다.

### Tip



최근 3년간 조미된 김의 상반기 수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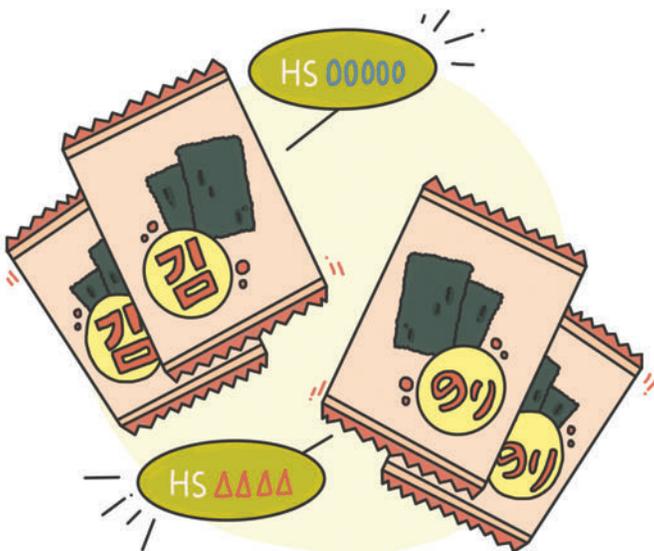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출처 : 관세청

## 통일된 HS Code로 통합 관리가 가능해진 조미김

광저우 센터로서는 익숙한 질문이었다. 벌써 수년째 조미김과 관련된 HS Code를 홍보 해왔지만 여전히 헷갈려하는 기업이 많은 까닭이었다. H사는 그동안 조미김의 HS Code가 2106.90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광저우 센터와의 상담에서 중국에서는 조미김을 ‘조제 식료품’ 이 아닌 ‘식물의 가공품’ 으로 분류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당연히 HS코드도 달랐다.

그리고 2018년부터 식물의 가공품에 해당하는 HS 2008.9931.00 라는 코드도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의 결정에 따라 또 바뀌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새로 조정된 조미김의 최종 HS Code는 2008.99였다.

이에 따라 중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조미김 수출시에 HS Code로 2008.99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센터의 설명이었다. 그 동안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조미김을 HS 2106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유럽을 비롯한 타 국가의 상당수가 HS 2008호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했고 이 부분이 반영된 결과였다. 덕분에 그동안 수출과 수입시에 각각 다른 HS Code를 사용했던 것과는 달리 이제는 하나의 HS Code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Tip



조미김의 품목분류

2018년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HS Committee) 60차 회의에서는 조미김의 품목분류를 2106.90호가 아닌 2008.99호로 결정했다. 이에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HS Code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 세계관세기구는 관세관련 법규와 절차를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하는 국제기구이다. 이 기구의 산하 HS위원회는 품목분류의 쟁점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조직이다.

HS Code 수정과 라벨 준비 등의 실무도 도와주는 센터

광저우 센터의 설명은 들은 H사는 정보를 받아들여 혹시 발생할지도 몰랐을 품목분류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 특히 세계관세기구 결정의 경우, 현장에서 일하는 실제 기업들이 소식을 듣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미리 알아보고 준비한 H사의 경우 다양히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식품 사전심사 제도, 필수 라벨 표기 사항도 꼼꼼하게 살피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후에도 H사는 광저우 센터의 도움으로 코드 수정 및, 중문 라벨 준비 등 자칫 놓치고 갈 수 있는 실무를 차근차근 챙기며 무역을 하고 있다.

Tip



수입식품에 대한 중국 필수 라벨표시 사항

중국으로 수입하는 포장식품은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 필수 라벨 표기사항은 아래와 같다.

No	표기사항	No	표기사항
1	식품명/원산지	6	생산업체가 적용한 제품 표준코드
2	생산업체 명칭 및 주소, 연락처, 대리인 정보	7	식품의 품질등급, 가공기술(식품표준이 요구할 경우)
3	생산일, 품질보증기간, 저장방법	8	식품생산허가(SC) 번호
4	순 중량, 고품질 함량(정량포장일 경우)	9	중문 주의사항 또는 경고마크
5	영양성분 표시	10	수출국 식품 위생인증 로고

광저우 / D사 / 꽃포장지

# 원재료에 따라 상이한 HS코드, 정확한 품목 분류의 필요성

품목이 하나면 그 품목의 HS Code 역시 단일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품목에 따라서는 하위 품목별로 각각 HS Code가 달라지기도 하므로 별도로 품목을 나눠 HS Code를 적용해야 한다.



## 원재료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하는 FTA활용

D사는 꽃 포장지를 생산, 판매하는 회사이다. 국내 시장에 한계를 느끼고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꾀하던 중, 2017년 종합무역사절단 참가를 통해 광저우 지역에 바이어를 확보했다.

D사가 생산하는 꽃 포장지는 식물 형태로 HS 5903.90로 분류된다. 당연히 해당 HS Code로 수출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광저우 FTA활용지원센터(이하 광저우 센터)에서 새로운 사실을 듣게 되었다. 포장지의 재질에 따라 HS Code가 나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다.

### Tip



#### 양국간의 HS 5903.90호의 비교

한국	중국
5903.90-0000 기타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류의 식물류	5903.9010.00 Insulating cloth or tape
	5903.9020.00 Imitation leather
	5903.9030.00 Other

#### HS code별 세율 비교

HS code	기본세율(%)	APTA(%)	한-중 FTA(%)
5903.9010.00 Insulating cloth or tape	8	6.5	2
5903.9020.00 Imitation leather			7.3
5903.9030.00 Other			8

## 같은 물품이라도 중국에서의 세율은 달라질 수 있다

광저우 센터의 말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같은 포장지인 HS 5903.90도 3개의 HS Code 으로 다시 나누어 구분하고 있었다. 형짚이나 테이프가 보강된 것, 인조 가죽제, 그리고 기타였는데 D사의 제품은 기타에 해당되었다.

문제는 이 사실을 간과하고 무작정 HS 5903.90로 신고를 했을 때 세 개로 나뉜 세부 항목 중 어떤 것으로 세율이 적용될지 모른다는 것에 있었다. 같은 코드를 가지고 있지만 세부 품목별로 세율이 다른 까닭이었다. D사의 제품은 본래 기본세율이 8%이고 한-중 FTA를 적용하게 되면 동일 세율을 부과 받지만 APTA를 적용할 경우 6.5%로 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 Tip



#### APTA(Asia Pacific Trade Agreement,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의 다자간(한국·중국·인도·방글라데시·몽골·라오스·스리랑카) 무역협정으로 특혜원산지제도의 일종이다. FTA와 동일하게 기관발급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만 양식은 다르다. APTA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한이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로 제한되어 있고, 소급발급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료회의를 통해 양허품목수와 관세인하율을 정하기 때문에, 관세인하율이 불규칙적이다.

## 관세율표 체계 차이로 차등 적용되는 국가별 세율 꼭 확인하기

이에 광저우 센터는 D사에게 정확하게 품목을 지정해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설명해주었다.

만약 임의적인 신고로 세율이 잘못 적용될 경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더 힘든 까닭에 처음부터 관세율표를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D사의 경우처럼 물건에 따라 국가별 원산지결정기준은 동일할지라도 관세율표의 체계가 달라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반드시 FTA해외활용지원센터를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Tip

해외관세율 찾아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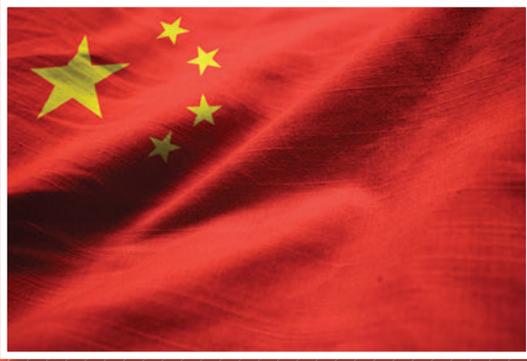
해외 관세율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는 대표적으로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과 한국무역협회 트레이드내비(<http://www.tradenavi.or.kr>)가 있다.

The screenshot shows the '관세법령정보포털'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website. The search results are for '제11부 방직' (Textiles) under '세계HS' (World HS). The main table lists items with columns for '품목번호' (Item No.), '단위' (Unit), '한국' (Korea), '중국 [중국 2018년]' (China [China 2018]), and '기본세율' (Basic Rate). The table includes entries for '폴리설타를 침투 도포 피복하거나' (Polyester fabrics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plastics) and '폴리우레탄의 것' (Polyurethane), with duty rates of 40%, 70%, and 90%.

관세법령정보포털

The screenshot shows the 'TradeNAVI' website. The search results are for 'HS Code: 5903101000'. The product description is 'Textile fabrics impregnated, coated, covered or laminated with plastics, other than those of heading No. 59.02: - With poly(vinyl chloride): \*\* Insulating cloth or tape'. The duty rate is shown as 40%.

트레이드내비



# 중국 China

---

## 06 다렌 FTA활용지원센터

다렌은 중국 동북 3성 대외교역의 관문이다. 다렌항을 중심으로 항구, 철도, 내륙운송이 연결된 복합 운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다렌 FTA활용지원센터는 한중FTA 사업설명회를 중심으로 다렌해관과 중국기업, 투자진출기업 간의 소통을 돕고 한중 FTA활용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기업의 애로 해소를 돕고 전시회 연계 FTA 헬프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주 소** (중문) 中國 大連市 中山區… 同興街 25號 世界貿易大廈 45層 4505室  
 (영문) Room 4505, World Trade Center Dalian, China

**전 화** (86-411)8253-0051 (ext. 117)

**팩 스** (86-411)8253-0050

**e-mail** alice717133@kotra.or.kr

**약 도**



다렌 / T사 / 조선기자재

# 중국 조선시장 진출, 한중 FTA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

협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때를 적절한 시기에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무역의 세계에서는 그 때가 많으면 많을수록, 혹은 혜택이 크면 클수록 더 유리해진다. 그런 점에 있어서 FTA 원산지증명서는 '무역환경의 매력적인 조건'으로 이제 제일 먼저 챙겨야 할 필수 서류가 되었다.



##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담회

T사는 KOTRA 다렌무역관에서 개최한 조선기자재 2017년 9월 GP in China에 참가해서 파트너사인 J사를 만났다.

T사가 참석한 행사는 중소·중견기업에게 해외 기업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수출상담회 성격의 프로그램인데 KOTRA 무역관 주관으로 조선기자재·자동차·전력 등 산업군 별 기업들을 모아 개최된다. 중국 조선 산업은 그 규모는 세계 최대지만 조선기자재의 국산화율이 50%에 불과해 오히려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한 분야이다. 조선기자재 GP in China 처럼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모이는 상담회는 우리나라 조선기자재 기업이 중국 진출 기회를 잡는 데 좋은 기회의 장이 되어주고 있다.

## 낮은 단가와 FTA활용에 매력을 느껴 호주가 아닌 우리나라 기업을 선택한 중국 기업

T사가 만난 중국의 J사는 조선소 기자재 납품 업체로 중국 조선소에 각종 조선 기자재를 수입, 납품하는 일종의 에이전시였다. J사가 관심을 가진 건 T사의 주력제품인 판, 시트, 스트랩 중 조선소 내의 가스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제의 시트제품이었다.

처음에는 다른 기업과 비교하며 망설였지만 다렌 FTA활용지원센터(이하 다렌 센터)의 도움으로 T사가 여러 기술성평가와 면담을 거쳐 성실하게 설명한 덕에 J사의 마음 역시 많이 기울어진 상태였다.

문제는 J사가 이미 오랜 시간 호주의 관련 거래처에서 유사제품을 수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센터는 한국과 호주가 모두 중국과 FTA를 맺고 있는, 지리상으로 가까운 한국에 더 이점이 있다고 설득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고,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낮은 단가로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 거래처가 만족할 만큼 빠르게 발급되는 우리나라 원산지증명서

사실 그간 J사는 호주의 업체와 거래를 하면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원만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해왔기에 다렌 센터가 ‘원산지증명서를 빠르고 쉽게 제공하겠다.’ 라고 설명한 부분에 동의하기 시작했다.

다렌 센터는 T사로 하여금 매 선적건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라고 조언했고, 이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와 비용, 주의 사항 등을 수회에 걸쳐 설명해주었다.

덕분에 해당 제품은 기본세율 8%에서 협정세율 1.6%를 적용하며 매우 큰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다렌 센터와 T사의 노력으로 J사 역시 망설이던 마음을 바꾸었다. 결국 거래처를 T사로 바꾸기로 한 것이다.

J사를 통한 계약으로 T사는 다렌조선소와 후동 조선소에 제품 납품을 성공했다. 향후에도 T사는 다렌 센터와 함께 유사한 전략으로 타 조선소 및 관련제품 수요층을 적극 공략할 예정이다.

### Tip



#### 선박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

선박, 수상구조물 등(HS 89류)의 한-중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2단위 HS Code 변경기준(CC) 또는 계약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 퍼센트 이상일 것(RVC 60%)”이다. 이는 타 품목에 비하여 상당히 엄격한 기준인데, 선박이 생산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양 당사국간에 경쟁이 심한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T사의 원산지증명서

**ORIGI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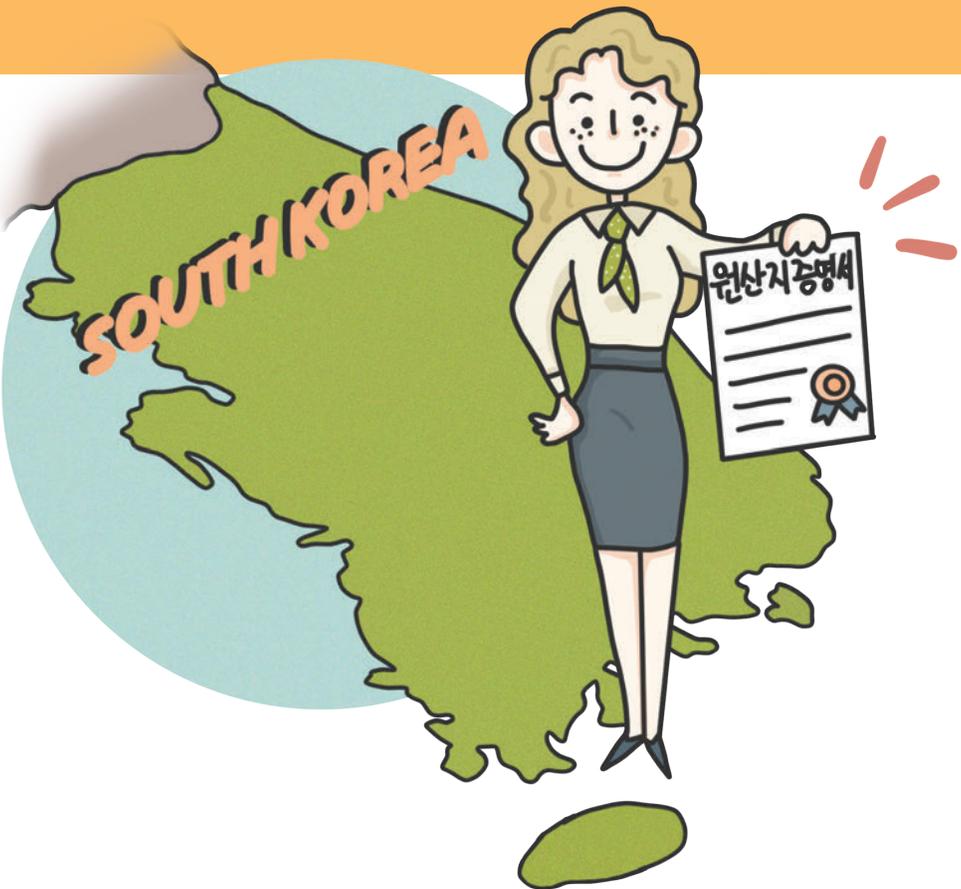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Certificate Code.:  <b>CERTIFICATE OF ORIGIN</b> <b>Form for Korea-China FTA</b>  Issued in <u>THE REPUBLIC OF KOREA</u> (see Overleaf Instruction)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26 JAN, 2018 Vessel/Flight/Train/Vehicle No: DONGJIN VENUS 1804W Port of loading: BUSAN, KOREA Port of discharge: NINGBO, CHINA			5. Remarks: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	//////////	TH3000, CMP, NON-ASBESTOS JOINT SHEET 1500MM X 2000MM X 2.0T	400821	PSR	970 KG 90 EA	
2		TH3000W, WIRE REINFORCED CO MP, NON-ASBESTOS JOINT SHEE T 1500MM X 2000MM X 3.0T  Total Package : 1 PL	400821	PSR	162 KG 10 EA	
////		////////////////////////////////////// To be continued page 2	//////////	//////////	//////////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 <u>THE REPUBLIC OF KOREA</u>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 <u>PEOPLE'S REPUBLIC OF CHINA</u> ..... (Country)  BUSAN KOREA 26 JAN 2011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 - China FTA.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다렌 / D사 / 이불솜

# 원재료 소싱까지 바꾼 FTA 관세절감 효과

드물기는 하지만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생산, 자국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있다. 품질이 월등히 좋거나 특수한 품목일 경우 발생하는 무역의 형태이다. 이런 경우 역시 FTA 적용이 가능하다.



## FTA 당사국의 원산지재료를 자국 생산으로 인정해주는 양자누적

D사는 고급 이불솜을 수입해서 중국 내에 유통하는 기업이다. 특이하게도 한국에서 솜을 만들어 중국으로 수입, 유통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자잘하게 복잡한 문제들이 생겨 고민하던 중 FTA 설명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D사는 품질 유지를 위해 이불솜은 한국 생산자에게 주문, 생산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불솜의 BOM은 D사가, BOM내의 각 원재료 소싱은 D사가 지정한 구입처에서 한국 생산자 측으로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아무래도 중국보다 인건비가 높은 한국에서 생산하다 보니, 높은 제조원가로 인해 FTA를 활용해야겠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했던 차에 다렌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다렌 센터)를 만나서 양자누적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 Tip



#### 양자누적

FTA 당사국의 원산지재료를 자국의 생산으로 인정해주는 것을 양자누적(bilateral cumulation)이라고 한다. FTA 누적기준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만약 위의 사례에서 펠트를 중국산 재료로 사용하게 된다면 한-중 FTA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산 펠트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중국산 펠트를 수입해 올 때에는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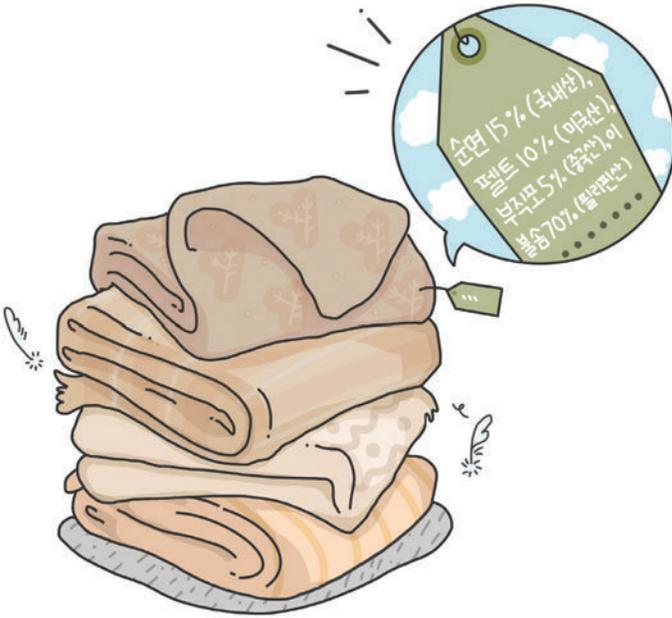
## 재료의 종류가 다양해질수록 각 재료별로 달라지는 복잡한 원산지 규정

고급 이불솜의 경우 한국에서 생산하게 되면 제조원가가 높아, 관세라도 줄여야 중국에서 판매할 때 가격 경쟁력이 생긴다. 현재는 기본 관세율이 12%이고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면 8.8%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이는 점진적 인하를 통해 2029년에는 0%까지 떨어질 예정이다.

문제는 원산지 규정이었다.



당시 사용한 부직포



이불솜을 만드는 주요 재료로는 솜, 면, 부직포, 펠트 등이 소요되는데 이 중에서 면은 인도산을, 펠트는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불솜의 원산지규정은 CC(Change of Chapter, 2단위 HS Code변경기준) 또는 RVC 40%로서, 수입 재료인 부직포(HS 5603)와 펠트(HS 5602)가 이불솜과 동일한 56류에 해당되므로 일차적으로는 HS Code 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RVC는 한국에서의 수입원재료 단가가 다소 높고 이윤율이 크질 않아 RVC 40%를 충족할지 역시 미지수였다.

### Tip



#### 원산지결정기준 CC(Change of Chapter, 2단위 HS Code변경기준)

완제품의 HS Code 2단위와 각 비원산지(원산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포함) 재료의 HS Code 2단위가 서로 달라야 한다는 규정이다. 한국산 원산지 재료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원산지판정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CTH와 동일하지만, 일반적으로 재료와 제품이 HS 4단위가 동일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CC는 충족하기 어려운 원산지결정기준이다. CTSH(Change of Tariff Sub-Heading, 6단위 HS Code변경기준) → CTH(Change of Tariff Heading, 4단위 HS Code변경기준) → CC(Change of Chapter, 2단위 HS Code변경기준) 순으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 복잡한 원산지규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은 한국산 재료 쓰기

이에 다렌 센터는 D사에게 부직포와 펠트도 수입산을 쓰지 말고 한국산을 쓸 것을 권유했다. 한국산 원재료를 사용하기에 굳이 원산지규정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고, 앞서 설명한 HS Code변경기준도 충족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즉, FTA 누적기준을 적용하자는 의미였다. 수입하는 대신에 한국에서 매입하는 부직포와 펠트는 원산지확인서를 받아 한국산임을 증명하면 된다.

사실 발상을 조금만 바꾸면 쉬운 일이었는데 FTA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D사는 소싱을 바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그 재료를 통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헛갈렸다. 또한, 누적기준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었던데다 무엇보다도 HS Code 구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큰 원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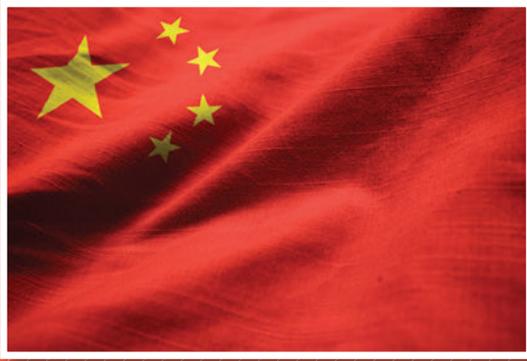
다렌 센터의 조언을 듣고 한-중 FTA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D사는 부직포, 펠트 등의 모든 재료 역시 한국산으로 변경했다. 덕분에 한국 내에서 원재료를 공급하는 소싱 업체의 일이 늘어난 것은 물론, D사도 보다 편하게 무역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Tip



#### 원산지확인서

한국산 재료를 생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료를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확인서를 받아야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시 한국산 재료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원산지확인서는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서류가 아니라서 상공회의소나 세관이 아닌 국내 판매자에 의해 자율적으로 작성된다. 때문에 반드시 스스로 원산지판정을 통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여부를 따져야 한다.



# 중국 China

---

## 07 텐진 FTA활용지원센터

텐진은 징진지 발전계획에 따른 거대시장과 함께 자유 무역구, 창업인프라 등을 보유한 도시이다. 시장 잠재력이 높고 전략적인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2015년 자유무역 시범구 지정 이후 북부지역 대외 무역 관문으로 부상했다.

현재 텐진항은 세계 180여개국 500여개 항만과 연결된 세계 10위 물동량의 해운 허브로 자리 잡았다. 텐진 FTA 활용지원센터는 글로벌한 기업들이 모이는 텐진의 특징에 맞게 다각도로 우리 기업들의 중국 시장 공략을 돕고 있다.



**주 소** (중문) 天津市和平区大沽北路2号 天津环球金融中心 49层49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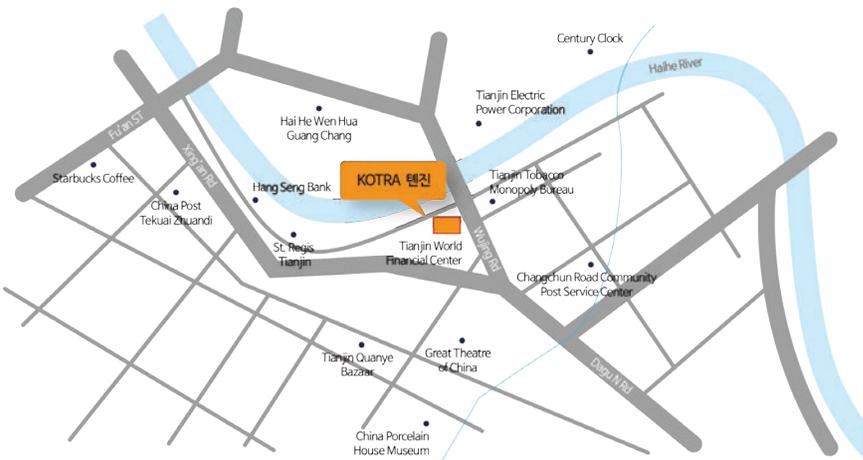
(영문) Tianjin World Financial Center Tianjin, China

**전 화** (86-22)2329-6631 (ext. 803)

**팩 스** (86-23)2329-6634

**e-mail** 717416@kotra.or.kr

**약 도**



텐진 / R사 / 신발

# FTA별 협정관세 비교로 내게 맞는 FTA 찾기

FTA가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모든 제품이 특혜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럴 때는 다양한 무역협정을 적용, 최대한 여러 혜택을 중복해서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로는 부족한 혜택, 합쳐서 받는 지혜를 발휘해보자.



## 중국 무역시 품목 별로 관세 절감 혜택이 다른 한-중 FTA와 APTA

R사는 중국 텐진에서 신발을 만들어 한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이다. 등산화와 일반 신발을 수출하고 있는데 한국 수입자가 한-중 FTA 혹은 APTA(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를 활용한 관세 절감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도움을 얻고자 텐진 FTA활용지원센터(이하 텐진 센터)를 찾았다.

일단 한국의 수입자의 요구로 무작정 찾아오기는 했지만 R사의 경우 FTA에 대한 이해도, 왜 관세절감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오히려 처음에는 한국의 수입자가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하며 R사를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설명할 정도였다.

이에 텐진 센터는 R사에게 한국 바이어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요청임을 먼저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다.



D사의 운동화



D사의 등산화



## 같은 신발이지만 품목이 달라 관세혜택도 달라지는 등산화와 운동화

센터는 먼저 R사의 제품을 살펴보았다. 제품의 카탈로그와 사진, 실제 물건을 차례로 확인하면서 등산화는 고무제의 신발(HS 6402.99), 일반 신발은 일반운동화(HS 6404.11)에 품목분류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R사의 제품은 모두 FTA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고무제신발인 등산화는 한-중 FTA에서 기본세율(13%)과 동일한 세율(13%)을 유지하고 있는 관세 미철포 대상이다.

이에 텐진센터는 한-중 FTA 대신 APTA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APTA는 기본 관세율과 달리 9.1%의 관세율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었지만 일반운동화는 APTA 세율이 11.7%이고, 한-중 FTA는 9.8%의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했기에 역으로 FTA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했다.

## 같은 회사의 제품이라도 품목별로 각각 적용해야 하는 FTA와 APTA

센터의 설명을 들은 R사는 깜짝 놀라고 말했다. 일단 같은 신발임에도 다른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새로웠고, 세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에도 놀란 것이다. 그저 막연하게 한-중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R사는 텐진 센터의 도움에 크게 고마움을 표했다.

더불어 텐진 센터의 조언을 한국의 바이어에게 전달해서 기존에 FTA적용만 강조하던 바이어 역시 FTA와 APTA를 모두 활용하는 데 동의하게 되었다.

이에 R사는 수출시 적용 가능한 여러 협정 관세율을 비교하고 의문이 생기면 텐진 센터를 찾아 꼼꼼하게 확인하며 무역을 진행하고 있다.

### Tip

#### APTA와 FTA의 선택적 적용

하나의 품목에 대해서 APTA와 FTA를 동시에 활용할 수 없다. 가령, 어떤 품목의 기본세율이 8%, APTA 세율이 5%, FTA 세율이 2%라고 가정해볼 때, 해당 물품에 대하여 APTA와 FTA 원산지증명서를 모두 발급하여  $8\% - 5\% - 2\% = 1\%$ 의 세율이 적용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즉, 서로 중복하여 적용이 불가능하며 APTA 또는 FTA 둘 중 하나의 세율만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하나의 선적건에 대하여 A, B라는 물품이 함께 선적된 경우 A는 FTA, B는 APTA 적용은 가능하다.

### 전문용어 알아두기

#### 인코텀즈와 무역인도 조건

인코텀즈(Incoterms)란 국제무역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체결시, 운송부담을 고려하여 거래조건을 정형화한 것으로 아래와 같은 약어를 사용한다.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처음 공표하였으며, 최근에는 2010년에 개정되었다.

텐진 / T사 / 포장테이프

# FTA가 안된다면 APTA로!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 최대 효율로 협정 활용하기

무역만큼 시시각각 정세가 변하는 것도 없다. 나라별 입장 뿐 아니라 기업별로도 그때그때 다른 선택을 하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이럴 때마다 중심을 잡고 차근차근 방법을 알려주는 길잡이는 꼭 필요한 존재이다.



## 생산하는 곳과 포장하는 곳이 달라져서 헛갈리는 원산지 표기 방법

T사는 포장테이프 전문 회사로 한국과 중국 텐진에 공장을 두고 있다. 테이프 완제품은 한국에서 생산하고, 중국 텐진에서 제품별 포장을 한 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형태이다. 완제품을 만드는 곳과 포장해서 수출하는 곳이 다른데다 미-중 무역 분쟁까지 겹치다보니 T사가 가장 먼저 봉착한 문제는 원산지 표시였다.

최종 제품에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표기할지, 중국산(Made In China)으로 표기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물어보기 위해 텐진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텐진 센터)를 찾았다.

## 실질적 변형이 없는 단순포장이기에 제품을 만든 곳을 기준으로 하는 원산지 표시

텐진 센터는 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 한국 관세청과 현지 관세사, CCPIT(국제무역촉진위원회, 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에 해당 이슈를 문의하고 의견을 종합하여 상담을 시작했다.

우선 원산지표시는 제품의 실질적인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단순 포장은 이러한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는 가공이 아니라서 T사의 제품은 한국산(Made In Korea)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이었다.

단순 제품 포장은 중국에서도 세금감면혜택이 있는 가공무역방식이 아니었다. 이에 T사는 혹시 한-미FTA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지를 다시 문의했다. 하지만 한국산 제품 이더라도 중국 현지 공장을 거쳐 가는 것은 직접운송원칙(한-미 FTA에서는 “통과 및 환적” 규정이라 칭함)에 위배되므로 한-미 FTA 적용은 불가능했다.

##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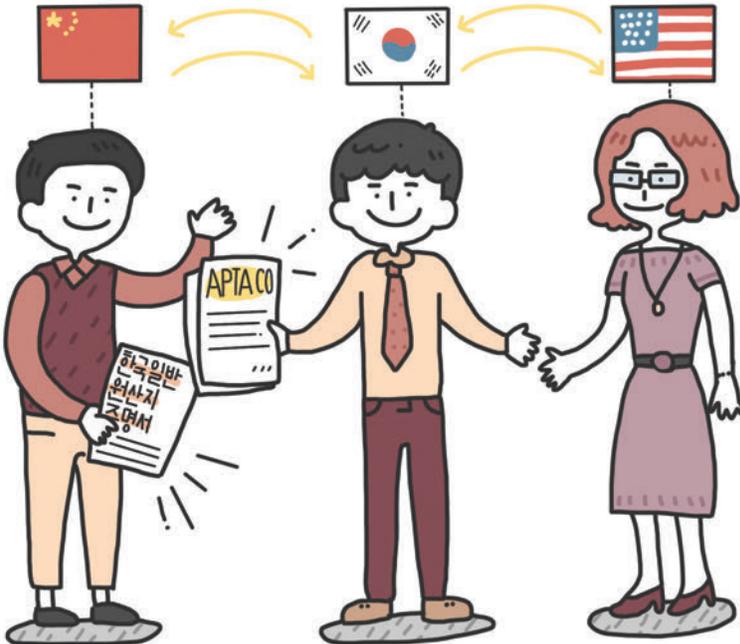
### 한-미 FTA의 운송관련 규정

한-미 FTA는 직접 운송과 관련된 규정이 없고, 제6.13조 통과 및 환적 조항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그 상품이 하역·재선적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공정 이외에, 양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이후의 생산이나 그 밖의 어떠한 공정이라도 거치는 경우, 또는

나. 그 상품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는 경우



## FTA관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APTA로 혜택받기

기대했던 한-미FTA 적용이 무산되고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고민하는 T사에게 텐진 센터는 한 가지 팁을 주었다. 바로 APTA의 활용이었다. T사는 한국에서 만든 테이프를 중국으로 수입했을 때 관세 혜택을 받고 있지 않았다. 만약 APTA를 활용하면 기본 관세율 6.5%가 4.6%로 인하되는 효과가 있어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물류 흐름 상 한국에서 중국으로 테이프를 수출 할 때는 AP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줄이고, 중국에서 포장 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일반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한국 제품임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다. 만약 중국에서 그대로 물건을 수출할 경우 미국 세관에서 중국 제품으로 오인하여 높은 세율이 부과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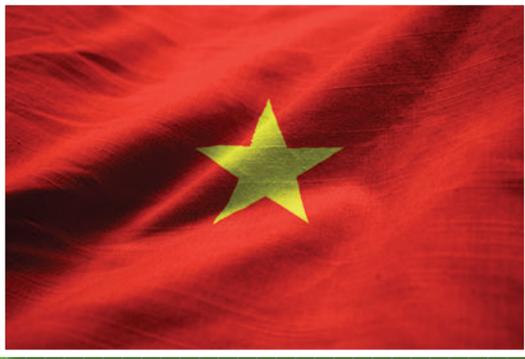
### Tip



#### 미국의 “실질적 변형기준”

중국산 제품이 미국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 받음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특정 수준의 공정을 거친 중국산 제품이 과연 여전히 중국산 제품인지에 대한 문의가 많다. 이에 대한 기준은 미국 연방규정집 19 CFR 134.1에 규정된 “실질적 변형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품명(name), 특성(character), 용도(use) 등의 변화를 판단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

19 CFR 134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두고 있지 않고 있고, 미국은 협정보다 연방규정을 우선 해석하는 경향이 강해 수출자가 명료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한국을 경유하거나 한국에서 단순 작업 이후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종 원산지는 미국 관세청(CBP)의 유권해석을 미리 받아볼 것을 권유한다.



# 베트남 Vietnam

---

## 08 하노이 FTA활용지원센터

하노이는 우리나라 제조업의 최대 생산 기지인 베트남의 중심 도시이다. 아세안 내에서도 우리나라와의 파트너십이 탄탄한 곳이기도 하다. 최근엔 아세안 시장통합이 가속화 되고, CPTPP 등 주요 경제권과 적극적으로 FTA를 체결 하면서 아세안 및 역외시장 진출교두보로서 가치가 상승 하고 있다. 이에 하노이 FTA활용지원센터는 한-베 FTA 활용전략 설명회 등을 통해 베트남 현지기업 및 우리나라 진출 기업의 원활한 무역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주소 20th Floor,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wkdgPwlsstrict, Hanoi. Vietnam

전화 (84-24)3946-0511 (ext. 620)

팩스 (84-24)3946-0519/20

e-mail gkdqk@kotra.or.kr

약도



하노이 / S사 / 닭 가공육, 설육

## 철저한 FTA협정문 분석으로 고집스러운 베트남 공무원을 설득하다

때로는 기업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일일이 챙기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특히 무역 해당국의 담당자들을 만나 설득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려줘야 하는 것들이 그렇다. 일을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긴 하지만 하루하루 치열하게 바쁜 기업 입장에서 자칫 시간낭비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 베테랑 기업도 당황하게 하는 예상 못한 원산지증명서 반려

베트남에 닭 가공육, 설육 등을 수출하는 S사는 그 동안 큰 문제 없이 무역을 진행해 왔다. 까다로운 수출서류를 준비할 때에도 타 기업들이 종종 원산지증명서 등에서 낭패를 보는 것을 알고 더 꼼꼼히 준비해 문제를 방지했다. 때문에 어느 날 하이퐁 세관에 제출한 원산지증명서가 반려되자 남들보다 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S사는 KOTRA에서 교육받은 대로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를 통해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제대로 거친 터였다. 모범적인 절차를 밟은 만큼 문제의 원인을 알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마침내 이유를 알게 되자, 처음 반려됐을 때 느꼈던 당혹감은 황당함으로 변하고 말았다.

### Tip

####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다.

- 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인터넷 신청 시스템에 입력)
-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인터넷 신청 시 신고번호만 시스템에 입력)
- 상업송장 1부
- 원산지소명서 1부 (신청시스템 입력)
- 원산지(포괄)확인서 -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 BOM, 원재료투입입증서류 등(세부사항은 FTA활용지원센터에 문의)

## 수기 서명이 아니라 반려된 원산지증명서

반려 이유는 하나, 바로 원산지증명서 하단 사인이 '손으로 직접 한 것이 아님' 이라는 것이었다. 전자 발행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단에 들어가는 사인이 수기가 아닌 전자 서명으로 들어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이퐁세관은 막무가내였다. 무조건 서명이 수기로 들어 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하이퐁세관은 야멸차게 협정세율 적용을 거부했다.

만약, 하이퐁세관에서 끝까지 협정세율을 거부하면 S사가 부담해야 하는 세율은 기본 세율인 20%였다.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으면 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에, 이는 비용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가져올 수 있는 일이었다.

더군다나 S사가 취급하고 있는 수출품목이 냉동육이기 때문에 이를 보관하는 것도 문제였다. 냉동식품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별도의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비용만 해도 하루 USD 400정도였고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반려시킨 이후 이미 USD 2,500 어치의 보관료 손실이 발생한 터였다.



## 현지 공무원도 몰랐던 전자 서명 인정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S사는 다급하게 하노이 FTA 활용지원 센터(이하 하노이 센터)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하노이 센터는 빠르게 하이퐁세관과의 미팅을 잡고 한-베트남 FTA 3.14조의 규정을 예로 들어 하이퐁세관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 규정에는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인쇄된다.((d) be manually or electronically signed, stamped and printed)”라고 하여 수기 및 전자서명 모두를 인정하는 항목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베트남 세관원은 그 동안 고집스레 주장하던 의견을 전격 철회했다.

S사는 담당 공무원이 바뀐 법령과 정보를 모두 숙지하고 있다는 생각에 당황했던 게 가장 큰 실수였다고 하며, 빠르게 도와준 하노이 센터에 감사를 표했다.

이처럼 예측 불가한 무역 현장에서는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는 무역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일을 쉽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단순히 관련 규정의 미숙지에서 기인한 문제는 FTA 해외활용지원센터와 함께라면 신속하게 대응, 더 큰 문제로 확산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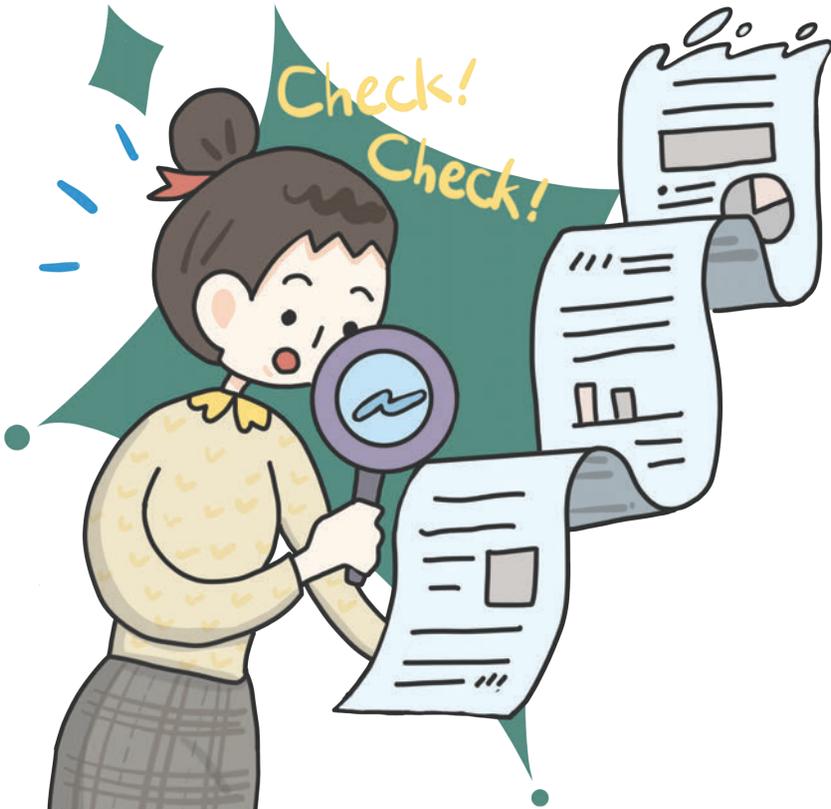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에서의 “서명”

한-아세안 FTA 3차 의정서 제4조에서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인쇄된 형태”를 의미한다. 해당 각주에서 이러한 인쇄된 형태라 함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당국에 의하여 직접, 수기로 또는 전자적으로 서명되고, 인장이 찍히고,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시 어떠한 FTA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도 전자적으로 서명된 것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하노이 / B사 / 들깨

# 백문이 불여일견! 공장실사로 잠재운 원산지 논란

비슷하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기재한 용어 때문에 전체적인 업무가 꼬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히 각종 서류의 경우, 기존에 기재했던 것과 한 글자, 한 획이라도 달라지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경우가 존재하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 갑작스런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거부

B사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들깨를 수입한 이후 베트남에서 이 들깨를 볶아 다시 한국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이다.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하면서 공장 설비를 갖추기가 용이한 베트남에서 ‘볶은 들깨’를 생산, 수출을 하는 상황이라, 한국에서 들깨를 수입하는 바이어에게 제출할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인 Form AK 발급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다지 어려울 것도 없고 품목이 복잡한 것도 아니어서 금세 나오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했는데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는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를 거절하고 말았다.

이유라도 알려주면 보안을 하건 시정을 하건 할 텐데 특별한 이유 없이 거부당하고 하니 B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 Tip



#### Form AK 발급시 유의점

Form AK는 아세안 10개국과의 협정인 한-아세안 FTA에 활용되는 원산지증명서이므로 각 국가별 세관당국의 착안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 중 공통적인 것은 A4용지에 컬러 인쇄를 해야 하며, 이면 기재사항(Overleaf notes)를 반드시 프린트해야 한다는 것이다. 흑백으로 프린트하거나 앞면만 프린트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볶은 들깨’와 ‘생 들깨’는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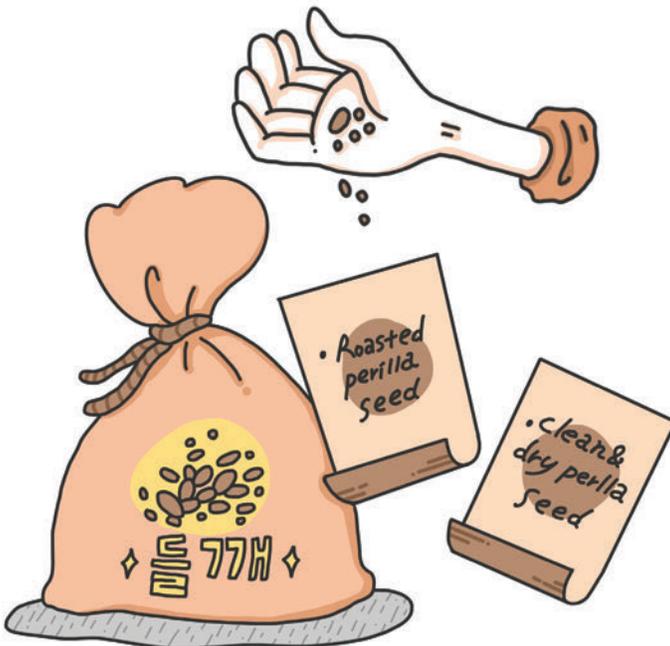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B사에게 하노이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하노이 센터)를 알려준 것은 얼마 전 비슷한 일을 겪었던 거래처였다. 그 거래처 역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서류 반려로 맘고생을 하다가 하노이 센터의 도움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었다.

이에 B사는 지체 없이 하노이 센터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고, 센터는 B사의 애로사항에 대하여 산업무역부 측에 집요하게 묻고 또 물어 원인을 알아냈다. 원인은 바로 ‘폼

목명 상이' 였다. 기존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의 품명이 다르게 기재되었다는 것이다.

살펴보니 B사가 처음에 베트남에 수출 신고를 할 때 썼던 품명과 원산지증명서의 품명이 달랐다. B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들깨' 이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산업무역부 측에서는 이 '들깨' 앞뒤에 붙은 수식어 때문에 품목 분류를 다르게 판단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다.

B사가 처음 베트남에 수출 신고를 할 때 썼던 품명은 Clean & dry perilla seed 였는데 정작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에는 이를 Roasted perilla seed 라고 기재한 것이다. 들깨는 생 들깨 인지 볶은 것인지가 그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 되는 품목이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들깨(Perilla seed)는 HS 1207.99에 분류되며 Roasting 과정을 거친 볶은 들깨(Roasted perilla seed)는 HS 2008.19에 분류되므로, 품목 분류 자체가 달라진다. 즉 '볶은'이라는 표현 하나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반려된 것이었다.



## 직접 볶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볶은 들깨임을 확실하게 증명한 공장실사

이에 베트남 산업무역부에서는 들깨 Roasting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조공정도, 설비 사진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하노이 센터는 공문을 준비하려는 B사에게 공문보다 담당 공무원의 공장 실사를 추진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전달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니 확실하게 ‘볶은’ 제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다.

하노이 센터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B사 역시 적극 협조하여 단순 공문 요청이 공장 실사로 이어졌고, 이는 베트남 공무원에게 오히려 좋은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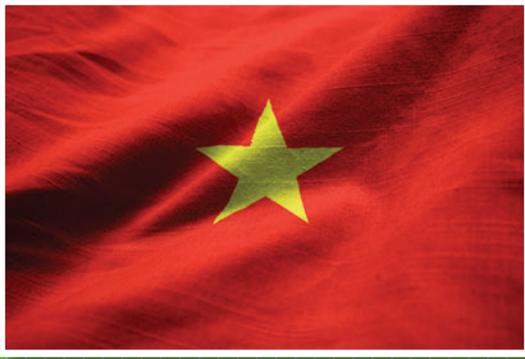
실사 이후, 담당공무원은 이견 없이 B사의 제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 품명만 보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제조나 가공공정이 명백한 농산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 실사를 추진,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였다.

### Tip



#### 원산지증명서의 Description

물품을 수출할 당시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당시의 시차가 있는 경우에 물품명 및 Description이 상호 다르게 작성될 수도 있다. 공산품인 경우에는 part no. SKU(Stock Keeping Unit) no.와 같이 각 제품별로 고유의 번호가 기재될 경우 상호 대조하여 동일성 입증 가능하다. 반면에, 위의 사례와 같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이러한 번호가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Description이 조금만 달라져도 다른 제품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 때문에 가급적 인보이스 및 수출신고필증과 동일한 품명과 Description을 사용하는 것이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나아가 원산지조사 입증에도 유리하다.



# 베트남 Vietnam

---

## 09 호치민 FTA활용지원센터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로 92년 수교 이래 교역과 투자 면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룬 베트남과의 무역 전초기지 역할을 하는 곳이다.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를 비롯한 TPP, AEC, 베트남-EU FTA 등 적극적인 통상정책 추진으로 동남아의 통상 중심국가로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호치민 FTA 활용지원센터는 한-베트남 FTA를 통해 양국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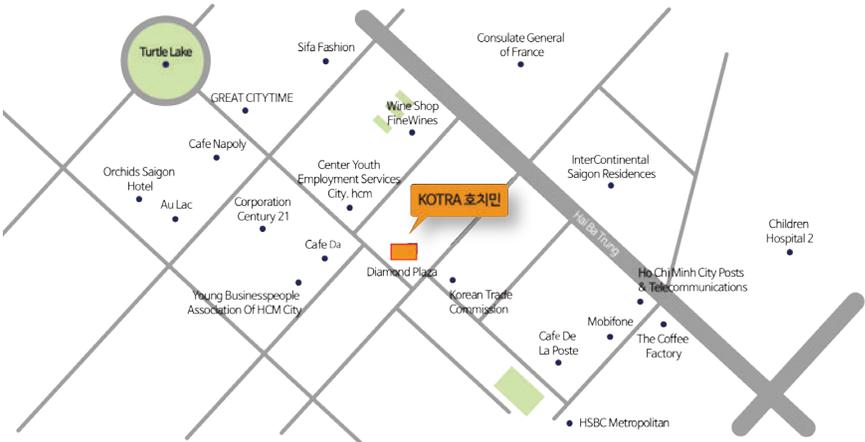
**주 소** R.708B, Fl.7, Diamond Plaza, 34 Le Duan Street, Dist.1, HCMC, Vietnam

**전 화** (84-28)3822-3944 (ext. 155) / (84-28)3822-3944 (ext. 158)

**팩 스** (84-28)3822-3941

**e-mail** leean@kotra.or.kr

**약 도**



호치민 / S사 / 액세서리

# 쉽고 빠르게 발급 가능한 대한민국 원산지증명서, 경쟁사를 물리치다

나라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와 시간은 모두 다르다. 그리고 그 차이에 따라 경쟁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 원산지증명서는 이미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 물건의 품질은 좋지만 단가가 비싼 기업에게 필요한 가격 경쟁력 확보

S사는 목걸이, 반지, 팔찌 등 액세서리 종류를 제조, 국내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 국내 시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던 중, 2015년부터 수출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무역관을 지사처럼 쓸 수 있는 지사화 사업을 활용, 호치민 FTA활용지원센터(이하 호치민 센터)를 거점으로 삼고 새로운 바이어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바이어를 찾던 S사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다. 바로 단가였다. 오랜 국내 시장 경험으로 인해 품질은 자신 있었지만, 단가가 다소 비싸서 수출 계약 단계에서 무산되곤 했다. 이에 S사는 센터와 함께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 FTA활용을 통한 비용 줄이기

호치민 센터는 먼저 S사의 제품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분석결과 S사의 제품은 관세율 표상 “모조신변장식용품”으로 HS 7117호에 해당되었다. 모조신변장식용품은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 귀금속을 사용하지 않은 소형 신변장식용품이나 개인용품이다. 이는 베트남 현지에서 기본세율이 25%에 달하지만, 한-아세안 FTA 또는 한-베트남 FTA를 활용하면 협정세율이 0%이므로 FTA 적용 시 큰 관세혜택을 볼 수 있었다. 단추(HS 9606호)나 빗, 헤어핀(HS 9615호)은 제외된다는 점만 주의하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는 품목이지만 S사의 경우, 안심하기에는 일렀다. 중국산 제품 역시 ACFTA(아세안-중국 FTA)를 활용하면 협정세율 0%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협상 조건이 필요했다.

## 사후 적용 기간 1년, 빠른 발급이 강점인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

그때, 호치민 센터 담당자의 머릿속을 훑 스쳐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바로 한국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행정처리 방식이 가진 강점이었다.

베트남에서는 협정세율 적용을 위해서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악세사리류는 부피가 작고 대량 주문도 적어서 항공 운송을 이용하는데, 물건이 빨리 가는

만큼 원산지증명서도 빠르게 전달되어야 한다. 한국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스템이 온라인이라 발급이 빠른 반면, 중국은 한국에 비해 현저하게 발송이 늦다는 맹점이 있었다.

또한 한-베트남 FTA를 적용했을 때 수입 통관 이후 사후적용기간이 늘어난다는 점도 강점이었다. ACFTA의 경우 사후 적용기간이 30일이지만, 한-베트남 FTA는 1년이기에 유사시에 대비하기도 좋은 조건이었다.

결국 S사는 한국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가 중국에서 발행하는 것보다 장점이 많다는 것을 강조하여 바이어를 설득했다. 그 결과, 베트남 바이어들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며 전년 대비 약 10만 불 가량 증가한 수출액을 기록할 수 있었다.

### Tip



#### 국가간 FTA 해석의 차이

원산지 사후적용 기간은 협정별로 명문화가 되어 있지만, 국가별로 사후적용 가능 여부 혹은 사후적용 기간을 이와 다르게 공시하는 경우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2016년 베트남 정부가 발표한 FTA 사후적용 금지 지침이 있다(당시 한-베트남 FTA를 제외하고 모든 FTA의 사후적용을 금지했음). 이는 세관 당국에 클레임을 제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KOTRA 무역관 또는 영사관, FTA해외활용지원센터와 대동하여 제도개선 문제로 접근해야할 이슈이다.



호치민 / V사 / 화장품스펀지

# 화장품과 화장도구, 필요한 인 증은 다르다

최근 우리나라의 뷰티 산업이 동남아를 비롯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메이크업 제품은 물론 메이크업 기구와 소품까지 다양하게 수출되고 있는데, 뷰티 제품은 그 종류가 많고 인체에 직접 닿는 것이므로 수출입 과정 또한 까다롭다.



## 바이어를 주저하게 만드는 위생절차 까다로운 화장품들

V사는 화장용 스펀지를 생산하는 업체이다. 제주경제통상진흥원에서 개최한 호치민 수출상담회에 참여했다가 호치민 FTA활용지원센터(이하 호치민 센터)를 알게 되었다. 호치민 센터를 통해 베트남 바이어인 T사를 소개받은 후 계약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이미 한국산 화장품 수입 경험이 있어 보다 쉽게 일을 추진할 것 같았던 T사가 수입통관의 까다로움을 이유로 계속 계약을 미루고 주저하는 것이다.

베트남과의 무역 거래가 처음인 V사는 이미 원산지발급증명서도 호치민 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등 일정에 맞춰 거래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계약이 미뤄지면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호치민 센터는 T사에게 곤장 망설이는 이유를 물었고 T사로부터 “화장품은 인체에 직접 닿는 것이라 위생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라는 대답을 들었다.



## 화장품에 직접 포함되지 않으면 공산품으로 분류되는 스펀지

이에 호치민 센터는 화장품이라면 현지 위생허가 절차를 밟고 수출 시에도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자유판매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야 하지만 화장용 스펀지는 다르다는 의견을 주었다.

호치민 센터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화장용 스펀지는 HS 33류인 화장품류가 아니라, HS 9616.20(화장용 분첩과 패드, Powder-puffs and pads for the application of cosmetics or toilet preparations)에 별도로 분류되어 화장품이 아닌 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호치민 센터의 설명에 T사는 당황하며 그동안 해당 제품을 화장품으로 수입해왔다고 대답했다. 호치민 센터는 화장품에 스펀지가 포함되어 함께 포장된 상태이면 화장품으로 분류되지만 별도 수출일 경우는 화장품이 아님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에 V사는 수입허가등록 절차 없이 스펀지를 수출 할 수 있게 되었다. 우선 테스트용 물품을 계약하고, 대한상공회의소의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도 발급받아 첨부했다. 이를 통해 T사 역시 테스트용 물품부터 기본세율 25%가 아닌 협정세율 15%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Tip



#### 화장품류의 자유판매증명서란?

자유판매증명서란 대한화장품협회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자국 내에서 자유롭게 판매될 수 있는 제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외 현지에서 수입허가 등을 진행하기 위해 제출되며, 보통 현지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 콜롬비아 Colombia

---

## ⑩ 보고타 FTA활용지원센터

콜롬비아는 중남미 내수시장 3위의 나라이며 안데안 공동체, 태평양 동맹 등 경제 블록 회원국이다. 현재 인구 2억 명 이상의 거대시장을 보유하고 있다. 일부 제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제품 중심의 수입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전자제품을 비롯한 소비재의 수입의존도는 90%에 달한다. 때문에 보고타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한-콜롬비아 FTA 활용을 통한 양국 시장 진출 win-win 전략을 수립하고 맞춤형 바이어 방문상담 등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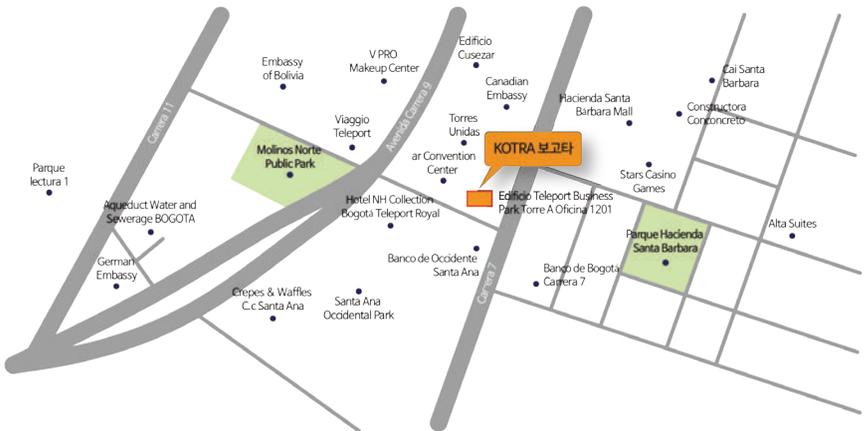
**주 소** Calle 113, 7-21, Edificio Teleport Business Park, Torre A, Oficina 1201, Bogota, Colombia

**전 화** (57-1)637-5099 (ext. 104)

**팩 스** (57-1)637-9238

**e-mail** [juanpark@kotra.or.kr](mailto:juanpark@kotra.or.kr)

**약 도**



보고타 / S사 / 전동식 공압공구

# 이가 안되면 잇몸으로,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로 한국산 증명하기

근거리무역의 경우 급하면 직접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변 기업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정반대에 있는 먼 나라의 경우 언어장벽, 시차, 정보 부족 등 하나에서 열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 먼 거리와 낯선 언어로 계약 성사가 힘든 콜롬비아

콜롬비아에 있는 보고타 무역관은 콜롬비아 바이어인 S사가 전동식 공압공구(Pneumatic Tools)를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싶어 한다는 정보를 듣고 적극적으로 한국 기업을 찾기 시작했다. 원래 무역업체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진행해왔던 S사는 가격 문제로 새로운 거래처를 찾는 중이었다.

바이어의 요청에 따라 보고타 FTA활용지원센터(이하 보고타 센터)에서는 “바이코리아 인콰이어리”를 통해 한국의 R이라는 기업을 발굴했다.

계약 성사를 위해 두 회사는 보고타 센터를 통해 화상회의를 개최하며 계약 조건과 제품에 대한 설명을 주고받았다. 두 회사 모두 그간 무역사를 통해서 거래를 진행했기에 직거래 경험이 없었고 이에 직접 무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였다. 먼 거리와 언어 문제 역시 쉽게 해결될 것은 아니었다.

## 현지 업체와 국내 업체 두 곳에 번갈아가며 FTA활용 설명을 한 센터

이에 보고타 센터는 먼저 현지 업체인 S사에게 상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우선 한-콜롬비아 FTA가 있다는 점과, 해당 FTA를 통해서 관세율 절감(5% → 0%)이 가능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보고타 센터의 설명을 들은 후 S사는 우수한 품질의 한국제품이 관세절감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R사와의 계약이 유리하다는 점에 동의했다.

### Tip



#### 원산지결정기준 선택하기

보통 한-콜롬비아 FTA에서 원산지결정기준은 HS Code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선택기준이 상당수를 차지하며, 전동 수공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부품수가 많은 경우에 HS Code 변경기준을 사용하게 되면, 각 부품별로 모두 품목분류를 통해 HS code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반면,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이미 부품 매입가격과 판매가격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부품 수가 많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제 한국에 있는 R사를 움직일 차례였다. R사의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해 본 경험이 없고, 원산지판정 등에 대하여 알지 못해 보고타 현지에서 우선전화로 교육하거나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특히, 전동 수공구는 크기는 작지만 들어가는 부품수가 매우 많아, 원산지판정을 하는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비특혜원산지증명서로도 받을 수 있는 ‘한국산’ 증명

반면, S사는 한-콜롬비아 FTA 적용을 위해 한시라도 빨리 R사의 물건이 한국산임을 확인하고 싶어했고, 스페인어로 된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보고타 센터는 고민 끝에 우선 샘플 선적건에 대해서는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고, 본격적인 계약 이후부터는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다.



‘R사의 제품이 ‘한국산’임을 증명하는 것은 비특혜원산지증명서로도 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비특혜원산지증명서는 공구의 수많은 부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나 매입 인보이스 등을 구비하고 검토할 필요가 없다.

즉 FTA원산지판정과 같은 높은 수준의 검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품이 많은 R사 제품의 경우 이렇게 진행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었다.

R사는 센터의 설명에 따라 무역인증서비스센터를 활용하여 스페인어로 된 비특혜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았고, 샘플도 무사히 전달한 후 추후 본 계약에서 2만 불 이상의 계약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Tip



#### 콜롬비아 관련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유의사항

콜롬비아로 수출할 때 FTA용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여 전달하는 자율발급 형식이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하는 기관발급 형식이다. 다만, 콜롬비아 바이어로부터 스페인어 원산지증명서 작성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주의할 점은 스페인어 양식을 사용하더라도 “품명”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이 되어야 하며, 기관발급시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전문용어 알아두기

#### B/L, AWB

- ▶ **Bill of Lading** : 선하증권.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 ▶ **Air Waybill** : 항공운송서류. 운송서류 중 하나로, 항공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할때 작성하는 문서

보고타 / C사 / 섬유

# 덤핑으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샘플 송부도 1달러 이상으로

단가가 낮은 물건은 때로 덤핑 제품으로 오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단가를 조정하거나 덤핑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콜롬비아의 경우 반덤핑 규제법을 통해 덤핑 제재를 많이 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 동종 업계 경쟁자를 제치고 거래처 확보에 도움주는 FTA

15년간 중국에서 폴리에스테르 섬유를 지속적으로 수입해서 판매 해왔던 콜롬비아의 C사는 다양한 무역 환경 변화에 관심이 많아 수시로 보고타 무역관을 찾는 바이어였다.

오랜 시간 중국 기업과 거래를 해왔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저품질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중 보고타 FTA활용지원센터(이하 보고타 센터)에 거래할 만한 한국 기업 소개를 의뢰했다.

이에 보고타 센터는 바이코리아 인콰이어리를 통해 한국 기업 H를 발굴, C사와 연결시켜 주었다. C사는 처음에 보고타 센터가 연결해 준 H사의 제품 단가가 기존에 거래하던 중국 업체에 비해 높다는 이유로 실망을 했지만 보고타 센터가 재빠르게 받아준 H사의 샘플을 보고 거래를 결심했다. 여기에는 기존 중국과의 거래에서 10%를 부담했던 관세가 한-콜롬비아 FTA를 활용하면 6%(2018년), 3%(2019년), 0%(2020년)으로 점진 철폐된다는 사실도 한 몫 했다.

## 덤핑 오해를 받는 저렴한 가격 송장

품질도 품질이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볼 때 FTA 혜택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에 C사는 결국 한국 업체와의 거래를 결심하고 4종류의 물품에 대한 시제품을 대량 주문했다.

한국에 있는 H사로서는 매력적인 거래의 시작이었다. 이에 H사는 보고타 센터의 지원을 받아 견적송장(Proforma invoice)을 작성하고, 시제품으로서 단가를 개당 USD 0.87로 책정하여 전달했다.

적절한 단가를 매겼다고 생각했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했다. 보고타 센터의 조사 결과, 단가 책정시, 콜롬비아에 있는 반덤핑 규제법(DECRETO NUMERO 2218 DE 2017)을 간과한 것이다. 반덤핑 규제법이란, 제품 수입 시 단가가 1달러 미만인 경우를 덤핑행위로 보고 반덤핑관세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이다. H사의 견적 송장이 바로 이 경우에 해당된 것이었다.

보고타 센터는 곧바로 이 사실을 C사와 H사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H사는 C사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샘플 시제품가격이 아닌 본래 판매 가격 수준으로 송장을 수정하였고, 해당 송장으로 현지 수입통관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 또한 이를 참고삼아, 다른 바이어 발굴 시에 샘플가격은 최소 1달러는 초과해야 한다는 사실도 확실히 알 수 있었다.

### Tip



#### 반덤핑협정

덤핑이란,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수출하여 수입국의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의미한다. WTO에서는 WTO반덤핑협정을 맺고, 덤핑행위로 인해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입증하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특정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따라 관세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덤핑방지관세 제도를 두고 있다.



인보이스 변경사항

**OFFER SHEET**

Offer No. \_\_\_\_\_  
Date OCT. 28.2018  
Ref. No. \_\_\_\_\_

Messrs. GJ TEXTILES

We are pleased to offer the goods mentioned below with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

Description	QTY	UNIT PRICE		AMOUNT
		USD	USD	
PSF (Black, 60 x 64mm) - Super-A	5000	0.87		
PSF (White, 60 x 64mm) - Super-A	5000			
PSF ( White, 70 x 64mm) - Semi-Virgin	7000			
PSF ( White, 120 x 64mm) - Semi-Virgin	7000			
Total : FOB / BUSAN PORT (S. KOREA)				

\* This quotation is valid only for 40FT HQ X 1 Container /MOQ

Origin : REPUBLIC OF KOREA  
Packing : EXPORT STANDARD PACKING + 300KGS/BALE, 1 BALE + TOTAL : 80 BALES  
Shipment : WITHIN 15DAYS AFTER RECEIVING T/T DEPOSIT  
Payment : 30% IN ADVANCE AND 70% AGAINST COPY B/L  
Validity : 1 Month  
Remarks :

Looking forward to your valued order for the above offer,  
Yours faithfully,

《 기존 인보이스  
\$0.87

수정된 인보이스 《  
\$1.03

**OFFER SHEET**

Offer No. \_\_\_\_\_  
Date OCT. 31.2018  
Ref. No. \_\_\_\_\_

Messrs. GJ TEXTILES

We are pleased to offer the goods mentioned below with following terms and conditions :

Description	QTY	UNIT PRICE		AMOUNT
		USD	USD	
PSF (Black, 60 x 64mm) - Super-A	5000	1.03		
PSF (White, 60 x 64mm) - Super-A	5000			
PSF ( White, 70 x 64mm) - Semi-Virgin	7000			
PSF ( White, 120 x 64mm) - Semi-Virgin	7000			
Total : FOB / BUSAN PORT (S. KOREA)				

\* This quotation is valid only for 40FT HQ X 1 Container /MOQ

Origin : REPUBLIC OF KOREA  
Packing : EXPORT STANDARD PACKING + 300KGS/BALE, 1 BALE + TOTAL : 80 BALES  
Shipment : WITHIN 15 BANKING DAYS AFTER RECEIVING THE DEPOSIT  
Payment : 30% IN ADVANCE AND 70% AGAINST COPY B/L  
Validity : 1 Month  
Remarks :

Looking forward to your valued order for the above offer,  
Yours faithfully,



# 인도네시아

## Indonesia

---

### ⑪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

자카르타는 아세안 전체 GDP의 40%를 차지하는 인도네시아의 핵심 도시이다.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는 한-아세안 FTA 10주년을 계기로 FTA의 활용 및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개소되었다. 무역사절단 등 KOTRA 마케팅 행사와 연계하여 FTA활용 이동 컨설팅, FTA활용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의 원활한 무역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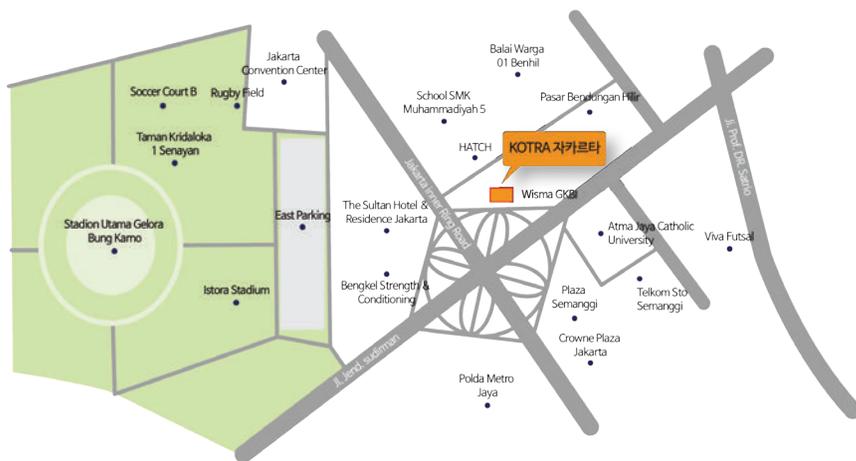
**주 소** Wisma GKBI, 21 Fl. Suite 2102 JL. Jendal Sudirman Kav. 28 Jakarta 10210

**전 화** (62-21)574-1522

**팩 스** (62-21)572-2187, 572-2204

**e-mail** anis@kotra.or.kr

**약 도**



자카르타 / D사 / 감열지

# ‘근무일’에 대한 오해 타파로 관세 추징을 피하다

무역뿐만 아니라 일반 업무를 진행하면서 흔하게 쓰는 말 중에 “working day” 라는 말이 있다. 일반적으로는 근무일을 의미하는데 무심코 지나쳤던 이 한마디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 발급기한 이후에도 소급발급 문구가 없어서 부과된 관세

감열지는 열이 가해진 부분만 색이 변해 프린터나 팩스에 활용되는 특수지이다. D사는 한국의 H사에서 감열지를 수입, 판매하는 인도네시아 수입업체로 평소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여 5%의 관세를 절감하며 무역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년 2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USD31,000의 관세를 추징하겠다는 당혹스런 통보를 받게 되었다.

그동안 D사가 제출했던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없으며 지금까지 감면해주었던 관세를 추징하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동안 한국의 수출업체가 원산지증명서를 제때 발급해왔다고 알고 있던 D사는 갑작스러운 관세추징 소식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 Tip



#### 소급발급문구(ISSUED RETROACTIVELY)

실수 또는 누락 등의 사유로 원산지증명서를 물품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까지 발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 발급문구 "ISSUED RETROACTIVELY"를 기재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서 해당 발급문구가 없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정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D사는 평소 자문을 구하던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자카르타 센터)를 찾아 당면한 사안에 대해 자문을 요청했다.

자카르타 센터는 우선 D사가 받은 공문을 면밀히 살펴보았다. 공문에 따르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이 선적일로부터 3일이 지났고, 기한이 지났음에도 소급발급 문구가 없기 때문에 해당 원산지증명서는 무효라는 것이었다. 이에 자카르타 센터는 이 사안의 핵심은 왜 선적일이 3일 지났음에도 발급된 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것임을 파악했다.

## 공휴일 포함으로 애매해진 Working Day 기준

이에 자카르타 센터는 꼼꼼히 원산지증명서를 검토했고 그 결과는 의외였다. 사소한 해석 차이가 불러온 문제였던 것이다.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제7조에서는 선적 직후에도 정상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적일로부터 “3 근무일(Working days)”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만약 3 근무일 내에 공휴일이 끼어 있다면 실제로는 4일 혹은 5일이 지나도 여전히 ‘근무일’은 3일이 된다.

이를 파악하지 않고 단순히 선적일과 발급일 차이가 5일이었기에, 인도네시아 세관에서는 소급발급문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자카르타 센터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 관세관과 함께 인도네시아 세관을 방문하여 한-아세안FTA 전문을 가지고 설득을 진행했다. 관세 추징 조치를 취소하도록 종용하는 한편, 이 사례를 통해 Working days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Tip



##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 운영절차 개정안 제7조제1항

## 제7조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3의 의미내에서 수출상품이 수출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로 인정될 수 있는 때에는 언제나, 모든 요구 서류의 제출을 조건으로 선적 전, 선적 시 또는 선적 직후(신고 선적일부터 3 근무일 이내)에 발급된다.

## Rule 7

1. Subject to the submission of all documentary requirements, a Certificate of Origin shall be issued prior to or at the time of shipment or soon thereafter but should not be more than three (3) working days from the declared shipment date whenever the good to be exported can be considered to be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y within the meaning of Annex 3.

전문용어  
알아두기

## 정보기술협정(ITA)

- ▶ **ITA** : 정보기술(IT)제품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간 관세를 철폐하기 위한 협정이다. 한국, 미국, 중국, EU(28개국)·대표부, 일본, 호주, 스위스 등 53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 등 해당 협정 이행국은 컴퓨터·휴대폰·반도체 등 IT제품에 대하여 무관세를 적용하거나 관세율이 점차적으로 철폐된다.

자카르타 / J사 / 유아용 및 건강 보조 음료

# 직항 수출이 아니라면 FTA 적용이 불가하다? 직접운송규칙을 충족하는 또다른 방법

누구나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는 있지만 선별된 알짜 정보는 오히려 더 귀해진 시대, FTA에 관한 진짜 정보가 있는 곳이 바로 FTA해외활용지원센터이다. 현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곳이기에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제약회사 제품

J사는 인도네시아에 유아용 음료 및 건강 보조 음료를 수출하고 있는 한국의 제약회사이다. 제약회사제품은 특성상 인체에 직접 영향을 주는 성분들이라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 많아서 J사는 무역을 진행하면서도 꾸준히 정보를 수집하고 최신 소식을 받아들이는데 열심이었다. KOTRA에서 개최하는 FTA교육도 여러 번 참석해서 한-아세안 FTA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인도네시아로 수출을 시작하기 전에는 자카르타 FTA활용지원센터(이하 자카르타 센터)를 찾아 현지 정보를 수집할 정도로 열정적이었다.

J사의 주력 품목은 기본 관세율이 10%이지만 한-아세안 FTA를 활용하면 0% 세율 적용이 가능했기에 인도네시아는 J사에게 포기하기 어려운 시장이었다.

##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 간에만 허용되는 직접운송원칙

그러던 중, 자카르타 센터가 인도네시아 바이어를 발굴해 J사에게 연결시켜 주면서 상당한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부터 발생했다. J사가 물건을 선적하는 부산은 자카르타 직항이 없어서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거쳐서 들어와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한-아세안 FTA 제9조 직접운송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한-아세안 FTA 직접운송 규정은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한하여 특혜 관세 대우를 유지하는 원칙이다. 대부분의 FTA협정과 FTA특례법에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어, FTA활용에서 직접운송원칙 충족은 필수적이다. 때문에 이 원칙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J사는 인도네시아에서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 FTA 활용을 위한 통과선하증권과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하기 위한 비가공증명서 그리고 할랄인증까지

이에 센터는 J사에게 두 가지 서류를 알려주었다. 바로 통과선하증권(Through B/L)과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였다. 통과선하증권은 FTA활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고 비가공증명서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발급받을 경우 직접운송원칙을 충족시키게끔 해주는 서류였다. 더불어 센터가 알려준 현지 정보는 하나 더 있었다. 바로 할랄 인증이었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의해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도록 허용된 제품'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 T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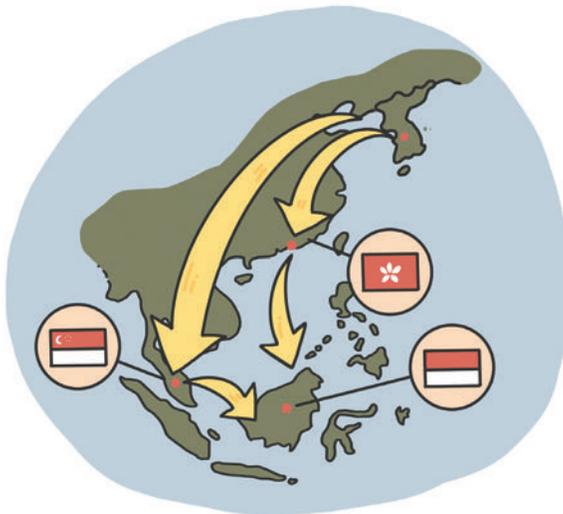


#### 통과선하증권(Through B/L)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회사의 선박을 이용하거나, 해로 및 육로 등 여러 운송로를 교대로 이용하여 운송된 경우에 발급한다. 최초의 운송업자가 전구간의 운송에 대하여 발행하여 모든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이다. 이러한 선하증권은 최초 선적지 및 경유지, 그리고 최종 목적지가 하나의 증권에 모두 기재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로 인해, FTA에서 직접운송원칙을 증명하는데 필수적인 서류로 인정되고 있다.

#### 비가공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운송 중, 경유지(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등 협정에서 정하는 단순한 공정 외에는 다른 공정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해주는 서류이다. 일반적으로 경유지 세관당국에서 발급한다. 통과선하증권과 함께, FTA에서 직접운송원칙을 입증하는 서류라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산 물품을 홍콩을 경유하여 수입할 때, 한-중 FTA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홍콩해관의 비가공증명서가 필요하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슬림 인구가 86%에 달하는 나라이다. 때문에 식약청(BPOM)인증 뿐 아니라 할랄(HALAL)인증까지 병행해야 한다. 알코올이나 돼지고기 또는 이들의 성분이 들어간 식품은 이슬람 율법에서 섭취를 금하고 있어, 이러한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라벨링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할랄 인증의 핵심이다. 할랄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인도네시아로의 수출 및 유통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표시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미처 생각지도 못한 현지 정보까지 전달받은 J사는 덕분에 무사히 관세 혜택을 받으며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 Tip

####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과 할랄

BPOM은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의 약어로 인도네시아 식약청의 약어이다. BPOM 인증이라 함은 보통 식품, 의약품, 화장품 유통 시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정한 인증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도가 다수인 국가이기 때문에, 돼지성분 또는 알코올성분 포함 제품은 반드시 라벨표시를 하고 승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식약청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인 라벨링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  
할랄인증마크

#### 식약청(BPOM) 규정에 포함된 할랄 라벨링 규정

돼지 성분이 식품에 포함될 경우	돼지 성분이 의약품에 포함될 경우
<b>MENGANDUNG BABI</b> 	<b>BERSUMBER BABI</b>
생산 과정에서 돼지 및 돼지에서 유래 한 물질과 접촉 한 의약품 및 바이오 제품의 경우	
<p>Pada proses pembuatannya bersinggungan dengan bahan bersumber babi dan telah dipurifikasi sehingga tidak terdeteksi pada produk akhir</p>	

자료원 : BPOM



# 인도 India

---

## ⑫ 뉴델리 FTA활용지원센터

뉴델리는 GDP기준 세계 6위의 거대 시장 인도의 무역거점 도시이다. 아세안뿐 아니라 중국의 대안시장 및 생산거점으로 부상하면서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어느덧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지 10년이 지났으며, 현재는 대기업 진출이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뉴델리 FTA 활용지원센터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인도 진출을 적극 지원하며 한-인도 CEPA 뿐 아니라 AEO 인증획득 지원 사업에도 힘쓰고 있다.



**주 소** #2, 12th Floor, DLF Cyber Terraces, Building 5-A , DLF Cyber City  
Phase-3, Gurgaon - 122002, Haryana, India

**전 화** (91-12)4462-8526

**팩 스** (91-12)4462-8501

**e-mail** msw@kotra.or.kr

**약 도**



뉴델리 / O사 / 페이스파우더

# 나마스떼 인디아! 한국 화장품 수출 최초 한-인도 CEPA 적용

인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곳이다. 인구와 역사, 그리고 성장세까지 무엇 하나 그냥 넘길 것이 없는 곳이면서도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이다. 우리나라와 CEPA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활발한 교류가 기대되는 곳이기도 하다.



## 인도와 유일하게 CEPA를 맺은 나라, 한국의 가격 경쟁력 확보

인도의 화장품 시장은 126억 달러에 달하는 큰 규모이다. 이 중 한국 화장품의 수입 비중은 2017년 기준 5백만 달러로 이는 2013년 대비 118%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우수한 한국의 화장품 기술력과 명성, 다양한 제품군으로 미루어 본다면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시장이기도 하다.

현재 인도는 화장품을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와 인도 간에는 FTA협정이 맺어져 있지 않기에 한-인도 CEPA를 활용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제품이 훨씬 좋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페이스파우더를 주력으로 만드는 O사 역시 이 부분에 주목한 기업으로 인도 진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뉴델리 CEPA활용지원센터(이하 뉴델리 센터)를 찾아왔다.

### Tip



####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CEPA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의 약어로 한-인도뿐만 아니라, 중국-홍콩, 중국-마카오 관계에서도 볼 수 있는 협정이다. 그 내용에는 FTA와 마찬가지로 상품무역, 원산지규정, 무역원활화 및 관세협력, 서비스무역, 통신시장 개방, 인력이동, 투자, 지적권, 무역분쟁 해결이 포함되지만, FTA에 비해 일반적으로 개방 수준은 낮다. 하지만, 협정을 맺는 당사국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방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 HS Code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충족해야하는 CEPA의 원산지규정

O사는 그 동안 20%의 높은 기본세율 때문에 인도 시장 진출을 망설였지만 한-인도 CEPA를 활용할 경우 관세율 0%를 적용받는다라는 사실을 안 후, 신중하게 진출을 준비하고 있었다. 0% 관세라면 충분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문제는 한-인도 CEPA의 원산지규정이었다. 한-인도 CEPA는 다른 FTA에 비해 원산지규정이 다소 어려운 편에 속한다. 상당수 물품의 원산지규정이 조합기준(HS Code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S사가 수출하려는 물품도 이와 같은 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페이스 파우더의 원산지규정은 CESH(6단위 HS Code변경기준)+RVC35% 인데,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며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하는 것은 S사로서도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특히,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단가가 공개될 수 있기에 S사는 선택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었다.

### Tip



#### 조합기준

조합기준이란 두 가지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HS Code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한꺼번에 충족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반면에, 선택기준이란 여러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도록 규정하는 조건이다.

3204.12-3204.16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4.12호부터 제3204.16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4.17-3204.19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4.17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5.00-3206.43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5.00호부터 제3206.43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6.50-3208.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6.50호부터 제3208.90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209.90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3209.9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역내부가가치 발생이 3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 예

## 화장품 품목, 9년 만에 첫 CEPA적용

이에 뉴델리 센터는 서울에 있는 O사의 본사에 연락을 취해 향후 필요한 원산지판정에 대비, 관세청의 FTA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이를 통해 우선적으로 원산지판정을 받고, 판매 법인을 통한 BOM검사 시 한국산 판정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페이스 파우더의 경우 탈크, 실리카, 마이카 등 원재료에서부터 생산하는 물품이라 HS Code변경기준인 CTSH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부가가치(노무비, 각종 경비, 이익률)가 누적되어 RVC 35% 기준을 충족시키는 데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었다.

이에 O사는 다소 까다로울 수 있었던 원산지규정을 무사히 마치고 인도의 CEPA를 통해 15%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는 한-인도 CEPA 발효 후 화장품 품목에 대한 첫 CEPA 활용 성과였으며 국내 뷰티제품의 대인도 수출의 물꼬가 열리는 계기가 되었다.

### Tip



#### RVC 산정

한-인도 CEPA RVC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은데, FOB 가격(국내 판매가)에서 VNM(비원산지재료비 또는 수입재료비)을 뺀 나머지는 VOM(원산지재료비) 및 노무비·각종 경비·이익률이 된다. 즉, (군이 원산지재료비를 모르더라도) 부가가치인 노무비·각종 경비·이익률이 높다면 당연히 RVC 비율이 높아지는데, 한국에서 모든 공정이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부가가치 비용 모두를 원산지비율로 산입할 수 있다.

$$RVC = \frac{\text{FOB 가격} - \text{VNM}}{\text{FOB 가격}} \times 100$$

#### 영역원칙의 예외

한-인도 CEPA에서는 영역원칙의 예외로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재가동 시 함께 활용될 수 있는 협정이기도 하다. 다만, 의류·인조섬유 등 일부 제품으로 그 대상을 한정한다.

뉴델리 / S사 / 합금강의 봉

# 미세한 수기 서명의 차이, 인도 세관 설득하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많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사소한 오해나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한 일일 수록 전문가와 함께 직접 대면하여 해결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 인도 세관의 갑작스러운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발급 거부

S사는 인도에 합금강의 봉 제품(HS 7228.30)을 수출하는 업체이다. 매 시간 눈에 띄게 변하는 인도인지라 건설과 플랜트 공사가 빈번한데 S사의 제품은 이런 건설현장과 플랜트 공사장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자재이다.

합금강의 봉은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기 쉬운 품목 중 하나이다. 그래서 그 동안은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15%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을 모두 면제 받고 있었다.

그렇던 만큼, 갑작스런 세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거부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던 까닭이다.

### Tip



#### 합금강봉의 한-인도CEPA 원산지결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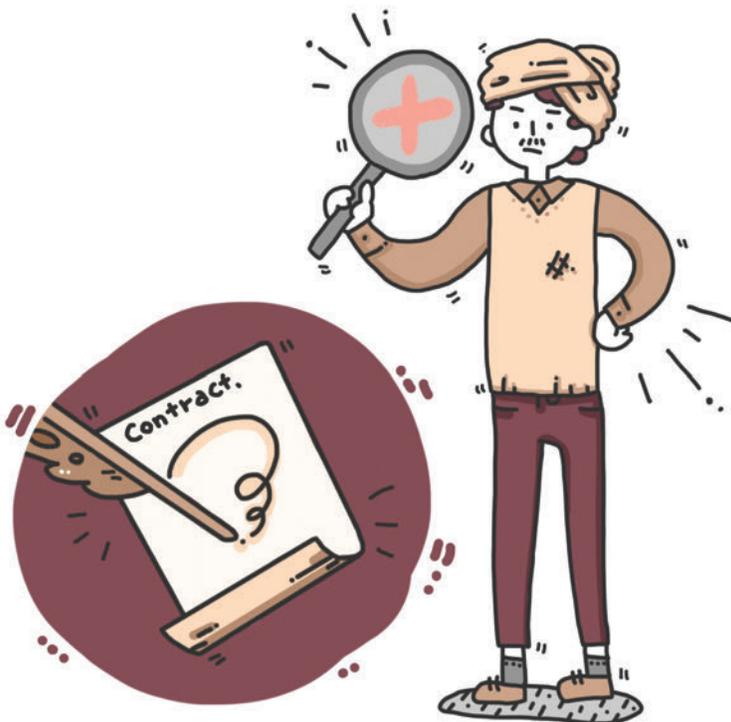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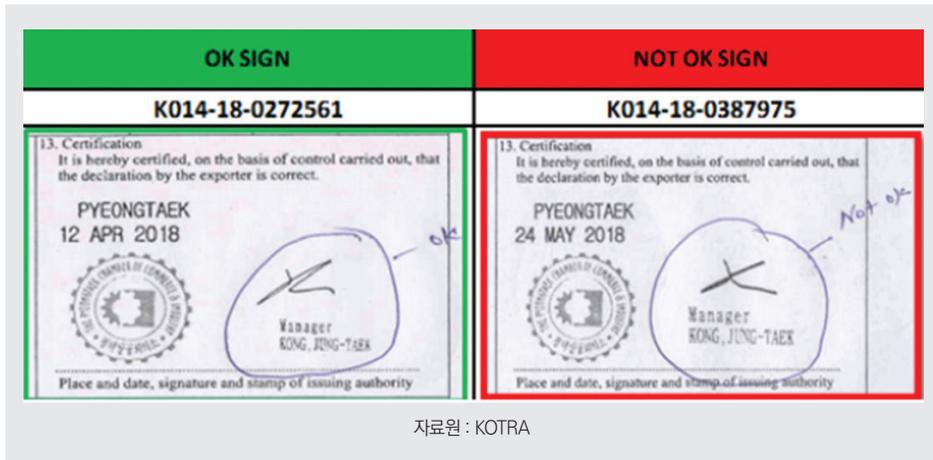
합금강 봉의 원산지결정기준은 타 물품과 같이 조합기준이 아니라, CTH(4단위 HS Code변경기준)이다. 합금강의 잉곳이나 슬랩바(HS 7224)를 매입하여 봉을 생산하는 S사에게는 충족하기 손쉬운 규정이기도 하다. 때문에 다른 산업 혹은 기업에 비해 S사는 인도와의 거래에서 일찍부터 한-인도 CEPA를 활용할 수 있었다.

## 원인은 수기 사인이라 차이났던 서명

자초지종을 알기 위해 S사는 우선 뉴델리 CEPA 활용지원센터(이하 뉴델리 센터)를 방문했다. 하지만 뉴델리 센터 역시, S사의 설명만으로는 세관이 서류를 반려시킨 이유를 전혀 찾지 못했다. 평택상공회의소에서 제대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고, 이를 인도 노이다(NOIDA)세관이 거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만약 이로 인해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한화 약 3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상황이었다.

이에 뉴델리 센터는 현지 직원과 함께 직접 세관을 찾았고, 그 곳에서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이 달라 거부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수기로 기록한 사인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세관 직접 방문으로 해결한 미세한 서명 차이 문제

인도 세관의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해당 서명을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노이다 세관은 해당 시스템을 활용해 원산지증명서 관리를 하고 있었다. 때문에 아주 미세한 차이로 서명이 달라져 일치하지 않은 것을 세관이 인지, 서류를 거부한 것이다.

센터는 후 발급 과정에서 이러한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세관과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해주었다.

이후 뉴델리 센터는 주인도 관세청의 관세협력관과 논의를 진행, 서명 변경 전·후의 원산지증명서와 서명 업데이트 스캔파일 등 각종 소명자료를 한국으로부터 받아서 노이다 세관을 직접 방문했다.

이곳에서 세관장과의 면담을 통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S사의 물품이 동일한 수출자에 의한 것임을 증명했다. 결국 S사는 통관 보류 해제 및 한-인도 CEP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었다.

### Tip

#### 인도의 통관 환경

인도는 13개의 관할지역별 세관이 하부 세관을 담당하는 구조로서 명목상 세관행정이 동일은 되어 있으나, 관할 세관당국 간에 소통 미비로 인해 관세통관상의 애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즉 동일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세관당국별 품목분류 기준 또는 협정세율 적용기준이 천차만별이다.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인도정부가 노력하고는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라 통관단계에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 센터 담당자와 세관을 방문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다.



# 태국 Thailand

---

## ⑬ 방콕 FTA활용지원센터

방콕은 아세안 2위의 경제대국인 태국의 수도이자 중요한 무역거점 도시이다. 인근 국가인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및 베트남과 무역거래 시 태국의 통화인 바트(Baht) 결제가 가능할 정도로 인도차이나 반도의 경제권을 주도하고 있다.

아세안 최대 자동차 및 전기전자 제조업의 허브이자 풍부한 식품산업 기반 역시 보유하고 있기에 방콕 FTA활용지원센터에서는 다방면으로 FTA활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 소** Unit 4101-4104, 41st Floor, Bhiraj Tower at EmQuartier, 689 Sukhumvit Road, North Klongton, Vadhana, Bangkok 10110 Thailand

**전 화** (66-2)035-1555

**팩 스** (66-2)035-1556

**e-mail** soojung.ice@kotra.or.kr

**약 도**



방콕 / Q사 / 학습 콘텐츠

# 교육 콘텐츠 수출 전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FTA

콘텐츠 산업은 앞으로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분야이다. 하나의 아이템이 다양한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콘텐츠 산업에서도 FTA는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이다.



## 세계적으로 관심 높은 우리나라 교육열과 교육콘텐츠 시장

우리나라의 교육열은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뜨거운 교육열과 더불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콘텐츠 시장이다. 그 중 Q사는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로 콘텐츠를 단순히 책이나 영상 뿐 아니라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 다양하게 체험하며 학습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

뜨거운 국내 시장의 반응에 힘입어 Q사는 해외 판매 및 라이선싱 교류를 위해 K-라이선싱 로드쇼 행사에 참석해서 태국의 여러 바이어를 만났다. 2018년 5월 22일에서 23일 까지 양일간 개최된 행사동안 Q사의 콘텐츠에 대한 바이어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K-라이선싱 로드쇼



현지바이어에게 제품 설명하는 모습

### Tip

#### 2018 K-라이선싱 로드쇼 행사

한국-태국 간 교육, 프랜차이즈, 라이선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비즈니스 포럼으로,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의 서비스 수출을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2018년 5월 22~23일 이틀간 태국 방콕 소피텔에서 “K-라이선싱 로드쇼 행사”가 KOTRA와 한-태국 양국 관계 기관들의 공동 주최로 진행되었다.

## 검열 없는 시장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준 한-아세안 FTA

행사에 참석한 태국기업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교육열과 뛰어난 교육콘텐츠 시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콘텐츠에 증강 현실 기술을 도입, 학습에 재미와 놀이 요소를 더한 것을 경험하고는 큰 놀라움을 표했다. Q사의 콘텐츠는 AR coloring book 아이템이었는데 아이들이 즐기듯 색에 대한 감각을 익히고 공감각 능력을 획득할 수 있게끔 구성된 콘텐츠여서 언어에 구애 받지 않고 경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이에 Q사는 좀 더 원활한 협상을 위해 방콕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방콕 센터)에게 조언을 요청했다. 방콕 센터는 Q사에게 서비스 협정에 대해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주고 한-아세안 FTA 서비스 양허표에서는 기술·교육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해주었다. 한-아세안 FTA 서비스 양허표에서는 따로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교육콘텐츠는 사전 검열을 받을 필요가 없다. 덕분에 수출 역시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단,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태국 현지에 합작 회사를 세울 경우, 한국 회사는 보유 지분 비율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반드시 사전에 확인을 해야 한다.

### Tip



#### 한-아세안 FTA 서비스 무역협정 시장접근 제한(태국)

태국에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 지분 참여는 총 등록 자본의 49퍼센트 이하로 제한되며, 외국인 주주의 수가 전체 주주 수의 절반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있다.

##### - 통신서비스

: 외국인 보유 지분이 전체 등록 자본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외국 주주의 수가 회사 전체 주주 수의 2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데이터 접속 서비스 /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 비디오 텍스트 등

: 외국인 보유 지분이 전체 등록 자본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외국 주주의 수가 회사 전체 주주 수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해야 함.

##### - 보험

: 외국인 지분 참여는 등록 자본금의 25퍼센트로 제한, 관련부서 허가 및 내각의 동의 필요, 선임 관리자, 전문가 및 기술직원에 한하며 보험 위원회의 승인이 요구

## 성공적인 태국 교육시장 진입

Q사는 자신들의 콘텐츠로 1:1 상담 및 브리핑을 통해 양일간 충분한 홍보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결과 태국 내에서만 8개사와 계약을 체결하며 태국의 유아 교육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큰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방콕 센터가 조언한 대로 선불리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안전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전문용어 알아두기

#### 무역규제 용어

- ▶ **NTM** : 비관세조치. Non-Tariff Measures. 국제 무역에 경제적 영향을 미칠수 있는 관세 이외의 모든 정책 조치.
- ▶ **NTB** : 비관세장벽. Non-Tariff Barriers. 비관세조치 중 국산품과 수입품을 차별하여 수입을 억제하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는 조치
- ▶ **SPS** :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위생및검역조치로 WTO 회원국간에 식품위생 및 동식물의 검역기준이나 절차를 국제기준에 맞게 설정하게 하는 협약. 만약 그러지 못할 경우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함.
- ▶ **TRQ** : Tariff Rate Quotas. 정부가 허용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이중관세제도.

방콕 / H사 / 샴푸

# 과세코드에 따라 달라지는 상호대응세를 적용

FTA는 공통된 규정 외에도 각 FTA마다 맺고 있는 독특한 규정들이 있다. 일부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유지나 고세율 관세를 매기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응하려면 품목별로 어떤 세율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 민감 품목인 샴푸, 한-아세안 FTA 적용후에도 관세는 납부해야

H사는 태국으로 샴푸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이다. 그 동안 꾸준히 동남아시아 기업들을 상대로 샴푸 수출을 해왔기에 한-아세안 FTA활용에도 익숙한 편이었다. 태국 수출 초반에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방콕 FTA 활용지원센터(이하 방콕 센터)가 차근차근 방법과 절차를 알려준 후에는 수월하게 무역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태국 바이어와 추가 미팅을 하던 중 H사는 바이어가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간 물건을 보낼 때마다 한-아세안 FTA원산지증명서를 제공했음에도 세율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말에 의아함이 생겨 다시 한 번 방콕 센터를 찾았고, 생소한 용어인 ‘상호대응세율’에 대해 듣게 되었다.

### Tip



####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한-아세안 FTA에만 있는 독특한 규정으로, 각 체약국별로 특정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철폐하지 아니하고 고세율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민감품목(Sensitive Track)을 정하고, 교역 상대국은 그러한 고세율의 관세를 대응하여 상호대응세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가령, 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샴푸는 우리나라에서 관세가 철폐되지 아니하고, 기본세율과 동일한 5%의 세율을 부과하는데, 역으로 태국에서 한국산 샴푸를 수입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 민감 품목 코드 AK3 기입으로 상호대응세율 적용 가능

알고 보니 샴푸는 한-아세안 FTA에서 우리나라가 민감 품목으로 지정한 항목이어서 한-아세안 FTA를 적용하더라도 관세를 납부해야 했다. 태국에서 샴푸의 기본 관세율이 20%이기 때문에 상호대응세율 5%를 적용 받더라도 바이어에게는 이익이었는데, 바이어가 이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상했다.

이에 H사는 방콕 센터에게 재문의를 했고 그 결과 신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바이어가 샴푸를 수입할 때 과세코드에 기입해 온 AKI는 일반 품목군에 해당한

다. 만약 민감품목군의 코드인 AK3을 기입했다면 상호대응세율 적용이 가능했을 거라는 게 센터의 설명이었다.

3305.10.90			0.00		0.00	
000%GM		20%	0.00		0.00	
000	KGM					KR
↑ AK3 적용시 관세 5% 부과						
3305.90.00			0.00	0.00	0.00	
000%GM		0%	0.00	0.00	0.00	
AK1	KGM			C62	6000001582470 B3 14/13/544 C010-17-0027981 8/3.05/12/2017	KR
F- USD 35.95 = THB 1,341.89 B- USD 34.35 = THB 1,209.37			KOTRA BANGKOK 무역관 보유자료			

자료원 : KOTRA 방콕 무역관 보유자료



## 반면교사를 위한 상호대응세율 자료 제작 및 배포

방콕 센터의 조언에 따라 바이어는 수입신고 시 과세코드를 수정하기로 하고 이후부터는 기본세율이 아닌 상호대응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만약 샴푸가 민감 품목군인 것을 알았다면 애초에 과세 코드도 조정을 했을 텐데 수출 기업도, 수입하는 바이어도 미처 몰랐던 것이 문제였다.

이에 방콕 센터는 이런 사실을 모르는 기업이 다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상호대응세율 적용 품목 대응 방향에 대한 자료를 제작, 배포했다. 자료에는 샴푸(HS 3305.10.10., 3305.1090)의 경우 기본 관세율은 20%이나 한-아세안 FTA 적용시 5% 세율로 관세를 절감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상호대응세율에 대한 설명도 기재했다.

또한 자료 말미에 한국대사관과 방콕 센터의 연락처를 기재, 언제든지 문의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었다. 궁금한 점을 간과하지 않고 빠르게 문의한 H사 덕분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된 셈이다.

### Tip



#### 태국의 과세코드

과세코드  
AK1  
일반품목군

과세코드  
AK2  
수입쿼터 적용  
품목군

과세코드  
AK3  
상호대응세율  
적용품목군

과세코드 AK1은 일반 품목군에 해당하며, AK2는 수입쿼터 적용 품목군, AK3는 상호대응세율 적용 품목군에 해당한다.

태국 관세청 사이트([http://igtfcustoms.go.th/igtfc/en/main\\_frame.jsp](http://igtfcustoms.go.th/igtfc/en/main_frame.jsp))에서는 상호대응세율 대상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율에 대하여 “Exempted”라고 기재되어 있다.

# 2018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 III

part

## 정보 및 Q&A

1. KOTRA 제공 통상규제 정보 소개
2. Q&A

# 1. KOTRA 제공 통상규제 정보 소개

KOTRA는 전 세계 경제, 산업, 투자 뉴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KOTRA 해외시장뉴스 (http://news.kotra.or.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꼭 알아두어야 할 현지 통상·규제, 인증제도 등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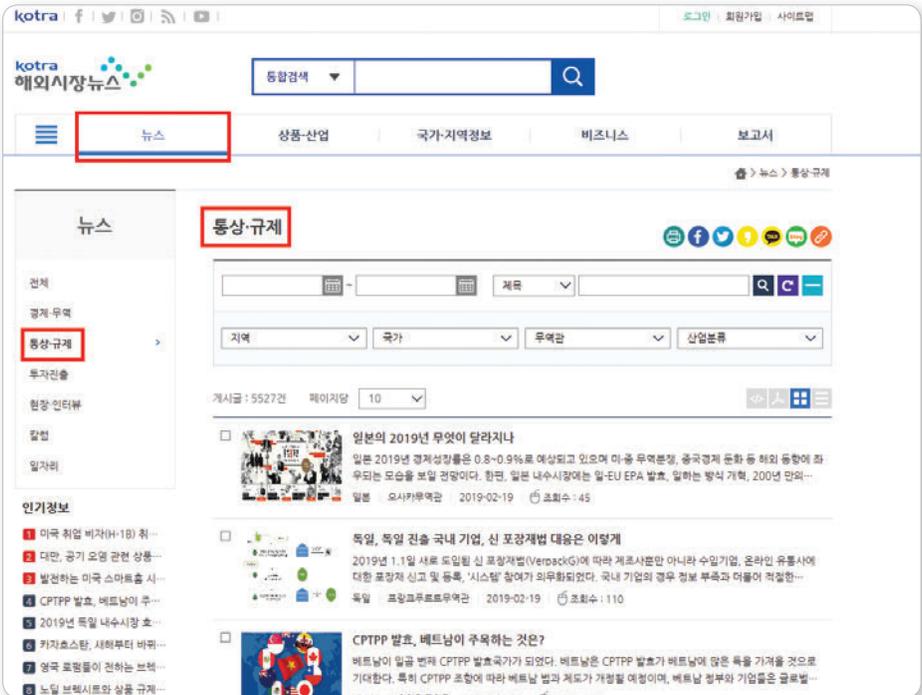
## KOTRA 해외시장뉴스 메인페이지

The screenshot shows the KOTRA Overseas Market News homepage. At the top, there's a navigation bar with the KOTRA logo, social media links, and a search bar. Below this is a secondary navigation menu with tabs for '뉴스' (News), '상품·산업' (Products/Industry), '국가·지역정보' (Country/Region Information), '비즈니스' (Business), and '보고서' (Reports).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a large featured article titled 'CES 2019, 글로벌 혁신 경쟁의 현재와 미래' (CES 2019, Current and Future of Global Innovation Competition), a sidebar on the right with '나의 맞춤정보' (My Customized Information) and '급주의 국가정보' (Urgent Country Information), and a list of news items. The news items include '러시아 가전유통시장의 절대강자 DNS' (Absolute Power in Russian Home Appliance Market), '2019 디트로이트 모터쇼, 올 한해 북미 신차 트렌드를 한눈에!' (2019 Detroit Motor Show, One Glance at North American New Car Trends for This Year!), and 'CPTPP 발효, 베트남이 주목하는 것은?' (CPTPP Takes Effect, What is Vietnam Paying Attention to?).

## 1) 통상·규제 (위치 : [뉴스]-[통상·규제])

해외에서 신규 발효된 각종 수출입규제정보, 반덤핑, 상계관세 등 비관세장벽, 현지 통상환경 정보와 최신 이슈사항을 제공합니다.

### 통상·규제 게시판 위치



## 2) 해외인증정보 (위치 : [비즈니스]-[해외인증정보])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사전에 현지 내국 법령에 따라 각종 인증·등록·신고 등 수입요건을 이행해야 합니다. “해외인증제도” 게시판은 이러한 각 국가별 수입요건을 품목에 따라 인증·등록·신고 등의 대상과 절차, 세부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해외인증제도 게시판 위치

The screenshot shows the Kotra website interface. The '비즈니스' (Business)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red box. Below it, the '해외인증정보' (Overseas Certification Information) sub-menu is also highlighted with a red box. The main content area shows a search bar and a table of certification requirements for various countries.

번호	품목명	인증제도명	HSCODE	국가	무역관
901	면도.목욕용품	CFDA(China Food & Drug...	330720	중국	베이징무역관
900	면도.목욕용품	홍콩무역산업국(TID)	330720	홍콩	홍콩무역관
899	면도.목욕용품	필리핀 FDA (FDA Philippin...	330720	필리핀	마닐라무역관
898	면도.목욕용품	태국 FDA (Notification of...	330720	태국	방콕무역관
897	면도.목욕용품	MHLW (Ministry of Health...	330720	일본	도쿄무역관
896	면도.목욕용품	BPOM (Badan Pengawas...	33072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무역관
895	면도.목욕용품	DAV 제형신고 (Drug Admi...	330720	베트남	하노이무역관

해외인증제도 정보

뉴스		상품·산업													
<b>비즈니스</b>		<b>해외인증정보</b>													
무역사기사례		<table border="1"> <tr> <td colspan="2"><b>인증정보</b></td> </tr> <tr> <td>품목명</td> <td>면도·목욕용품</td> </tr> <tr> <td>작성일</td> <td>2017-02-08</td> </tr> <tr> <td>국가</td> <td>중국</td> </tr> <tr> <td>인증마크</td> <td></td> </tr> <tr> <td>인증구분</td> <td>강제</td> </tr> </table>		<b>인증정보</b>		품목명	면도·목욕용품	작성일	2017-02-08	국가	중국	인증마크		인증구분	강제
<b>인증정보</b>															
품목명	면도·목욕용품														
작성일	2017-02-08														
국가	중국														
인증마크															
인증구분	강제														
기업성공사례															
무역관 현장DB															
해외인증정보 >															
해외인증컨설팅회사															
기업검색사이트															

<인증정보>

<b>인증획득절차</b>		
시험기관 #1	기관명	중국질병통제센터 (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
	홈페이지	http://www.chinacdc.cn/
	담당부서	행정
	전화번호	+86-10-58900001
	팩스번호	
	이메일	web@chinacdc.cn
	기타	
	기관명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 (China)
	홈페이지	www.cfda.gov.cn
	담당부서	

<인증획득절차>

**비용, 소요 기간 등**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해당규격
	시험비용	약 36,800 원 (임상실험비용 별도)
	소요기간	약 60-80 일
인증	초기공정심사 비용	
	인증비용	약 37,000 원
	소요기간	약 60-80 일
인증유효기간	4년	
사후관리비용		
자료원		

**유의사항**

필요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화장품 필요서류 - 수입 비(대)특수용도화장품행정허가신청서 - 제품중문명칭 - 제품 처방 - 제품품질안전규제요구 - 제품 오리지널 포장(제품표지, 제품설명서)과 중국 시장을 위한 디자인 포장, 제품 디자인 포장 수요 시 제품(제품 표시, 제품설명서 포함) -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이 인정하는 허가검사기관 발급하는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 중국에서 등록된 행정허가 책임 회사의 위탁서 사본 및 중국에서 등록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회사 직인 - 화장품 사용 원료 및 원래의 원산지 광우병 지역 고위험 물질 사용금지 보고서 - 제품은 원산지(지역) 혹은 원산국(지역) 생산과 판매의 증명 서류 - 기타 행정허가 신청에 유리한 자료 * 개별되지 않은 샘플 및 시장 판매하는 샘플 각 1씩 제공</li> <li>○ 특수용도 화장품 필요서류 - 수입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 - 생산라인 서술 및 약도 - 제품의 안전성 위험물질 관련 안전성 평가자료 - 모발류, 헬스류, 가슴 보건류 제품은 효능성분 및 그의 사용방법에 의거한 과학적인 문헌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용 화장품 서류 심사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지만 특수용 화장품의 심사회의는 분기로 나누어 진회의일정을 진행함.</li> <li>- 특수용 화장품은 매년 필수 원의 10인원에 서류 제출 및 신청을 받아 심사서를 진행</li> </ul>

<비용, 소요기간 및 유의사항>

### 3) 해외인증컨설팅회사 (위치 : [비즈니스]-[해외인증컨설팅회사])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인증을 받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현지 컨설팅 회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해외인증컨설팅회사 게시판 위치

The screenshot shows the Kotra website interface. The '비즈니스' (Business) tab is selected in the navigation bar. In the left sidebar, the '해외인증정보' (Overseas Certification Information) menu item is highlighted, with a sub-item '해외인증컨설팅회사' (Overseas Certification Consulting Company) also highlighted.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search filter for '해외인증컨설팅회사' and a table of company listings.

번호	회사명	품목명	HSCODE	국가
723	EZU	전동기	850110	체코
722	ITC Zlin	전동기	850110	체코
721	Sercons LLC	포장기계	842240	러시아
720	Sercons LLC	안경렌즈	900150	러시아
719	True Management Quality Consultancy	일화비닐플라스틱제품 (PVC)	391810	말레이시아

해외인증컨설팅회사 정보 예



통합검색

Q

뉴스
상품·산업
국가·지역정보
비즈니스
보고서

홈 > 비즈니스 > 해외인증컨설팅회사

비즈니스

- 무역사기사례
- 기업성공사례
- 무역관 현장DB
- 해외인증정보
- 해외인증컨설팅회사 >
- 기업검색사이트
- 전문조사기관
- 국제무역통계(ITC)

### 해외인증컨설팅회사



<b>품목명</b>	전동기		
<b>작성일</b>	2015-01-08	<b>작성자</b>	문영상
<b>업종(MTI 1단위)</b>	(전자전기제품)		
<b>품목코드 (HSCODE)</b>	850110		
<b>회사명</b>	EZU		
<b>홈페이지</b>	old.ezu.cz		
<b>연락처</b>	<b>담당부서</b>	마케팅	
	<b>담당자</b>	Daniel Berka	
	<b>전화번호</b>	+420 266 104 288	
	<b>팩스번호</b>	-	
	<b>이메일</b>	dberka@ezu.cz	
	<b>주소</b>	Hudcova 424/56b	
<b>이력사항</b>	<b>업종구분 (MTI 1 단위)</b>	[생활용품] [기계류] [전자전기제품(산업용/가정용 전자제품, 전기의로기기 등)]	
	<b>해당품목명</b>	전동기	
	<b>인증명</b>	CE, ECU, E-mark	
	<b>주요 인증대행이력</b>	전기전자 전문인증기관으로 체코와 슬로바키아 내 다수 고객 확보	
	<b>구사가능언어</b>	영어, 체코어	
	<b>수수료</b>	이메일 문의	
<b>키워드</b>	대행, 견등, 전동기, 컨설팅		
<b>참고사항</b>	체코 내 전자제품 임의인증인 ECU 인증 시험, 발급처 자동차 부품인증 E-mark 인증 발급		
<b>첨부파일</b>			

## 2. Q&A

### 1) HS CODE란 무엇이며, 어디서 확인하는 것인가요?

HS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칭입니다. 이러한 체계는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숫자 코드로 분류하여 상품 분류 체계를 통일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원활하게 하고 관세를 적용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관세나 무역통계, 운송, 보험 등 다양한 목적에 사용됩니다.

물품을 수출할 때, 현지 수입국의 HS code와 관련 세율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 또는 한국무역협회 「TradeNavi」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https://unipass.customs.go.kr>)

가) [세계HS]-[HS정보]-[관세율표] 클릭

The screenshot shows the Korea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CLIP) website. The main navigation bar includes '법령',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and '신재생에너지'. The '세계HS' menu is active, showing a list of items: 'HS정보', 'HS 가이드', '품목분류 국내사례', '품목분류 외국사례', and 'FAQ'. The '관세율표' (Tariff Schedule) item is highlighted. The main content area displays a search bar with '통합검색' and a search button. Below the search bar, there is a message: '지루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합법령정보에서 추천합니다.' (You can use the service more quickly. Recommended from the Integrated Law Information Portal). There are two main search options: 'HS검색이' (HS Search) and '포문별 검색' (Search by Category). Below these are four icons: '법정용어' (Legal Terms), '통계부호' (Statistical Codes), '속건표' (Exemption Certificates), and 'HS비교' (HS Comparison). At the bottom, there is a section for '찾기쉬운 산업별 HS가이드' (Easy-to-find Industry-specific HS Guide) with icons for '자동차' (Automobiles), '반도체' (Semiconductors), '평판디스플레이' (Flat Panel Displays), '해외직접구매' (Direct Foreign Purchase), and '후대선화부품' (Aftermarket Parts). The footer includes '최신법령', '최신결정례', '최신통관', '최신평가', '행정예고', '법령질의', '평가질의', and '금주의 환율'.

나) 좌측 메뉴에서 국가(수입국) 선택(예: 중국 2018년도 관세율표, 신발검색)  
 상단 검색메뉴에서 품명 검색(또는 아는 경우 세번으로 검색)

The screenshot shows the CLIP website interface.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관세율표 > 한국 [ 2018년 ]'. Below this, there is a search bar and a table of tariff items. The table has two main columns: '부' (Section) and '류' (Class). The first section, '0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lists items 01 through 06. The second section, '02 식물성 생산품', lists items 07 through 14. Each item includes a description and a '해설서' (Explanatory Note) link.

부	류	해설서
01 살아 있는 동물과 동물성 생산품	01 제1류 살아 있는 동물	<a href="#">해설서</a>
	02 제2류 육과 식용 설육(膾肉)	<a href="#">해설서</a>
	03 제3류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 동물	<a href="#">해설서</a>
	04 제4류 낙농품, 새의 알, 견연골,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a href="#">해설서</a>
	05 제5류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	<a href="#">해설서</a>
	06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靛藍)·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a href="#">해설서</a>
02 식물성 생산품	07 제7류 식용의 제소·뿌리·괴경(塊莖)	<a href="#">해설서</a>
	08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열매의 껍질	<a href="#">해설서</a>
	09 제9류 커피·차·마테(mate)·황신료	<a href="#">해설서</a>
	10 제10류 곡물	<a href="#">해설서</a>
	11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a href="#">해설서</a>
	12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콩잎용·의약용 식물, 짐과 사료용 식물	<a href="#">해설서</a>
	13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a href="#">해설서</a>
	14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a href="#">해설서</a>

다) 관련 HS code 클릭

- 예: “신발” 키워드로 검색한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KLP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검색어: 신발

검색 결과: 신발

품목번호	단위	한글	영문	기본세율
6402		- 그 밖의 신발류	- 其他鞋靴	
6403		신발류(바닥 바닥을 고무클라스틱, 가죽, 합성지선지(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橡胶鞋, 胶鞋, 皮革或再生皮革制外底, 皮革制鞋面的鞋靴	
6403		- 스포츠용 신발류	- 运动鞋靴	
6403	20	신발류(바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皮革制外底, 由皮革或再生皮革制外底及于脚背并开大脚趾的皮革带构成鞋面的鞋靴	100%
6403	40	- 그 밖의 신발류(보통 금속 토캡(Toe-cap)을 쓴 것으로 한정한다)	- 波拿拿鞋及军鞋头的其他鞋靴	100%
6403		- 그 밖의 신발류(바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皮革制外底的其他鞋靴	
6403		- 그 밖의 신발류	- 其他鞋靴	
6404		신발류(바닥 바닥을 고무클라스틱, 가죽, 합성지선지(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합성 섬유, 합성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橡胶鞋, 胶鞋, 皮革或再生皮革制外底, 用纺织材料制鞋面的鞋靴	
6404		신발류(바닥 바닥을 고무나 합성지선지(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 橡胶或塑料制外底的鞋靴	
6404	11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 농구화, 축구화, 합성화나 이와 유사한 것	- 运动鞋靴, 网球鞋, 足球鞋, 体操鞋	100%

- 예: “6403.20-00” 세번으로 검색한 경우

관세법령정보포털 (KLP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검색어: 6403.20

검색 결과: 6403.20

품목번호	단위	한글	영문	기본세율	
6403	20	00	신발류(바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목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皮革制外底, 由皮革或再生皮革制外底及于脚背并开大脚趾的皮革带构成鞋面的鞋靴	100%

라) 세율확인

- 하단부 MFN 및 협정세율 확인

**관세법령정보포털**  
CLIP (Customs Law Information Portal)

Q

상세검색

법령
관세정보
세계HS
관세평가
편의기능
새소식
정보공개
전체메뉴

세계HS

- 속건표
- HS해설서
- 관세율표
- HS비고
- 세계HS개정표
- HS협약 개정차트
- 칠간 품목분류 순환
- HS질라임이
- HS 가이드
- 품목분류 국내사례
- 품목분류 외국사례
- FAQ

**외국관세율상세(UI-ULS-0201-008Q)** Home > 세계HS > HS정보 > 관세율표

부 제12부 신발 ...
▶
해설서 >
류 64류 신발류 ...
▶
해설서 >
호 6403호 신 ...
▶
해설서

검색

Q

국가	중국	해당년도	2018년
품목번호	6403.20-00	단위(중앙/수량)	/ 단위표기
종명	국문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영문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leather, and uppers which consist of leather straps a cross the instep and around the big toe	
	원문	皮革制外底, 由皮革于脚背并绕大脚趾的皮革条带构成鞋面的鞋	
간이정역환급	해당사항 없음		
관세	기본세율 : 100%		

※ 각 국의 관세율표의 세율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하는 것으로 법적효과가 없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I 협정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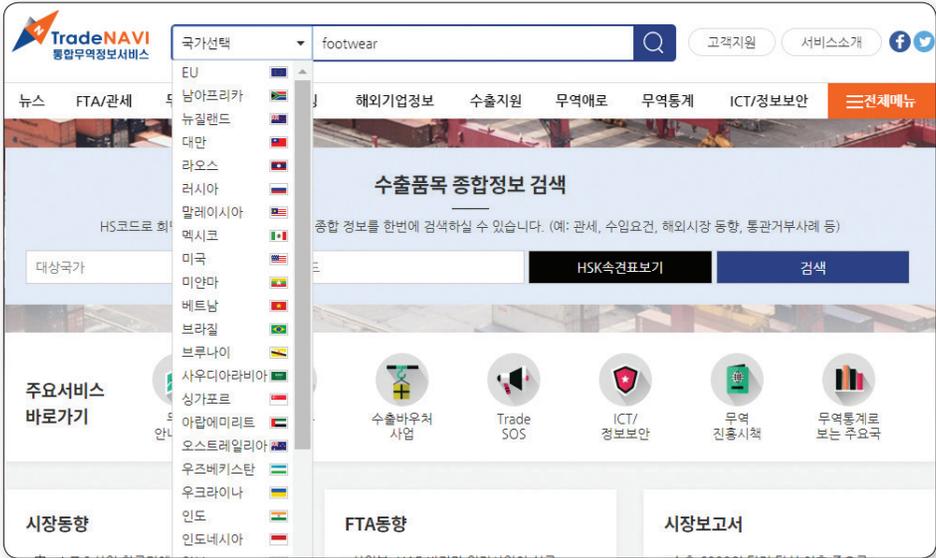
구분기호	관세율	관세구분
MFN	2018.07.01 이전 : 24% 2018.07.01 이후 : 14%	최혜국
FTA_NZL	0%	뉴질랜드
FTA_PER	2.4%	페루
FTA_CRI	0%	코스타리카
FTA_MAC	0%	마카오
FTA_ASEAN	0%	아세안 회원국
FTA_CHE	12%	스위스
FTA_JSL	0%	아이슬란드
FTA_KOR	19.2%	대한민국
FTA_AUS	4.8%	호주
FTA_GEO	0%	조지아

해설서보기
세율부호정의

## ② 한국무역협회 「TradeNavi」(www.tradenavi.or.kr)

가) 홈페이지 상단에서 국가선택, 키워드 또는 세번 검색

단, 키워드는 한글이 아닌 영문(예: 신발 → footwear로 기입)으로 검색



나) 서울/원산지 클릭



다) 관련 HS code 클릭, 세율확인

The screenshot shows the TradeNAVI '품목별 정보검색' (Product Information Search) page. The search criteria are set to '대상국: 중국' (Target Country: China) and 'HS코드: 6403200010'. The search results show a table with columns 'Code' and 'Product Description'. The selected HS code is 6403200010, described as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leather and with uppers of leather straps of wild animals'. Below the search results, there are tabs for '관세' (Duty), '내국세' (Domestic Tax), '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환경규제' (Environmental Regulation), '인증' (Certification), '수입요건' (Import Requirements), and '통관거부사례' (Cases of Refusal of Clearance). The '관세' tab is active, showing a 'FTA 협정세율 (FTA Preferential rate)' of 19.2% for the selected HS code. A note indicates that this preferential rate applies to the selected HS code and that users should click on the '관세' link for more details.

라) 추가로 협정세율 하단부에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가능

This screenshot provides a closer look at the '관세' (Duty) section. It shows the 'FTA 협정세율 (FTA Preferential rate)' of 19.2% for the selected HS code. Below this, there is a section for '원산지결정기준 (PSR)' (Rules of Origin Determination). This section includes a table with columns for 'HS Code (2012기준)', '품목명' (Product Name), '연도별세율' (Annual Rate), and '양허유형?' (Type of Concession?). The table shows that for HS code 64032000, the product name is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leather, and uppers which consist of leather straps across the instep and around the big toe', the annual rate is 20%, and the concession type is '연도별세율' (Annual Rate). A note below the table states that the preferential rate is provided for the selected HS code and that users should click on the '관세' link for more details.

HS Code (2012기준)	품목명	연도별세율	양허유형?
64032000	Footwear with outer soles of leather, and uppers which consist of leather straps across the instep and around the big toe	연도별세율	20

원산지결정기준(PSR)

HS Code (2012 기준)	PSR설명

## 2) 완전생산기준(Wholly Obtained Goods)이란 무엇인가요?

한 국가 내에서 모든 생산과정이, 해당 국가의 재료로만 수행되어 이루어지는 원산지 결정기준(Rules of Origin) 규정을 의미합니다. 같은 완전생산기준이더라도 해당 당사국 내에서만 생산되어야 할지 또는 양 당사국 영역 내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경우도 있어, 협정간의 해석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구분	협정명
해당 당사국	EFTA·아세안·인도·EU·터키·중국·베트남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칠레·싱가포르·미국·페루·호주·캐나다·뉴질랜드

완전생산기준은 협정에서 일반적으로 그 대상을 포지티브(Positive) 형태로 열거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한-중 FTA에서는 다음(제3.4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과 같이 규정합니다.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완전생산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은 동·식물, 광물, 수산물 등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공산품은 기초 원재료를 수입하거나, 재료의 최초 매입처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완전생산기준을 충족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공산품은 완전생산기준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제3.4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3.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전적으로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나. 위의 가호에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 다.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라. 그 당사국의 영토, 내수 또는 영해 내에서 수행된 수렵, 낚시,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마. 그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
-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취득한 상품. 다만, 그 당사국이 그러한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한정한다.
- 사. 당사국에 등록되거나登記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하부토양에서 획득한 어로 상품 및 그 밖의 수산물
- 아. 당사국에 등록되거나登記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항공선박에서 위의 사호에 언급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거나 가공된 상품
- 자. 당사국에서 이루어진 제조 또는 가공공정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하거나 다른 상품의 생산에 원료로서 활용되기 위한 것, 또는 당사국에서 소비되고 수집된 중고품으로서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 그리고
- 차. 당사국에서 위의 가호부터 자호까지의 규정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3)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원산지증명서는 크게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관발급은 상공회의소나 세관과 같이 기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형태입니다. 반면, 자율발급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협정에서 정한 양식 혹은 필수기재사항을 기초로 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결된 FTA 중 싱가포르·아세안·인도·중국·베트남은 기관발급으로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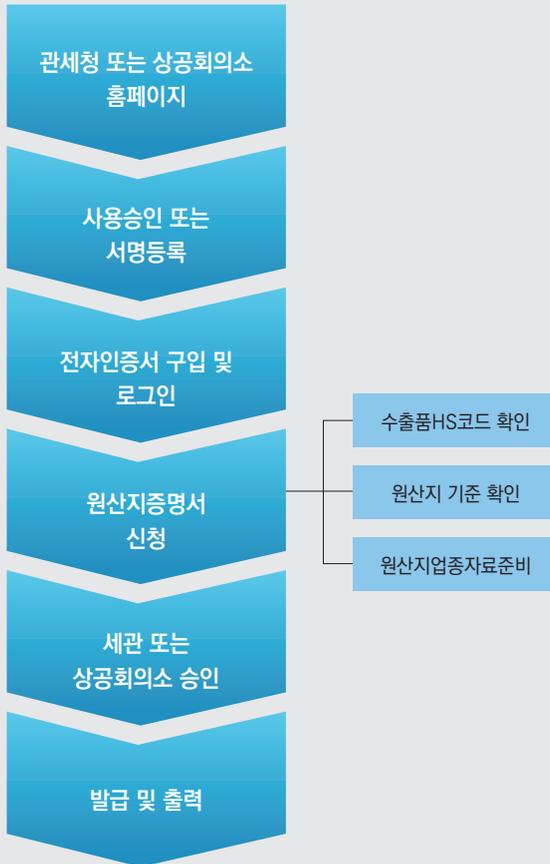
구분	협정명
중국	해관총서,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베트남(ASEAN)	산업무역부
태국(ASEAN)	상무부
인도	수출검사위원회, 수산물수출개발원, 섬유위원회
인도네시아(ASEAN)	통상부

우리나라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관세청(세관)에서 발급합니다.

#### 4)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원산지증명서는 한국 관세청 유니패스(<https://unipass.customs.go.kr>) 및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절차〉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원산지결정기준별로 아래와 같습니다(출처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다만,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출서류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구분	원산지입증 제출서류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증명서 발급신청서 1부 (인터넷 신청 시스템에 입력)</li> <li>- 수출신고필증 사본 1부 (인터넷 신청 시 신고번호만 시스템에 입력)</li> <li>- 상업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1부</li> <li>- 원산지소명서 1부 (신청시스템 입력 또는 시행규칙 별지 서식 1)</li> <li>- 원산지(포괄)확인서 (시행규칙 별지2호 서식) : 생산자 ≠ 수출자</li> </ul>
완전생산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포괄)확인서</li> <li>- 역내산 입증용 FTA 협정 C/O</li> </ul>
세번(HS코드) 변경기준 및 특정공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공정설명서 (원산지소명서의 제조공정이 불충분한 경우)</li> <li>- 원재료사용리스트 (원재료가 5개 이상인 경우 작성 / 상품명, HS코드, 원산지, 투입비중(%), 원재료공급자/생산자 정보 포함)</li> <li>- 원재료투입입증서류 (구매확인서, 매입승인서, 세금계산서, 수입신고서, 원산지(포괄)확인서, 역내산 입증용 FTA 협정 C/O 중 택1종)</li> </ul>
부가가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가계산서(BOM)</li> <li>- 원재료 가격입증서류 (세금계산서, 수입신고서, 구매확인서 중 택1종)</li> <li>- 역내산 및 한국산원재료입증서류 (원산지(포괄)확인서, 역내산 입증용 FTA 협정 C/O 중 택1종)</li> </ul>
조합기준 (복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기준에 따른 입증자료를 모두 제출</li> <li>예) CTH+RVC 35%인 경우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입증자료 모두 제출</li> </ul>

## 5)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무엇인가요?

##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앞쪽)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ountry:		Certificate No.: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country:		<b>CERTIFICATE OF ORIGIN</b> <b>Form for Korea-China FTA</b>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country: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Remarks:			
6. Item number (Max 20)	7.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8.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9. HS code (Six-digit code)	10. Origin criterion	11.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 <sup>3</sup> , etc.)	12. Number and date of invoice	
13.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4.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China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제철용품)]

##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Form AK)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양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b>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b>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_____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_____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6.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210mm × 297mm [백상지 80g/㎡ (재활용품)]

## ▶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Form KV)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2호서식]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양쪽)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b>KOREA-VIETNAM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b>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b>FORM KV</b>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_____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_____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code of the good in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Overleaf Notes)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FOB only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Viet Nam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Remarks			

210mm × 297mm [백상지 80g/m<sup>2</sup> (제출용품)]

## ▶ 한-인도 CEPA 원산지증명서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Reference No.: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b>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b>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_____ (Country) _____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5. For Official Use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6. Remarks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 (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 6) 원산지(포괄)확인서란 무엇인가요?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입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이는 국내에서 통용되는 원산지증명서이므로 국내 통용만 가능하고 국내에서 매입하는 원재료에 대하여 한국산임을 입증하는 서류로 활용됩니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원산지(포괄)확인서(Declaration of Origin)

※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를 기입합니다. (2쪽 중 제1쪽)

1. 발급번호(Reference No.) :		
2. 공급하는 자 (Supplier)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주소(Address)	팩스번호(Fax)
	전자우편주소(E-mail)	인증수출자 인증번호(Customs Authorization No.)
3. 공급받는 자 (Supplied to)	상호(Company Name)	사업자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o.)
	대표자성명(Name of Representative)	전화번호(Tel)
	주소(Address)	팩스번호(Fax)
	전자우편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Good(s) Statements)

4. 연번 (S/N)	5. 자유무역 협정명칭 (Name of FTA)	6. 품목번호 (HS No.)	7. 품명·규격 [Description ·Specification of Good(s)]	8. 수량 및 단위 (Quantity & Unit)	9.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on)	10. 원산지 결정 기준 충족 여부 (Fulfillment of Origin Criterion)	11. 원산지 (Country of Origin)	12.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Blanket period [YYYY/MM/DD - YYYY/MM/DD])
						충족 (Y)	미충족 (N)	
						[ ]	[ ]	
						[ ]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e origin of the good(s) in accordance with Article 12.1 of 「Enforcement Rules of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다만, 공산품이 아닌 농·축·수산물 및 전통식품은 자국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지만 정해진 공법이나 제조공정에 따라 생산되지 않기에 위와 같은 형태로 원산지를 증빙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원산지확인서에 같음하여 아래와 같은 서류도 원산지확인서로 인정하여 고시하고 있습니다(해당 양식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원산지(포괄)확인서 고시」 참조).

구분	서류명	발급근거	서식
농산물	①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서식1
	② 농산물우수관리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서식2
	③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이력추적관리)	서식3
	④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서식4
	⑤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 공급확인서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서식15
수산물	⑤ 물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서식5
	⑥ 마른 김 수매확인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매매방법)	서식6
	⑦ 수산물 품질인증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수산물 등의 품질인증)	서식7
	⑧ 수산물 지리적표시 등록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서식8
	⑨ 수산물이력 추적관리 등록증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이력추적관리)	서식9
⑩ 수산물 유기수산물 인증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 등의 인증)	서식10	
축산물	⑪ 축산물(소) 등급 판정확인서	축산법 제40조(등급의 표시 등), 축산법 시행규칙 제45조(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발급)	서식11
	⑫ 축산물(돼지) 등급 판정확인서		서식12
	⑬ 축산물(계란, 닭, 오리) 등급 판정확인서		서식13
전통식품	⑭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	서식14

## 7) FTA 인증수출자란 무엇이며, 혜택은 무엇인가요?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권한 (한-EU FTA) 또는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수출자 로고

인증수출자는 업체별 인증수출자와 품목별 인증수출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인증을 취득한 해당 업체의 모든 품목에 대하여 혜택이 있으며,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인정을 받은 협정과 HS 6단위 품목에 한하여 혜택이 부여됩니다.

구분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혜택범위	모든 협정, 모든 품목	인증받은 협정별, HS 6단위
유효기간	5년	5년(법규준수도에 따라 차등적용 가능)
인증기관	본부세관(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 및 평택 직할세관	
인증기준	협정상대국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HS 6단위별 원산지증명능력 및 법규 준수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면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협정	인증 前	인증 後
한-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00유로 이하의 수출물품에 대하여만 원산지신고서 작성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000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할 경우 인증수출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li> </ul>
한-아세안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한-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작성(전산으로 신청)·첨부서류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신고필증 사본</li> <li>- 원산지소명서</li> <li>- 원산지확인서(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li> <li>- 그 밖의 원산지 증빙자료·현지확인 (필요한 경우)</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 (전산으로 신청)·첨부서류 제출 생략· 현지확인 생략 가능</li> </ul>
한-EF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시) 수출자의 서명 필요(전자문서 이용 불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로(통상 Invoice 신고 시) 수출자의 서명 생략 (전자문서 이용 가능)</li> </ul>

## 8) 원산지조사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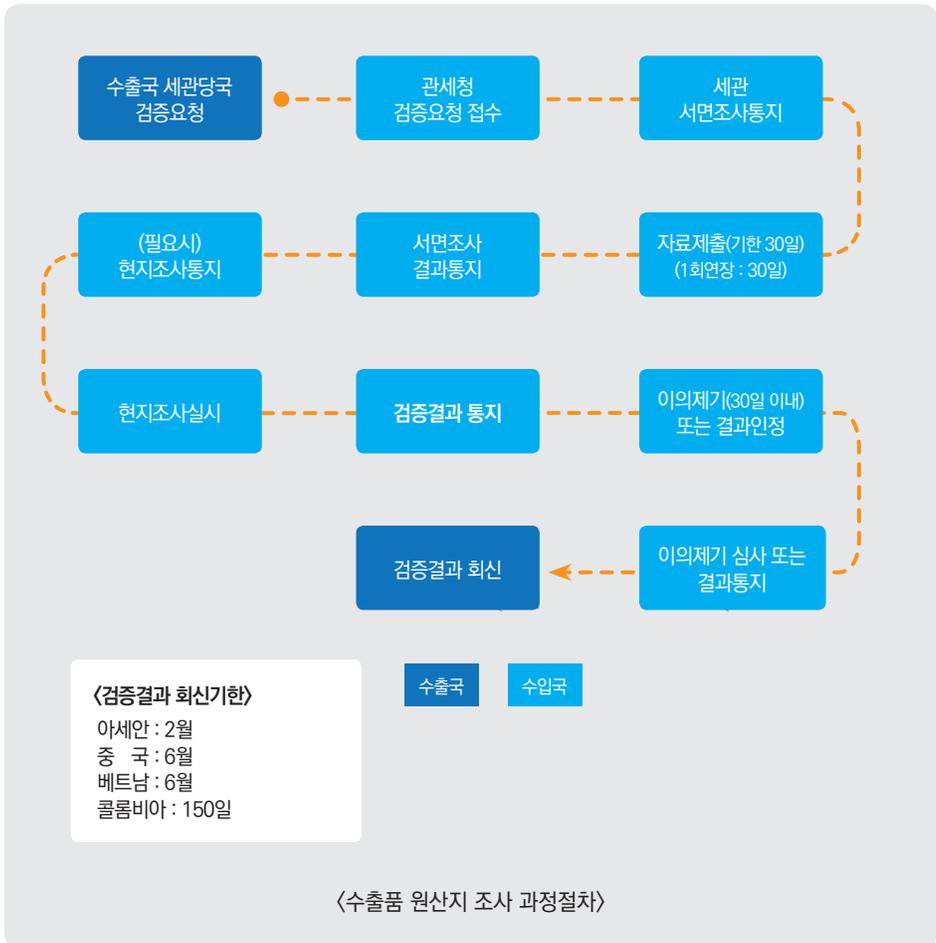
원산지조사란 원산지요건을 충족하는 원산지상품인지 여부를 조사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단순히 원산지결정기준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당사자, 세율의 적용, 직접운송 원칙여부 등 모든 요건들을 포함하여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원산지조사방법은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조사는 수입 당국이 수출국의 조사대상자를 직접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접조사는 수입 국 세관당국의 요청에 따라 수출국의 세관당국이 수출국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정별로 원산지조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사방법
아세안	
베트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조사 요청</li> <li>- 조사 결과가 적정하지 않거나, 결과 내용에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출국의 조사대상자(수출자·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실시</li> </ul>
인도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출국 세관당국에게 조사 요청</li> <li>- 조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수출 세관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수출국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li> </ul>
콜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추가 정보 요청 또는,</li> <li>- 수출국 조사대상자를 직접 서면 조사 또는,</li> <li>- 수출국 세관당국에게 조사 요청 또는,</li> <li>- 수출국 세관당국 공무원과 동행하여 수출국 조사대상자를 직접 현지조사</li> </ul>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산지조사시 요구되는 서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조사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2] 원산지조사 표준 요구자료 목록표(다음 내용)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별표에서는 공통 준비사항 및 원산지결정기준별 준비서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① 공통사항 요구자료

구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업체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 현황, 소개서 [예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조직도, 임직원 현황]</li> <li>본사·지사·계열사 설명 자료 (해당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증 대상 업체의 명칭, 위치, 연락처 확인</li> <li>업체 특성 파악</li> <li>조직·인력 현황 확인</li> <li>본사·지사·계열사 파악 (해당되는 경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체명, 대표자 성명</li> <li>사업자등록번호, 업종</li> <li>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li> <li>조직도·임직원 현황</li> <li>본사·지사·계열사 존재 여부, 각각의 역할</li> </ul>
생산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장등록증 사본</li> <li>공장별 생산물품 정보</li> <li>생산설비 현황 정보</li> <li>연간 생산량 정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산 규모(능력) 확인</li> <li>생산 제품의 종류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 생산 여부</li> <li>생산시설의 위치, 규모</li> <li>생산설비종류, 생산능력</li> <li>생산제품종류 및 생산량</li> </ul>
원산지 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li> <li>원산지관리 매뉴얼</li> <li>원산지관리 시스템 설명 자료 [예시: 매뉴얼, 메뉴구성도, 코드표, 개체관계도(ERD), 약어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관리 수준 확인</li> <li>원산지관리 주체 확인</li> <li>원산지관리 체계 확인 (매뉴얼, 시스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산지관리 전담조직 유무</li> <li>원산지관리자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li> <li>원산지관리 매뉴얼 유무</li> <li>원산지관리 시스템 유무, 구성 체계</li> </ul>
검증대상 물품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증대상물품 소개 자료 [예시: 제품설명서, 카탈로그, 홍보자료 등]</li> <li>품목분류(HS) 근거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원재료 명세서(BOM), 용도설명서, 품목분류사전심사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증대상물품의 기능·용도 등 정보 확인</li> <li>HS 정확성 및 근거자료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증대상물품의 설명</li> <li>품목분류(HS)의 근거</li> </ul>
거래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관계 증빙 자료 [예시: 무역계약서, 구매요청서(P/O),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출입신고서]</li> <li>운송경로 확인서류 [예시: 선하증권(B/L), AWB]</li> <li>원산지증명서(C/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래 당사자 파악</li> <li>운송 경로 파악</li> <li>원산지증명 관계 파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무역거래관계의 설명</li> <li>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li> <li>원산지증명서 유효성</li> </ul>

## ② 완전생산기준 요구자료

구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농산물	① 수출자=생산자 ▪ 실제 생산자 및 농장의 증빙 자료 [예시: 경작지등록자료, 조합원확인서류 등] ▪ 생산 능력 확인 자료 [예시: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생산 농장 현황 확인 • 생산 사실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농장 현황 자료 요청 ▪ 생산사실 확인자료 요청
	② 수출자≠생산자 ▪ 생산지역(생산자)에서 집하지역(수출자)까지의 운송 증빙 자료, 거래 증빙 자료	• 생산지와 집하지간 운송 사실 확인 • 생산자와 수출자간 거래사실 확인	▪ 생산자의 농장으로부터 수출자의 집하지까지의 운송증빙과 거래빙자료 제출 요청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자료	• 집하지에서 역내산과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혼재되는 경우 구분 여부 확인	▪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역내산 물품과 혼재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생산 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축산물	① 도축기준일 경우 ▪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예시: 검역증 등]	• 도축기준 충족 확인자료	▪ 도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구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축산물	② 완전생산기준일 경우 ▪ 실제 생산자 및 목장의 증빙자료 [예시: 목장등록자료, 조합원 확인서류] ▪ 생산 능력 확인 자료 [예시: 연간 생산량, 생산시설, 생산인력 등]	• 실제 생산자 여부 확인 • 목장 현황 확인 • 생산 능력(규모) 확인	▶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생산자에 대한 정보 요청 ▶ 검증대상물품의 실제 농장 현황 자료 요청 ▶ 생산사실 확인자료 요청
	③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존재하는 경우 ▪ 역내산과 역외산 물품의 물리적 구분 증빙자료 또는 회계적 재고관리 증빙자료	• 집하지에서 역내산 물품과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이 혼재되는 경우 구분 여부 확인	▶ 역외산 대체가능물품(재료)이 역내산 물품과 혼재하는 경우 양자를 구분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생산 공정 확인	▶ 생산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수산물	▪ 원양 생산 증빙자료 [예시: 선박국적증명서, 원양어업허가증, 원양어획반입신고 확인서 등]	• 원양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사실 확인	▶ 원양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 근해 생산 증빙자료 [예시: 어업허가증, 출하확인서류, 수산물수매확인서 등]	• 근해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사실 확인	▶ 근해에서 어로.양식 등 생산한 증빙자료 제출 요청
	▪ 생산 공정 설명자료 [예시: 생산공정도, 생산설명서 등]	• 생산 공정 확인	▶ 생산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

## ③ 세번변경기준 요구자료

구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① 수입 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대금지급자료 등]</li> <li>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li> <li>원재료의 구매처 확인</li> <li>원재료의 품목분류(HS)부호 확인</li> <li>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구매 자료 제출 요청</li> <li>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② 국내 조달 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li> <li>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li> <li>원재료의 구매처(원산지) 확인</li> <li>원재료의 품목분류(HS)부호 확인</li> <li>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구매 자료 제출 요청</li> <li>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 자료 [예시: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ERP시스템 출력 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OM의 정확성 확인</li> <li>구매증빙자료와의 일치성(구매목록, 공급처 등)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의 구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 자료 제출 요청</li> </ul>
생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 공정 설명 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이동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li> <li>공정내역, 가공순서, 제조일자, 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li> <li>제조공정도와와의 연계성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 제출 요청</li> </ul>

구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생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li> </ul> <p>[예시: 원재료수불부, 제품 수불부, ERP시스템 출력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량 확인</li> <li>•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가공 증빙자료</li> </ul> <p>[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지불증빙, 납품서, 국내제조확인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상사급 증빙자료</li> </ul> <p>[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 수불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사급 증빙자료</li> </ul> <p>[예시: 임가공비 전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가공(유상사급/무상사급) 사실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가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소기준 충족 여부 증빙자료</li> </ul> <p>[예시: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중량이 기재된 BOM, 계산 내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소기준(최소허용기준) 적용의 적정성 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소기준을 적용한 경우 미소기준비율 산출내역과 그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판매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li> </ul> <p>[예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검역증, 대금영수증빙(신용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li> </ul> <p>[예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li> </ul> <p>[예시: 매출전표(A/R), 판매원장, ERP시스템 출력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li> <li>•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 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li> <li>•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li>▶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li>▶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 ④ 역내가치기준(부가가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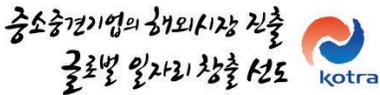
구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① 수입 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수입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대금지급자료 등]</li> <li>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li> <li>원재료의 구매처 확인</li> <li>원재료의 가격 확인</li> <li>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구매 자료 제출 요청</li> <li>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② 국내 조달 원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구매 자료 [예시: 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구매확인서, 납품서, 입고증, 기납증, 분증, 내국신용장 등]</li> <li>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li> <li>원재료의 구매처(원산지) 확인</li> <li>원재료의 품목분류(HS)부호 확인</li> <li>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 규정 준수 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구매 증빙 자료 제출 요청</li> <li>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구매 관련 회계 증빙 자료 [예시: 구매원장, 자재원장, 구매전표, 구매비용전표, ERP 시스템 출력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OM의 정확성 확인</li> <li>구매증빙자료와의 일치성(구매목록, 공급처 등)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의 구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 자료 제출 요청</li> </ul>
생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 공정 설명 자료 [예시: 제조공정도, 작업지시서, 공정이동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제 제조 여부(지시자, 작업자, 작업부서) 확인</li> <li>공정내역, 가공순서, 제조일자, 불인정공정 이상 공정 수행 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공정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 철강재의 경우 Mill Sheet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li> <li>제조공정도와와의 연계성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 제출 요청</li> </ul>

구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생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 생산 관련 회계 증빙자료</li> </ul> <p>[예시: 원재료/제품수불부, 노무비·제조간접비·기타경비·이윤내역, ERP 출력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재료의 입출고 내역, 소요량, 금액(단가) 확인</li> <li>• 생산증빙과의 일치성 확인</li> <li>•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가격의 정확성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가공 증빙자료</li> </ul> <p>[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 지시서, 임가공비지불증빙, 납품서, 국내제조확인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상사급 증빙자료</li> </ul> <p>[예시: 구매전표, 구매원장, 매입처원장, 매출전표, 판매원장, 수불부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상사급 증빙자료</li> </ul> <p>[예시: 임가공비 전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가공(유상사급/무상사급) 사실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가공에 해당하는 경우 그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판매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li> </ul> <p>[예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B/L),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검역증, 대금영수증빙(신용장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 증빙자료</li> </ul> <p>[예시: 역내가치산출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li> </ul> <p>[예시: 매출전표(A/R), 판매 원장, 판매부대비용전표(운임·보험료·통관수수료), 표준원가 정책, 실제원가결산자료, ERP 시스템 출력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li> <li>•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 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li> <li>•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 (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li>▶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준 충족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li>▶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 ⑤ 가공공정기준 요구자료

구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원재료 구매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예시: 거래명세표, 원재료수불부, 발주서, 원단재고목록, 인수증, 납품명세서, 재고관리대장, 생산관리대장]</li> <li>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C/O)]</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의 구매사실 확인</li> <li>원재료의 구매처 확인</li> <li>원재료의 품명, 규격, 수량 확인</li> <li>원재료의 원산지, 기록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정별 원재료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li>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사(Yarn)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관련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사기준 원산지판정방식(Yarn-forward)일 경우, 원재료인 원사의 원산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사(Yarn)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관련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물기준 원산지판정방식(Fabric-forward)일 경우, 원재료인 직물(원단)의 원산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단·봉제(Cut and sew) 공정을 위한 원재료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확인서, 구매관련자료(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단·봉제기준 원산지판정방식(Cut and sew)일 경우, 원재료인 직물(원단)의 원산지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물(Fabric)의 원산지 및 구매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생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 내역 증빙자료 [예시: BOM]</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원재료의 부품번호(코드), 품명, 규격, 소요량, 공급처, 원산지, HS 등 확인</li> <li>제조공정도와의 연계성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 내역을 증빙할 자료 제출 요청</li> </ul>

구분	요구자료명	요구사유 및 확인할 사항	질의사항
생산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공정별 설명 자료 [예시: 생산공정도(Flow Chart), 공정설명서, 공정사진, 국내제조확인서, 작업지시서, 생산일지, 생산관리대장, 입출고·재고관리대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정의 순서 및 충분 가공 여부 확인</li> <li>• 공정 수행 지역, 수행자(생산자) 확인</li> <li>• 투입된 원재료와 생산된 상품의 규격·수량의 적정성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공공정의 개괄적 설명 자료 요청</li> <li>▶ 공정의 각 단계별 수행주체(업체) 설명 자료 요청</li> <li>▶ 원재료와 생산량의 적정성 확인자료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가공 증빙자료 [예시: 임가공거래계약서, 작업지시서, 임가공비지불 증빙, 납품서, 국내제조 확인서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가공, 외주가공이 있을 경우, 실제 생산주체 확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가공, 외주가공이 있었을 경우 계약 및 거래 증빙 자료 제출 요청</li> </ul>
판매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의 판매 증빙자료 [예시: 계약서, 수출신고필증, 송품장(Invoice), 선하증권(B/L), 항공화물운송장(AWB), 포장명세서(Packing List), 대금영수증빙(신용장 등)]</li> <li>▪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예시: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원산지소명서, 서명카드]</li> <li>▪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회계 증빙자료 [예시: 매출전표(A/R), 판매원장, ERP시스템 출력자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사실, 판매처, 품명·규격·HS 등 확인</li> <li>•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기록 보관규정 준수 여부 확인</li> <li>• 판매증빙과의 일치성 확인(판매목록, 단가, 판매처 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증대상물품 판매 관련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li>▶ 검증대상물품의 원산지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li>▶ 검증대상물품의 판매와 관련된 회계 증빙자료 제출 요청</li> </ul>



## 2018 FTA 해외활용지원센터 활동사례집

KOTRA자료 19-003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19년 3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현릉로 13 (06792)  
전화 02-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http://www.kotra.or.kr)  
문의처 FTA지원팀 (02-3460-3316)  
ISBN 979-11-6097-893-3 (93320)  
979-11-6097-894-0 (95320)(PDF)